



2023.7.

국회예산정책처 | 결산 분석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국회예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총 괄 | 최병권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전용수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종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중구 행정예산분석과장
변재연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작 성 | 정금연 예산분석관
이한성 예산분석관
김소연 예산분석관
한서영 예산분석관보

지 원 | 임윤주 행정실무원
최다운 자료분석연구원

본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작성되었습니다.

문 의 :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 02) 6788-3772 | aba@nabo.go.kr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2023. 7.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 심의(2023. 7. 20.)를 거쳐 발간되었습니다.

발 간 사

정부가 지난 5월 31일 국회에 제출한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은 617.8조원, 총지출은 682.4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전년 대비 26.4조원이 악화되어 117.0조원의 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채무는 2022년 말 기준으로 전년 대비 97.0조원이 증가한 1,067.7조원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9.4%에 달하고 있습니다.

2022년 정부는 코로나 위기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경제 도약, 재정건전성 회복의 기틀 마련을 목표로 재정을 운용하였습니다. 이에 지난 재정운용의 결과를 검토·분석하여 그 실적과 성과를 살펴보고 다음 연도의 예산과정에 환류할 필요가 있는바,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의 효율적인 결산 심의 과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시리즈」를 발간하였습니다.

이번 시리즈는 기존의 「총괄 분석」, 「위원회별 분석」, 「공공기관 결산 분석」,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 「성인지 결산서 분석」에 「주요 사업 분석」을 새로 추가하여 총 6개의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 「총괄 분석」에서는 재정건전성,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증액사업 등 재정 전반에 걸친 주제에 대해 분석하는 한편, 코로나19 대응 사업, 미래산업 전략 R&D 사업, 탄소중립경제 사업,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재정정책을 선별하여 심층적으로 점검하였습니다. ② 「위원회별 분석」에서는 각 부처의 개별사업 단위로 집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루었고, ③ 「공공기관 결산 분석」에서는 공공기관의 혁신 계획 및 재무건전성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또한 ④ 국회 결산 심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2021회계연도 결산 국회 시정요구사항에 대한 정부 조치결과 분석」을 작성하였으며, ⑤ 「성인지 결산서 분석」을 통하여 성인지 제도 운영 전반과 각 부처의 성인지 대상사업을 점검하였습니다. ⑥ 「주요 사업 분석」에서는 주요 현안에 대한 심층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저출산 등 인구위기 대응 관련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등 주요 정책사업을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가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국회예산정책처는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으로 국회의 예·결산 심의를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023년 7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조 의 섭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I. 결산 개요 / 5

1. 현 황 5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2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3

II. 주요 현안 분석 / 15

1.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 운영 개선 필요 15
 - 1-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비효율적 집행 개선 필요 16
 - 1-2. 재외공관 행정직원 주거보조비 지원 관련 집행방식 개선 필요 22
 - 1-3. 재외공관 직원 및 행정직원 집행 관련 회계연도 독립원칙 준수 필요 25
2. 국제기구분담금 통합적 관리체계 개선 필요 28
 - 2-1. 국제기구분담금 평가체계 개선 필요 28
 - 2-2. 국제기구분담금 관리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35
3. 환율변동에 따른 안정적 재정구조 및 지출방식 개선 필요 41

III. 개별 사업 분석 / 47

1. 국별협력사업(ODA) 의 과도한 예산조정 개선 필요 47
2. ODA 조달 관련 과도한 긴급공고 추진 자제 필요 51



3. 중동CIS 소규모 무상원조 집행률 개선 필요	55
4. 제주평화연구원 재정자립성 개선 필요	59
5. 한국학강좌운영 객원교수 사업	64
5-1. 한국학강좌운영 객원교수 사업 운영 비목 검토 필요	64
5-2. 한국학강좌운영 객원교수의 엄격한 선발기준 마련 필요	68
6. 한국국제교류재단 목적에 맞는 모바일 단말기 사용 필요	70

[통일부]

I. 결산 개요 / 75

1. 현 황	75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81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82

II. 개별 사업 분석 / 84

1.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보조금 교부 및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	84
2.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연내 착공가능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사업 관리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89
3. 하나원 교육훈련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면밀한 예산 편성 필요	95
3-1. 사업 추진시 사전 준비 철저히 할 필요	95
3-2.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99



4.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 마련 필요	101
5. DMZ 평화적 이용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시 체계적인 관리 필요	105
5-1.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 사업 계획수립 시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106
5-2. 보조금 교부 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	109
6.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관서운영경비 집행 필요	113
7. 연구용역 추진시 수의계약 최소화 필요	116
8. 남북협력기금 사업 계획 수립 철저히 할 필요	119
8-1.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120
8-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재원구조 개선 필요	126
9.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사업 관리 강화 필요	12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I. 결산 개요 / 137

1. 현 황	137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41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42

II. 개별 사업 분석 / 143

1. 정기 및 수시 여론조사 간 중복성 개선 필요	143
2. 국내외 자문위원 지역회의 참석률 제고 필요	147



국방위원회

[국방부]

I. 결산 개요 / 155

- 1. 현 황 155
- 2.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162
-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164

II. 주요 현안 분석 / 166

- 1. 단계적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 및 우려 사항 166
 - 1-1.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초급간부 지원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169
 - 1-2. 단계적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병력충원 불균형 문제 174

III. 개별 사업 분석 / 178

- 1.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 개선 필요 178
- 2. 전공사상 심사기간 규정 마련 및 심사지연 문제 개선 필요 182
- 3. 형사처벌 등 결격사유로 인한 의무복무기간 중 제적자에 대한
단기복무장려금 환수 필요 186
- 4. 목적 외 보조금 사용에 관한 환수 및 관리 의무 철저 필요
(국방전직교육원) 191



5. 군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효율화 방안 마련 필요	196
5-1.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 개선 필요	197
5-2. 군 특성화고 졸업자의 부사관 임관률 저하 대책 필요	203
6. 군 간부 선발 시 AI 면접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207
7. 가산복무지원금 지원금 산정방식 개선 필요	213
8.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 매몰비용 최소화 필요	218
9. 병내일준비지원 사업구조 개선 필요	222
10. 무관부 전용 차량 운용의 적절성 재검토 필요	227
11. 부대구조 개편계획 준수 필요	232
12. 군인연금 보전금 과다 추계 시 정산 필요	238
13. 과다한 내역변경을 통한 예산집행 주의 필요	242
14. 군무원 운영률 저하 대책 마련 필요	247
15. BTL사업 관리체계 개선 필요	251



[병무청]

I. 결산 개요 / 341

1. 현 황	341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45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46

II. 개별 사업 분석 / 347

1.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필요	347
1-1. 사회복무요원 수요 감소와 전시근로역 처분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348
1-2.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대책 강화 및 의무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	352
2. 대체역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필요	358
2-1. 대체역 편입심사의 법정기간 준수 필요	359
2-2. 대체역 복무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 필요	365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I. 결산 개요 / 373

1. 현 황	373
2. 2022년도 예산안 관련 국회 논의사항	377
3. 2022회계연도 결산 주요 특징	378

외교통일위원회





외교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2,319억 5,800만원으로, 2,920억 8,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915억 9,900만원을 수납(수납률 99.8%)하고 불납결손액은 없으며 4억 8,5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31,958	231,958	231,958	292,084	291,599	485	0	99.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외교부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조 8,910억 4,800만원으로, 이 중 2조 8,115억 4,700만원을 집행(집행률 97.3%)하고 65억 1,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29억 5,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874,765	2,806,112	2,891,048	2,811,547	6,517	72,952	97.3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외교부

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액은 3,125억 9,000만원으로, 2,699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699억 1,800만원을 수납(수납률 100.0%)하였다.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국제교류기금	220,537	226,205	226,205	210,812	210,812	-	-	100.0
국제질병퇴치기금	92,053	92,053	92,053	59,106	59,106	-	-	67.6
합계	312,590	318,258	318,258	269,918	269,918	-	-	90.5

자료: 외교부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3,182억 5,800만원으로, 이 중 2,699억 1,800만원을 지출(집행률 84.8%)하고 84억 8,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국제교류기금	220,537	226,205	226,205	210,812	-	1,191	93.2
국제질병퇴치기금	92,053	92,053	92,053	59,106	-	7,297	64.2
합계	312,590	318,258	318,258	269,918	-	8,488	84.8

자료: 외교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69억 6,900만원(3.1%)이 많은 5,615억 1,7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783억 5,800만원(206.6%)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 (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49,269	231,958	231,958	291,599	59,641	242,330
기금	133,890	312,590	312,590	269,918	△42,672	136,028
합계	183,159	544,548	544,548	561,517	16,969	378,35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외교부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은 예산 대비 372억 3,700만원(1.2%)이 적은 3조 814억 6,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3,376억 2,600만원(12.3%)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 (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609,949	2,874,765	2,806,112	2,811,547	5,435	201,598
기금	133,890	312,590	312,590	269,918	△42,672	136,028
합계	2,743,839	3,187,355	3,118,702	3,081,465	△37,237	337,62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외교부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외교부의 자산은 5조 2,269억 1,300만원, 부채는 1,091억 6,900만원으로 순자산은 5조 1,177억 4,4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3,129억 700만원, 투자자산 471억 2,500만원, 일반유형자산 4조 7,892억 4,800만원, 무형자산 685억 7,1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90억 6,3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3,656억 7,300만원(6.5%) 감소하였다. 이는 주로 가격재평가 등으로 인해 건물 등 감소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3,513억 7,300만원 감소, 정부내단기예탁금 회수로 인한 단기대여금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 344억 9,2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16억 8,600만원, 장기차입부채 494억 5,400만원, 장기충당부채 580억 2,9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531억 6,100만원(94.9%)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공공자금관리기금에 대한 정부내장기예수금 증가 등으로 장기차입부채가 전기대비 491억 5,700만원 증가하고, 퇴직급여충당금 설정대상 인원의 증가 등으로 장기충당부채가 전기대비 53억 5,200만원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2022회계연도 외교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5,226,913	5,592,586	△365,673	△6.5
Ⅰ. 유동자산	312,907	347,399	△34,492	△9.9
Ⅱ. 투자자산	47,125	28,510	18,615	65.3
Ⅲ. 일반유형자산	4,789,248	5,140,621	△351,373	△6.8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68,571	68,321	250	0.4
Ⅵ. 기타비유동자산	9,063	7,735	1,328	17.2
부 채	109,169	56,008	53,161	94.9
Ⅰ. 유동부채	1,686	3,035	△1,349	△44.4
Ⅱ. 장기차입부채	49,454	297	49,157	16,551.2
Ⅲ. 장기충당부채	58,029	52,677	5,352	10.2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5,117,744	5,536,578	△418,834	△7.6
Ⅰ. 기본순자산	2,191,397	2,191,397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57,220	356,056	△98,836	△27.8
Ⅲ. 순자산 조정	2,669,126	2,989,124	△319,998	△10.7

자료: 외교부

외교부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조 7,088억 9,8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조 7,861억 6,800만원, 관리운영비 2,302억 8,000만원, 비배분비용 16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772억 6,900만원, 비배분수익 2,370억 9,000만원, 비교환수익 등 491억 1,4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1,561억 7,700만원(5.5%) 감소한 2조 7,037억 4,700만원이며, 이는 재화 및용역제공수익 증가, 지출금반납금의 증가 등에 비배분수익이 전년도 대비 1,708억 7,6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27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1조 1,572억 5,700만원)과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7,189억 1,300만원), 국제기 구분담금 프로그램(5,064억 7,7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059억 4,900만원과 경비 1,243억 3,0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8억 6,400만원과 대손상각비 3억 8,9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외교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708,898	2,675,650	33,248	1.2
가. 프로그램 총원가	2,786,168	2,719,243	66,925	2.5
나. 프로그램 수익	77,269	43,593	33,677	77.3
II. 관리운영비	230,280	248,158	△17,878	△7.2
III. 비배분비용	1,658	2,329	△671	△28.8
IV. 비배분수익	237,090	66,214	170,876	258.1
V.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2,703,747	2,859,924	△156,177	△5.5
VI. 비교환수익 등	49,114	12,477	36,637	293.6
VII. 재정운영결과(V-VI)	2,654,633	2,847,446	△192,813	△6.8

자료: 외교부

외교부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5조 5,365억 7,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5조 1,177억 4,400만원으로 기초 대비 4,188억 3,400만원(7.6%)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1,928억 1,300만원 감소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조달및이전이 기초 대비 1,648억 7,800만원 감소,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1조 3,078억 1,7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2조 8,827억 3,8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3,269억 4,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투자증권평가손실 14억 3,300만원, 자산재평가손실 3,185억 6,5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외교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5,536,578	4,675,530	861,048	18.4
Ⅱ. 재정운영결과	2,654,633	2,847,446	△192,813	△6.8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555,797	2,720,675	△164,878	△6.1
Ⅳ. 조정항목	△319,998	987,819	△1,307,817	△132.4
Ⅴ. 기말순자산(Ⅰ - Ⅱ + Ⅲ + Ⅳ)	5,117,744	5,536,578	△418,834	△7.6

자료: 외교부

외교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② **미얀마(ODA)**, ③ **에티오피아(ODA)**, ④ **재외공관 안전강화** 등이 있다.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사업은 국유화 공관 디지털 사이니지 사업 시급성 결여로 35억원이 감액(323억원 → 288억원)되었고, 미얀마(ODA)는 현지 정세 불안 및 집행부진 사업을 감안하여 22억원이 감액(45억원 → 23억원) 되었다. 에티오피아(ODA)는 집행부진 사업을 감안하여 10원 감액(247억원 → 237억원)되었고, 재외공관 안전강화 사업은 아프가니스탄 정세 감안, 주아프가니스탄 대사관 민간방호 예산 일부인 4억원이 감액(193억원 → 189억원)되었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루마니아 의료기기 공여**, ② **경제안보센터 신설**, ③ **글로벌연수(ODA)**, ④ **대도청보안시스템 사업** 등이 있다.

정상 공약 이행을 위해 루마니아 의료기기 공여 사업에 88억원이 신규 반영되었고,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경제안보센터 신설로 24억원이 신규 반영되었다. 개발도상국 학위과정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해 글로벌 연수(ODA)는 12억원 증액(599억원 → 611억원) 되었으며, 대도청 보안시스템 확대 구축비용을 반영하여 대도청보안시스템 사업은 14억원(114억원 → 128억원) 증액되었다.

또한, 외교부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감액 사업으로만 구성되었으며, 국회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지적사항은 없었으며, 정부안이 수정 없이 반영되었다.

외교부는 ① 코로나19 글로벌 보건위기 대응을 위해 공적개발원조를 확대, ②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통해 한반도에 지속가능한 평화와 안전을 구현하기 위한 국제공조 강화, ③ 신남방·신북방 국가를 비롯한 중남미·아중동 국가들과의 실질 교류 증대, ④ 국제무대에서 국격을 제고 및 경제외교·글로벌 현안에 대응하는 사업을 확대, ⑤ 현장 중심의 영사조력 체계와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 추진 기반 확충, ⑥ 외교시설 및 디지털 외교 인프라 강화 등을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외교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사업에서는 연중 환율변동에 따른 대응으로 세목조정 및 이·전용을 하였는데, 향후 예산소요액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향후 경직성 경비 특성에 따라 실수요를 기반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관리체계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각 부처별로 국제기구 분담금이 심의 및 조정에서 누락되거나 일부 국제 분담금 비율이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어, 국제기구 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성을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무상 ODA 사업은 당초 세운 계획과 다르게 매년 세부사업별 및 세부사업 내에서 내역조정이 과다하고 증액조정된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정규모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넷째, 한국국제협력단은 다수의 계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긴급공고로 추진하였는데, 참여 가능한 업체 대상 입찰 공정성이 저해되고, 적격업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도하는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향후 이러한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객원교수 파견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은 국외업무여비(220-02)로 편성 및 집행되었는데, 실제로 객원교수에게 지원되는 항목은 2년 이상 단기성 해외출장이 아닌 장기체류에 따른 매월 수당의 특성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특성에 맞는 집행이 필요하다.

II

주요 현안 분석

1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 운영 개선 필요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¹⁾은 재외공관 관련 기본활동을 지원하여 외교 및 행정 인프라 역량을 강화하고, 재외공관 운영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표를 가진다. 2022년도 예산현액 7,008억 6,600만원 중 6,759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1억 7,900만원 이월되었고 247억 900만원이 불용되었다.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은 「재외공관 인건비»,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재외공관 운영»,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재외공관 안전확보 및 시설개선», 총 5개의 단위사업과 7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외공관운영	685,493	683,057	135	17,674	700,866	675,977	179	24,709	730,909
재외공관 인건비	265,348	265,348	-	-	265,348	258,668	-	6,680	271,619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65,732	163,983	-	22,930	186,913	184,592	-	2,320	184,633
재외공관 운영	20,502	20,002	135	1,153	21,290	20,233	179	878	20,268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86,263	186,076	-	△1,143	184,933	177,033	-	7,900	201,281
재외공관 안전확보 및 시설개선	47,648	47,648	-	△5,266	42,382	35,451	-	6,931	53,10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외교부

한서영 예산분석관(sy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4000

1-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비효율적 집행 개선 필요

가. 현 황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사업²⁾은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의 단위사업으로 188개 재외공관 운영에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필수적인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재외공관 임차 청사·관저 및 재외공무원 직원주택 임차료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현액 1,869억 1,300만원 중 1,84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65,732	163,983	-	22,930	186,913	184,592	-	2,320	184,633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외교부

2) 코드: 일반회계 4011-25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사업으로의 이·전용 및 세목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2년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사업 이·전용 및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2.3.23.)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103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일반 용역비 (210-14)	주뉴욕(총) 민원실 확장 이전 공사 관 련, 코로나19 하 안정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현지 발주인 용역 계약 추진
세목조정 (‘22.3.23.)			800		관리 용역비 (210-15)	2022년도 예산 편성 기준환율 대비 환율 상승(편성 1,130원 → 실제 1,216원)으로 2/4분기 관리용역비 정기배정액 송금액이 부족
세목조정 (‘22.5.30.)			1,000			3/4분기 수시배정 송금액 부족
세목조정 (‘22.8.12.)			200			정기배정액 부족으로 4/4분기 정기배 정액의 80% 감액배정
세목조정 (‘22.9.28.)			230		일반 용역비 (210-01)	용역계약 원인행위금액 부족(현판 제 작 등)
세목조정 (‘22.10.14.)		특근 매식비 (210-05)	70			일반수용비 4/4분기 정기배정액 감액 분 보전
세목조정 (‘22.12.23.)		임차료 (210-07)	900			4/4분기 수시배정 송금액 부족(공관 실수요 반영)
세목조정 (‘22.12.23.)			380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대규모 환차손 발생으로 공공요금및제 세 4분기 정기배정액 부족
자체이용 (‘22.11.2)	북미지역 국가와의 전략적 특별협력관계 강화(1133-401) 외 다수	일반 수용비 (210-01) 외 다수	2,434		임차료 (210-07)	대규모 환차손 발생으로 임차료 4분기 정기배정액 부족
협의이용 (‘22.11.18.)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1132-401) 외 다수		14,173			
협의전용 (‘22.11.18.)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4031-401)	공사비 (420-03)	4,000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자체이용 (22.12.15.)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교류협력 강화 (1134-401) 외 다수	일반 수용비 (210-01) 외 다수	797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전세계적인 에너지 가격 상승 여파로 해외 공공요금이 폭등하여 공공요금 보전 시급
협의전용 (22.12.16.)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4021-401)	상용임금 (110-03)	650		시설비 유지비 (210-09)	대규모 환차손 발생으로 하반기 직원 차량 공용사용 지원경비 부족
자체전용 (22.12.2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외 다수	일반 수용비 (210-01) 외 다수	157		유류비 (210-08)	대규모 환차손 발생 및 세계적인 물가 인상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공관운 영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
자체전용 (22.12.21.)			210		시설장비 유지비 (210-09)	
자체전용 (22.12.21.)			563		관리 용역비 (210-15)	
자체전용 (22.12.21.)			33		국외업무 여비 (220-02)	
자체전용 (22.12.21.)			50		공사비 (420-03)	
자체전용 (22.12.2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자산 취득비 (430-01)	491		공공요금 및 제세 (210-02)	세계적인 물가인상, 에너지가격 상승 여파로 해외 공공요금 폭등에 따른 공 공요금및제세 부족분 보전 필요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사업에서는 연중 환율변동에 따른 대응으로 세목조정 및 이·전용을 하였는데, 경직성 경비에 대한 향후 예산소요액에 대한 예측이 부족하여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었으므로, 향후 실수요를 기반으로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사업에서는 2022년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에 대응하기 위해 임차료와 시설장비유지비와 같이 재외공관 운영 관련 경직성 경비 지출에 대해 이·전용 및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하였다³⁾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사업집행과정에서 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예비비나 이·전용을 통해 보존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2022년 연중 지속된 환율변동으로 인해 대규모 환차손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당시 필요에 의한 반복적으로 세목변경으로 인해 향후 지출되는 예산규모에 대해 예측이 부족하여 다음과 같이 예산이 집행되었다.

우선, 임차료에 대한 이·전용 및 세목조정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22년 11월 18일에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ODA) 예산 등 8개 세부사업의 일반수용비 등에서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의 임차료(210-07)로 181.7억원을 협의이용 및 전용하였으며,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12월 23일에 임차료(210-07) 잔액 12.8억원에 대해서 일반수용비(210-01)로 세목조정하였다. 협의이용에 대한 사유는 2022년도 대규모 환차손 발생으로 4/4분기 임차료 정기배정액 부족이며, 세목조정은 일반수용비의 4분기 정기배정액 감액분과 수시배정액의 부족분에 대한 보전이다.

임차료로의 협의이용은 예산의 통제강화를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게 되는데, 이후 임차료의 잔여액을 불용처리하지 않고 일반수용비의 부족분에 대해서 별도 승인절차가 없는 세목조정을 통해 임차료의 잔여액으로 충당하였다.

이는 11월 18일 협의이용 당시 가까운 시일인 12월에 대한 일반수용비의 정기배정액과 분기별 수시배정액 집행소요액과 부족분에 대해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3) 예산 편성 당시, 편성환율(1,130원/달러)을 기준으로 외화로 편성된 예산 대비 집행 당시 환율이 높을 경우, 그 차이로 인해 집행되어야 할 예산규모가 더 커진다.

4) 외화로 송금하는 예산 특성상, 송금환율에 따라 유동적인 원화 환산액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함이다.

불구하고, 면밀한 예측 없이 근시안적 필요에 의해 추가적인 세목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협의된 임차료 비목을 추후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전용하여 집행한 내역]

(단위: 백만원)

날짜	구분	~에서	~으로	금액	사유
11.18.	협의 이용	한반도 평화구조 정착 및 통일외교 추진 (1132-401)외 다수 일반수용비(210-01) 외 다수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외 다수	14,173	대규모 환차손 발생 으로 4/4분기 정기 배정액 부족
11.18.	협의 전용	재외공관 리모델링 및 시설정비 (4031-401) 공사비(420-03) 외 다수	임차료(210-07) 외 다수	4,000	대규모 환차손 발생 으로 4/4분기 정기 배정액 부족
12.23.	세목 조정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외 다수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외 다수	900	일반수용비 4/4분 기 정기배정액 감액 분 보전
12.23.	세목 조정	임차료(210-07) 외 다수	일반수용비 (210-01) 외 다수	380	4/4분기 수시배정 송금액 부족(공관 실수요 반영)

자료: 외교부

또한, 2022년 3월부터 9월까지 4차례 시설장비유지비(210-09)가 관리용역비(210-15)로 세목조정 되었으며, 위의 사례와 유사하게 시설장비유지비(210-09)의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하반기에 타사업 상용임금 등에서 협의전용 하였다. 이에 대한 사유로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에서 관리용역비(210-15)로의 세목조정은 환율상승으로 인한 관리용역비의 정기배정액 부족이다.

[연초 시설장비유지비(210-09) 세목조정 및 연말 전용 내역]

(단위: 백만원)

날짜	구분	~에서	~으로	금액	사유
03.23.	세목 조정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관리용역비 (210-15)	800	환율상승으로 2/4분기 관리 용역비 정기배정액 송금부족
05.30.	세목 조정			1,000	환율상승으로 3/4분기 관리 용역비 정기배정액 송금부족
08.12.	세목 조정			200	3/4분기 수시배정 송금액 부족
09.28.	세목 조정			230	정기배정액 부족으로 4/4분 기 정기배정액의 80% 감액 배정
12.16.	협의 전용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4021-401) 상용임금(110-03)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650	대규모 환차손 발생으로 하 반기 직원차량, 공용사용 지 원경비 부족
12.21.	자체 전용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4011-251) 외 다수 일반수용비 (210-01) 외 다수		210	대규모 환차손 발생 및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공관운영 을 위한 필수경비 부족

자료: 외교부

하지만, 위의 사례와 유사하게 향후 소요액에 대한 예측을 선행하지 않고 근시안적 필요에 의해 비효율적 예산집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경직성 경비의 특성을 가진 시설장비유지비(210-09)는 분기별로 예측되는 집행예산규모가 유사하므로, 연초에 다른 비목으로의 세목조정 시 연말 집행액 부족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관리용역비의 정기배정액 부족분에 대해서 연초부터의 불필요한 세목조정을 했으며, 이는 효율적 예산집행을 저해하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환율변동과 공관별 예산집행 현황을 상시 주시하면서 각 공관과의 긴밀한 소통 하에 예산항목 및 배정액을 재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집행을 위한 노력과, 연말 환차손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세목조정을 활용하여 타 사업의 집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2. 재외공관 행정직원 주거보조비 지원 관련 집행방식 개선 필요

가. 현 황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⁵⁾은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의 단위사업으로 재외공관 외교활동 수행의 필수 지원인력인 행정직원의 교육훈련, 인건비, 전지의료 검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현액 1,849억 3,300만원 중 1,77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9억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86,263	186,076	-	△1,143	184,933	177,033	-	7,900	201,281
행정직원 인건비	170,848	170,848	-	△650	170,198	164,443	-	5,755	185,56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의 행정직원 대상 주거보조비 지원에서 상용임금(110-03)으로의 편성과 정액지원 형태의 집행은 집행지침 및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임차료(210-07)를 통해 실비 지급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⁶⁾에 따라

5) 코드: 일반회계 4021-401

6)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

제24조(주거보조비) 공관장은 내국인 행정직원에게 대해 현지 주택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실비변상 차원에서 주거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지급액 및 지급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현지주택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주거보조비)을 ‘행정 직원 인건비’ 내역사업에서 지원하고 있다.

관련 규정인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 의하면, 재외공관 행정직원 대상 현지주택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변상되어야 하며,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⁷⁾에서 정한 목적에 따르면 임차료(210-07)로 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행정직원에 대한 주거보조비는 상용임금(110-03)으로 집행되고 있어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한 비목과는 다른 비목으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다. 또한, 계좌이체 및 수표로 매달 1,000불 정액지원과 실비 변상이 혼합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이는 「재외공관 행정직원 규정」에서 정하는 지급방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재외공관 행정직원 1월분 임차료 지급 내역]

지급결의 날짜	적요	사업명	목	세목	미화 (USD)	수량인
2022. 12.20.	행정직원 임차료 (2023. 1월)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인건비	상용 임금	7550.00	계좌이체 4명/ 수표수령자 14명
2022. 12.20.	행정직원 임차료 (2023. 1월)				2200.00	계좌이체 4명/ 수표수령자 14명

자료: 외교부

이에 대해 외교부는 주거보조비에 대한 지원은 과거 2007년부터 상용임금(110-03) 비목을 통해 정액지원, 즉 수당의 형태로 통상적으로 집행되었으며, 2020년 1월 이후 채용된 전체 행정직원과 2020년 1월 이전에 채용된 행정직원 중 희망자에 한해 실비정산으로 지원하고 있다. 2020년 1월 이전에 채용된 나머지 직원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정년 및 자진퇴사를 통한 자연감소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7) 210-07 임차료: 임대차 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버스 및 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통신망을 통한 소프트웨어 임대료에 따른 임차료 등

하지만, 2020년 이전의 채용자⁸⁾에 대해서는 정액으로 주거보조비가 지원되고 있어 관련 규정과 지침에 부합하지 않는다. 또한, 같은 행정직원 내에서 상이한 보수와 지급방식은 공정성 측면에서 어긋날 수 있다.

[재외공관 임차료 지급 방식]

구분	지급현황	
2020.1.1. 이후 채용자(1625명)	한국국적 행정직원 대상 임차료 실비를 임차상한선 범위 내에서 지급(영주권자 및 외국국적자는 미지급)	
2020.1.1. 이전 채용자(480명)	(정액지원) 한국국적 행정직원 월 1,000USD 정액지급	(실비지원) 한국국적 행정직원 희망자에 한해 상한선 범위 내 실비지급 ¹⁾

주: 1) 공관에 따라 상이하며, \$1,300(57개공관), \$1,400 ~ \$1,700(91개공관), \$1,800 ~ \$2,000(17개공관), \$2,100이상(15개공관)이 실비로 지급되고 있음

자료: 외교부

따라서, 관련 규정과 지침을 준수하여 주거보조비 집행에 부합하는 임차료 (210-07) 비목으로 실비지원을 통해 집행될 수 있도록 임차료 비목 신설이 필요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 행정직원 대상 실비지급 형태로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⁹⁾.

8) 2018년 무기계약직 전환에 따라 작성된 근로계약서 상 주거보조비 정액 지원이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불이익의 변경이 불가하며, 근로기준법 위반 등 관련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현재 약 480여명의 한국적 행정직원의 주거지원금이 정액(수당)의 형태로 지급되고 있음을 외교부에서 설명하였다.

9) 채용당시 근로계약서 상 주거보조비 정액 지원이 근로조건에 포함되어 있어 근로자 동의 없는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장기적 관점에서 지급방식의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1-3. 재외공관 직원 및 행정직원 집행 관련 회계연도 독립원칙 준수 필요

가. 현 황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¹⁰⁾은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의 단위사업으로 재외공관 외교활동 수행의 필수 지원인력인 행정직원의 교육훈련, 인건비, 전지의료 검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현액 1,849억 3,300만원 중 1,770억 3,3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79억원을 불용하였다.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사업¹¹⁾은 재외공관운영 프로그램의 단위사업으로 188개 재외공관 운영에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등 필수적인 기본경비를 지원하고 재외공관 임차 청사·관저 및 재외공무원 직원주택 임차료 예산을 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현액 1,869억 1,300만원 중 1,845억 9,2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23억 2,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및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86,263	186,076	-	△1,143	184,933	177,033	-	7,900	201,281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165,732	163,983	-	22,930	186,913	184,592	-	2,320	184,633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외교부

10) 코드: 일반회계 4021-401

11) 코드: 일반회계 4011-251

나. 분석의견

재외공관 행정직원 대상 경직성 경비는 익년도 건을 미리 집행하거나, 전년도 건을 연체하여 집행되고 있는데,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회계연도 독립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사업과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사업에서는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 등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재외공무원과 행정직원에게 매달 임차료를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재외공관 지급부 상 일부 지급 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국가재정법」¹²⁾에서 정하는 회계연도 독립원칙이 준수되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2023년 1월에 대한 직원주택 임차료를 2022년 12월에 지급하는 등 익년도 임차료를 미리 집행하거나, 2021년도 4분기에 대한 직원 의료보험 지원액을 2022년 2월에 집행하는 건과 같이 연체된 전년도 요금을 회계연도를 넘어 집행하는 건은 2022회계연도 외의 시기에 집행되고 있다.¹³⁾ 또한, 익년도 임차료를 미리 집행하는 건은 12월말(12월 20일, 30일)에 다수 지급되었다는 점에서 계약조건 등의 조정을 통해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함을 볼 수 있다.

12) 「국가재정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기금·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13) 주미대사관, 주영대사관, 주프랑스대사관의 모든 임차료 집행 건 중 회계연도를 초과한 집행은 표에서 명시된 건에만 해당된다는 점에서, 회계연도를 초과한 집행은 사전에 충분히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회계연도 독립원칙 준수 필요 내역 예시]

(단위: 천원)

회계연도 원칙 위반 유형 구분	지급 결의날짜	적요	사업명	금액
익년도 임차료 미리 집행	2022.12.15.	직원주택 임차료 (2023년 1월 회수분)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주미대사관)	5,070
	2022.12.20.	행정직원 임차료 (2023년 1월, 3명)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주미대사관)	10,213
	2022.12.20.	행정직원 임차료 (2023년 1월) 15건		40,330
	2022.12.30	직원주택 임차료 (2023년 1월)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주영대사관)	92,779
	2022.12.30	직원주택 임차료 (2023년 2월, 9명)	재외공관 운영 기본경비 (주영대사관)	36,800
연체된 전년도 요금 납부	2022.2.15.	직원의료보험 지원액 (2021년 4분기)	재외공관 근무여건 개선 (주미대사관)	206,906

자료: 외교부

임차료와 같은 경직성 경비는 회계연도 독립원칙 준수를 통해 매년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예산 규모의 예측이 가능하고 계획에 대한 집행의 준수여부 확인을 통해 투명성이 확보되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요하다.

따라서, 재외공관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직성 경비는 매달 정기적으로 집행되는 항목이므로 집행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당해연도 내에서의 집행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2021년 1월 정부차원에서 국제기구분담금을 통합적 및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국제기구분담금법)」이 제정되었고, 이를 통해 ① 분담금의 부담이 국가이익 및 외교정책 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② 동일 목적의 분담금이 중앙행정기관별로 중복 편성 및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관리원칙을 가지고 있다.

2-1. 국제기구분담금 평가체계 개선 필요

가. 현 황

국제기구분담금 시행에 따라, 총 38개 중앙행정기관에서 소관 국제기구분담금 대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체평가는 각 부처가 아래와 같이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국제기구분담금에 대한 정확한 기초정보 확인 및 국제기구분담금법 취지와 부합하는 분담금인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2022년 복수기관 기여 국제기구 현황]

(단위: 개, 백만원)

번호	국제기구명	분담금 납부 기관	분담금 수	2022년도 편성액
1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외교부, 국조실, 환경부, 교육부, 과기부, 원안위, 국토부, 노동부, 산자부, 국세청, 통계청, 농식품부, 행안부, 문체부, 금융위, 기재부, 감사원, 인사처, 복지부	42	48,337
2	유엔아태경제사회위원회 (UNESCAP)	과기부, 외교부, 기재부, 국토부, 환경부, 통계청, 해수부, 복지부, 통일부, 농진청	17	2,454

한서영 예산분석관(syhan@assembly.go.kr, 6788-4639)

(단위: 개, 백만원)

번호	국제기구명	분담금 납부 기관	분담금 수	2022년도 편성액
3	유엔개발계획(UNDP)	외교부, 환경부, 농식품부, 과기부, 기재부, 행안부, 경찰청	9	25,089
4	세계보건기구(WHO)	외교부, 복지부, 환경부, 질병청, 식약처	12	62,439
5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UNESCO)	외교부, 교육부, 문체부, 환경부, 문화재청	11	19,003
6	유엔식량농업기(FAO)	농식품부, 식약처, 해수부, 산림청	14	41,908
7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외교부, 기재부, 농식품부, 산림청	5	22,739
8	유엔환경계획(UNEP)	환경부, 외교부, 산업부, 산림청	9	2,233
9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행안부, 산업부, 공정위, 기재부	3	244
10	아세안 사무(ASEAN)	외교부, 질병청, 농식품부	5	27,647
11	국제원자력기(IAEA)	외교부, 원안위, 과기부	7	18,692
12	유엔인구기(UNFPA)	외교부, 통계청, 복지부	4	41,359
13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법무부, 통계청, 외교부	4	2,787
14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특허청, 문체부, 법무부	4	2,668
15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환경부, 문화재청, 산림청	4	1,768
16	세계식량계획(WFP)	농식품부, 외교부	4	96,079
17	콜롬보플랜	외교부, 식약처	2	29
18	국제백신연구소(IVI)	복지부, 질병청	2	18,027
19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	교육부, 인권위	3	1,366
20	국제에너지기구(IEA)	산업부, 해수부	2	1,329
2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환경부, 기재부	2	2,114
22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산림청, 외교부	3	2,911
23	생물다양성협약(CBD)	산림청, 해수부	2	864

(단위: 개, 백만원)

번호	국제기구명	분담금 납부 기관	분담금 수	2022년도 편성액
24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경찰청, 문체부	3	4,637
25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외교부, 국토부	7	2,715
26	세계관세기구(WCO)	관세청, 기재부	2	3,663
27	국제해사기구(IMO)	해수부, 외교부	4	3,777
총 합			186	458,900

자료: 외교부, 「2022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종합보고서」, 2022.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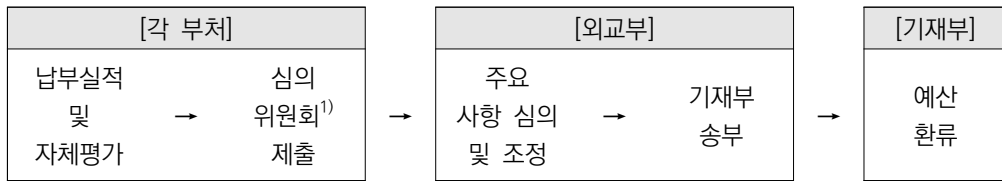
나. 분석의견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된 관리체계와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에도 불구하고,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정결과와 부처별 자체평가의 차별성이 확보되지 않고, 평가결과 기반 예산 편성 과정으로의 환류가 확인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2021년 1월 제정된 국제기구분담금 법률은 그동안 각 부처에서 납부하고 있는 국제기구 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고, 이를 위해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략적인 외교정책을 수행하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모든 부처는 외교부 소속 국제기구분담금 심의위원회에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경비에 관해 의무적, 그리고 재량적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분담금 자체평가 및 환류 과정]



주: 1) 위원장(외교부 제2차관) 포함 20명 이내 위원(관계기관 고위공무원 및 국제기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료: 외교부

각 부처에서 작성 및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외교부 심의위원회에서는 관련 내용을 심의 및 조정하는 과정을 거친다. 외교부에서 2022년 8월에 작성한 국제기구분담금 종합보고서에 의하면 총 38개의 중앙행정기관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했고 이를 바탕으로 심의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외교부 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들의 자료검토 과정을 거쳤다.

[국제기구분담금 자체평가 결과 자료 검토 기준]

구 분	세부항목
자체평가 계획의 적절성	분담금 납부목적이 실제로 외교정책목표와 부합하는지 여부, 각 기관의 분담금 중복성에 대한 판단이 정확한지 여부 등
자체평가 과정의 신뢰성	예산집행률, 당초 계획안 분담금 납부 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이 부합하는지 여부 등
자체평가 결과의 유용성	분담금 납부를 통한 국익 제고 결과(보편적 가치 증진 관련 우리 기여 확대, 국제규범 논의 시 우리 입장 반영, 국제부대에서 우리 정책목표 관련 우호적 환경 조성 등)

자료: 외교부

이에, 최종적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2022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종합보고서」에 따른 심의 및 조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제기구분담금 자체평가는 분담금에 대한 기초정보와 자체평가로 구분되어 있으며, 자체평가항목 내에서는 ① 납부계획 상의 적절성(계획의 적절성), ② 납부 과정상의 적절성(과정의 적절성), 그리고 ③ 납부 결과의 적절성(결과의 적절성)으로 구분되어 있다.

[국제기구분담금 자체평가 항목에 따른 심의 및 조정 결과]

자체평가 항목			심의 및 조정 결과
구분	세부항목		결과
기초정보	분담금 납부내용, ODA 해당여부, 계속/신규여부, 의무/재량 여부, 지정/비지정 여부 등		→ 외교정책목표별 분류, 의무/재량, ODA 분류, 계속/신규 분류에 따른 기초결과 제시
자체평가	① 계획의 적절성	• 분담금 납부목적과 외교정책 목표의 부합성 • 여타 분담금과의 중복성 여부	→ • 대체적으로 외교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결과 제시 • 외교부, 농식품부 협의 및 조율에 따른 통폐합 사례 제시
	② 과정의 적절성	예산집행률, 당초 계획한 납부목적과 실제 사용 내용 부합 여부	→ 심의 및 조정결과 없음
	③ 결과의 적절성	국익 제고 결과(보편적 가치 증진 관련 우리 기여 확대, 국제규범 논의시 우리 입장 반영, 국제무대에서 우리 정책목표 관련 우호적 환경 조성 등)	→ 심의 및 조정결과 없음

자료: 외교부 제공 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국제기구분담금 종합보고서 상 심의 및 조정결과에 따르면, 기초정보는 충실하게 이행되었으나 자체평가에 대해서는 심의 및 조정된 결과가 다소 미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납부계획 상 적절성을 평가하는 ① ‘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취지, 즉 전략적 외교정책 수행 여부와 중복성 검토를 통한 예산의 효율적 사용 여부를 평가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외교정책목표에 부합하며 다소 미진한 점이 발견된 일부 분담금은 납부계획안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심의 및 조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충분한 심의 및 조정과정을 거쳤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우선 ① ‘계획의 적절성’ 항목에서는 분담금을 개별적으로 혹은 유형별로 외교 정책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평균적인 부합여부 정도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분담금과의 중복성 검토에서는 외교부와 농식품부가 세계식량기금(WFP)에 내는 분담금에 대해서 협의 및 조율을 거쳤다는 결과는 일부 사례 제시로만 그치고 있어, 다른 부처 간 중복되는 분담금에 대한 파악과 조정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

나머지 평가항목인 ② ‘납부집행과정에 따른 적절성’ 항목과, 국익제고결과를 나타내는 ③ ‘결과의 적절성’ 항목에 대한 심의 및 조정 결과는 나타나 있지 않아, 부처에서 제출한 자체평가 결과가 심의 및 조정된 과정이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 및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전체적으로 각 부처가 제출한 자체평가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초적인 활용에만 그치고 있어, 외교부 심의위원회 및 민간위원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분야별, 규모별, 분담금 형태(의무/사업)별 분석과 등급화를 활용한 다각적 평가방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외교목적 부합도와 중복성을 검토할 수 있는 체계의 검토와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현재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체계는 자체평가 특성상 각 부처(피평가자)가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하여 심의 및 조정되고 환류되는데, 평가의 기본이 되는 정보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처의 자체평가 이행과정에서 외교부의 역할과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국제기구분담금 관리체계는 납부계획(목표), 납부과정(집행), 납부결과(성과)의 적절성을 각 부처에서 제출하는 자체평가 결과 내용을 바탕으로 적절성 및 중복성을 검토하고 향후 예산과정에 환류하여,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외교적 목표달성과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달성하기 위한 기능을 가진다.

각 부처가 자체평가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정보를 외교부가 기초정보로 활용하여 심의 및 조정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환류한다는 점에서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정확성이 분담금 관리체계에서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국제기구분담금을

관리하는 역할로서 외교부는 앞서 논의한 심의 및 조정 과정 뿐 아니라, 각 부처의 원활한 자체평가 이행과정을 위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부처의 자체평가 이행과정에서 공문발송을 통하거나 부처 외의 질의응답 등을 통해 부처의 참여를 장려하였으나, 자체평가에 임하는 각 부처의 자발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일부 부처별, 혹은 분담금 별로 자체평가 참여에 누락이 생기거나 정보의 정확성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국제기구분담금 종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각 부처는 자체평가를 이행할 수 있는데, 부처가 외교적 평가항목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부재할 경우 평가결과에 대한 객관성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외교부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을 활용하여 외교적 항목에 대해서는 자주 질의 및 응답되는 항목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시, 지속적인 이행점검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 즉 분담금을 납부하는 각 부처가 가진 전문성을 바탕으로 자체평가가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또한, 제도적 시스템으로는 국제기구분담금 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예산회계시스템(dBrain)과 분담금 예산정보의 연동을 통해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여 자체평가가 가진 주관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2-2. 국제기구분담금 관리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가. 현 황

2023년도 우리나라 국제부담금은 국회를 포함한 42개 부처에 편성되어 있으며, 그 규모는 본예산 기준 1조 9,023억원이고 대다수 국제부담금(340-02목) 비목으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다. 부처별 예산현황에 의하면, 외교부가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이 약 7,148억원으로 규모가 가장 크고, 국방부(5,975억원), 기획재정부(3,595억원)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2023년도 부처별 국제부담금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2 (A)	2023 (B)	증 감	
			B-A	(B-A)/A
감사원	40	108	68	170.0
경찰청	3,690	5,752	2,062	55.9
고용노동부	14,344	15,444	1,100	7.7
공정거래위원회	35	37	2	5.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790	18,467	1,677	10.0
관세청	3,000	3,000	0	0.0
교육부	14,217	13,777	△440	△3.1
국가인권위원회	786	786	0	0.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001	2,994	△7	△0.2
국민권익위원회	72	72	0	0.0
국방부	668,412	597,470	△70,942	△10.6
국세청	140	140	0	0.0
국토교통부	3,525	3,726	201	5.7
국회	340	485	145	42.6
금융위원회	3,052	2,911	△141	△4.6
기상청	3,629	3,816	187	5.2
기획재정부	206,013	230,487	24,474	11.9
농림축산식품부	82,513	86,090	3,577	4.3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2 (A)	2023 (B)	증 감	
			B-A	(B-A)/A
농촌진흥청	25,571	32,569	6,998	27.4
대법원	3	3	0	0.0
문화재청	2,261	2,303	42	1.9
문화체육관광부	3,377	3,744	367	10.9
법무부	2,447	2,459	11	0.5
보건복지부	27,777	31,644	3,867	13.9
산림청	17,831	18,818	987	5.5
산업통상자원부	5,784	6,627	843	14.6
식품의약품안전처	4,958	4,605	△353	△7.1
여성가족부	7,766	8,266	500	6.4
외교부	595,034	714,814	119,780	20.1
원자력안전위원회	700	700	0	0.0
인사혁신처	23,906	27,006	3,100	13.0
조달청	184	184	0	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3	14	1	9.2
질병관리청	10,460	11,353	893	8.5
통계청	1,316	1,716	400	30.4
통일부	19	18	△1	△4.0
특허청	1,424	1,424	0	0.0
해양경찰청	310	317	7	2.3
해양수산부	14,827	22,840	8,013	54.0
행정안전부	4,385	5,032	647	14.8
헌법재판소	3	4	0	7.2
환경부	18,811	20,254	1,443	7.7
합 계	1,792,768	1,902,277	109,509	6.1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국제기구분담금 관리대상 및 기준 관련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각 부처별로 국제기구 분담금이 국제부담금 외 다른 비목으로 집행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의 및 조정에서 누락되는 일부 분담금에 대해서는 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국제기구 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평가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¹⁾에 의하면, 국제기구분담금에 대한 관리가 되는 대상은 정부가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의무분담금과 재량분담금으로 구분하여 정의되고 있다. 따라서, 국제부담금(340-02목)으로 편성되는 국제기구분담금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 외에 민간경상보조 등 다른 비목으로 편성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처 담당자의 착오 등으로 자체평가 및 심의조정 과정에서 대상으로 소외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일례로, 세계선거협의회와 UN거버넌스센터의 경우 사무국 운영비가 민간경상보조 비목과 일반수용비 비목으로 편성 및 집행되고 있으며 국제기구분담금 관리대상 목록에서도 누락되어 있다. 특히, 민간경상보조로 분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조사업평가가 이행된다는 점에서 국제기구분담금으로서의 역할과 비중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받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아셈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와 아셈 글로벌 에이징 센터는 아셈회원국 간 협력을 추구하는 사업들이며, 두 사업 모두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를 목적으로 동일한 항목으로 집행된다. 하지만, 비목이 다르다는 이유로 국제부담금으로 분류된 아셈 글로벌 에이징 센터는 국제기구분담금 관리 대상으로 포함되고, 출연금 비목으로 집행된 아셈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는 관리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은 상태로 자체평가, 심의 및 조정과정이 이행되었다.

1)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국제기구 분담금”이란 정부가 국제기구에 의무적으로 납부하여야 하는 경비 또는 국제기구와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재량적으로 납부하는 경비를 말한다. 다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및 「녹색기후기금의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색기후기금에 납입하는 출자금 또는 출연금은 제외한다.

[국제기구별 비목에 따른 분담금 관리 대상 여부]

국제기구명	소관부처	비목구분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대상 여부 ¹⁾
세계선거기관협의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회비 (국제부담금)	○
		사무국 운영비 (민간경상보조)	×
UN거버넌스 센터	행정안전부	사업비 (국제부담금)	○
		센터운영비 (일반수용비)	×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외교부	의무분담금 (국제부담금) ²⁾	○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	중소벤처기업부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금)	×
아셈 글로벌 에이징 센터	국가인권위원회	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국제부담금)	○

주: 1) 2022년도 국제기구분담금 종합보고서(2022. 8월) 상 각 부처 국제기구분담금 납부계획안에 포함된 국제기구 사업수 및 분담금액과 비목구분이 일치하는 경우, 관리대상여부로 표시하였음.

2) 국제부담금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비목 내 사무실 임차료 납부 포함

자료: 각 부처 사업설명자료 및 외교부 국제기구분담금 종합보고서의 첨부 4 “2023년도 국제기구분담금 납부계획안(기관별 현황)”을 바탕으로 재구성

이러한 현상은 각 부처별로 국제기구에 대한 이해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국제부담금 비목으로 분류되는 사업에 대해서만 국제기구분담금 자체평가를 시행하며, 그렇지 않은 사업은 부처의 자체평가 대상에 포함되지 못하여 납부금액에 따른 예산의 효과성 측정에서 누락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제기구 분담금의 예산비목이 국제부담금(340-02목)이 아닌 다른 비목인 경우, 국제기구에 대한 재정적 기여와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자체평가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우리나라의 일부 국제 분담금의 비율이 과도하게 부담되고 있어, 부처별로 납부되고 있는 분담금의 통합적 관리를 통해 분담금 비율에 따른 효과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별로 우리나라의 부담액 비율이 상이한데, 국제기구에 납부하는 분담금에 대해 통합적으로 관리하지 못할 경우, 일부 국제기구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분담률에 따른 효과 측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일례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의 경우 녹색성장 관련 글로벌 동반성장을 추구하는 국제기구로, 2012년에 우리나라 주도로 설립되었으며, 이후 총 7,240만불의 예산액 중 우리나라가 일반분담금으로 납부하는 금액이 1,000만불로 최대 기여국이며, 그 다음으로는 영국이 280만불, 노르웨이가 200만불을 부담하여 우리나라가 최대 기여국이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서는 분담금 비율에 따른 외교적 목표달성 여부와 같이 효과성 및 타당성 분석이 필요하며, 이를 통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국제기구 분담금에 해당되는 사업을 관리대상 사업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적극적인 자체평가 이행 선행되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와의 협의과정을 통해 국제기구에 대한 명확하고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세부적으로 국제기구로 분류된 사업에 대해서 편성 및 집행되는 비목 등을 통일하여 여러 부처에 산재되어 있는 국제분담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국제기구별 분담금 납부 예시]

(단위: 백만원)

국제기구	소관부처	구 분	2022 결산	비고	사무국 국내 위치 여부
세계선거기관 협의회 (A-WEB)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회비(국제부담금)	12	회원국별 1만불	○
		사무국 운영비· 사업비 (민간경상보조)	787		
UN 거버넌스 센터	행정 안전부	센터 운영비 (일반수용비 등)	356	우리나라 전액 부담	○
		사업비(신탁기금) (국제부담금)	1,960		
아셈 중소기업 친환경 혁신센터	중소벤처 기업부	센터 운영비· 사업비 (출연금)	1,311	우리나라 전액 부담	○
아셈 글로벌 에이징센터	국가인권 위원회	센터 운영비· 사업비 (국제부담금)	683	우리나라 전액 부담	○
국제백신 연구소(IVI)	보건 복지부	연구소 운영비 (국제부담금)	10,000	운영비 30% 부담	○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 (GGGI)	외교부	사무국 운영비· 사업비 (국제부담금)	13,215	일반분담금 1000만불 부담 (영국 280만불, 노르웨이 200만불)	○
재한유엔 기념공원 (UNMCK)	외교부	인건비·운영비· 사업비 (국제부담금)	1,609	한국부담이 약 90%. 17억 4300만원 납부	○
한일중 3국 협력 사무국 (TCS)	외교부	의무분담금	1,714	운영비 1/3 및 사무국 임차료(총 분담금 약 44% 부담)	○

자료: 외교부

가. 현 황

외교부는 다수의 국제 및 외교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외화집행비율이 높은 사업, 즉 국제기구 분담금이나 국제회의 참가비와 관련된 지출은 외화편성 예산으로 편성 및 집행된다.

외화편성예산이란 예산 편성이 완료되기 전 3개월 평균환율(기준환율)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는 외화예산을 미리 계상함으로서 환차변동에 따른 위험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외교부에 편성된 외화표시예산 현황은 다음과 같다.

[외교부 외화표시예산 편성 현황]

(단위: USD)

구분	2021		2022	
	정부안금액	국회확정금액	정부안금액	국회확정금액
경제외교	-	-	-	-
국제개발협력	-	-	58,263,716	58,263,716
국제기구분담금	356,972,948	356,972,948	400,157,476	400,157,476
글로벌네트워크구축	-	-	439,320	439,320
다자관계 협력	300,000	300,000	-	-
문화외교 및 국제교류	19,523,736	19,622,910	20,165,648	20,165,648
여권업무 선진화	15,454	15,454	15,454	15,454
역내국가와의협력강화 및 신남방 및 신북방정책추진	-	-	4,500	4,500
외교 행정지원	22,888,691	22,888,691	22,996,142	22,996,142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3,840,287	3,840,287	3,950,112	3,950,112
원자력비확산외교강화	-	-	300,000	300,000
재외공관운영	434,857,173	431,819,984	455,771,495	301,062,017
재외동포보호및지원	-	-	-	-
정상외교	9,048,784	9,048,784	8,996,747	8,996,747
지역외교	484,280	484,280	-	-
차입금원금 상환	3,066,116	2,899,174	-	-
한반도 평화 조성	1,917,118	1,978,168	2,103,695	2,103,695
항공권연대질병퇴치	27,616,529	27,616,529	-	-
총합계	880,531,116	877,487,209	973,164,305	818,454,827

자료: 외교부

한서영 예산분석관(syhan@assembly.go.kr, 6788-4639)

나. 분석의견

외화로 집행하는 사업이 다수인 외교부 특성상 환차변동에 따른 환차손으로 인해 사업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 재정구조를 확보하도록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외교부는 다수의 사업이 외화표시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국제기구분담금과 재외공관 관련 사업의 규모는 외교부 외화표시예산 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기준환율 대비 집행당시 환율 차이가 클수록 환차손의 발생이 집행예산규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2022년의 경우, 1,131원/달러의 기준환율로 적용되어 국제기구 분담금, 회의참가비, 공적개발원조 사업비(ODA), 재외공관 운영비 등이 외화표시예산으로 편성되었는데, 연중 1,131원/달러를 상회하는 급격한 환율상승¹⁾으로 인해, 2018년 이후 외교부 집행예산에서 환차손이 발생하였다.

[2018~2023년 외교부 환차익 및 환차손 발생 내역]

(단위: 백만원, 1백만USD)

연도	외교부 총예산 (본예산 기준)	외화예산		환차손익		비고
		미화	원화환산 (편성환율)	환차익	환차손	
2018	2,270,731	844	953,513 (1,130원/\$)	3,762	-	불용처리 (국고반납)
2019	2,355,607	879	966,926 (1,100원/\$)	-	31,415	-
2020	2,617,199	878	1,044,242 (1,190원/\$)	10,991	-	불용처리 (국고반납)
2021	2,736,149	829	1,002,999 (1,210원/\$)	59,563	-	불용처리 (국고반납)
2022	2,874,765	746	842,629 (1,130원/\$)	-	61,977	-
2023	3,249,526	971	1,252,401 (1,290원/\$)	2,846	-	-

자료: 외교부

1) 314억 1,500만원의 환차손이 발생했던 2018년 이후, 2022년은 619억 7,700만원의 환차손이 발생하였으며, 그중 가장 큰 비중은 재외공관 기본경비(207억 3,000만원, 33%)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평형기금으로 지원된 국제기구분담금을 제외하고 아래와 같이 외교부 전체 외화예산²⁾과 2022년 전체, 상반기, 하반기 각각의 평균환율을 적용한 집행예산액을 비교한 결과, 특히 하반기의 평균 시장환율을 적용한다면 실제 환차손보다 2배 가까운 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환율 대비 기준환율 적용 시 발생하는 환차손]

(단위: 백만원)

구분	기준환율(A)	시장환율(B)	환차손(A-B)	실환차손
2022년 전체	1,130원/달러	1,290원/달러	95,520	61,977
2022년 상반기		1,234원/달러	62,088	
2022년 하반기		1,345원/달러	128,355	

자료: 외교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예산총칙에 의하면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환차손)이 발생할 경우, 사업계획의 조정, 이·전용, 그리고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비비를 통해 보충 받을 수 있다³⁾. 이에 대해 외교부는 환율변동에 컸던 2022년도에 ① 국제기구분담금에 대한 환차손은 외국환평형기금으로, ② 재외공관 운영 관련 집행에서 나타난 환차손에 대해서는 이전용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였다.

우선, ① 국제기구분담금 집행에서 발생하는 환차손에 대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을 통해 대응하였다. 외국환평형기금⁴⁾은 외환시장의 안정 외에도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정부예산이 외화로 환전되어 집행되어야 할 경우, 각 부처가 시중 은행을 통해 환전하는 것이 아닌, 외국환평형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재원으로 환전을 해주는 제도(외화예산환전제도) 역할도 수행한다⁵⁾.

2) 2022년 외교부 외화예산 총액이 842,629백만원이고, 그 중 외국환평형기금 지원을 받은 국제기구분담금 168,484백만원을 제외하면 674,145백만원이다.

3) 「국가재정법」 제46조, 제47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4) 외국환평형기금은 환율의 급등락 조정 및 외화 유동성 공급 등을 통해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고채 발행을 통해 조달된 원화를 예수받고, 국제금융시장에서 외화표시 외국환평형채권을 발행하여 외화를 조달하여 자금을 확보하여 원화재원과 외화재원을 통해 환율을 안정화시킨다.

5) 「외화로 지급되는 예산 등의 환전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외국환거래법」 제13조제8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7조제5항에 의하여 세출에

외교부는 매년 외화로 집행되는 예산 중 발생한 환차손에 대해서 외화예산환전 제도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여 이용하고 있으며⁶⁾ 2022년 국제기구분담금에 대해서 외국환평형기금을 활용하여 예산을 집행한 내역 및 규모는 다음과 같다.

[2022년 국제기구 분담금(외평기금 활용) 납부 현황]

(단위: 만불)

사업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
유엔 정규예산 분담금 납부	7,440	-	-	-	-	-	-	-	-	-	-	-	7,440
유엔 PKO 예산분담금 납부	-	4,999	218	-	84	89	-	4,498	4,461	1,305	778	-	16,432
기타 의무분담금 납부	476	2,582	1,456	1,253	30	219	-	136	2	2	39	-	6,195
국제기구 사업분담금 납부	2	50	583	1,155	697	1,413	518	2,802	1,186	-	724	180	9,310

자료: 외교부

산 및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이하 '예산 등'이라 한다)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지급되는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이하 '외평기금'이라 한다)이 보유하는 외화로 환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외화예산 지급)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외화예산을 지출하고자 할 경우 정부가 외화예산 편성을 위해 적용한 환율(국회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다)을 적용하여야 하며, 미화 이외의 통화는 지출결의서 작성 당일에 외국환중개회사가 고시한 재정된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 환전외국환은행의 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의 요청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율을 적용하여 외화예산을 환전한 후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6) 이처럼 외화예산환전제도를 활용하면 외화수요가 발생한 부처는 외화를 활용하여 예산을 집행할 때, 외평기금에서 예산 편성환율로 외환을 매입하는데, 이때 집행환율이 예산 편성환율과 동일하기 때문에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익이 예산변동(예산과부족)이 발생하지 않아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또한, 2023년에 다음과 같은 사업에 대해서 외교부는 외국환평형기금을 신청한 상태이다.

[2023년 외국환평형기금 신청 내역]

(단위: 만불, \$1/1,290원 기준)

예산과목	2023년 외화소요액	신청사유
인도적지원(2438-402)	700	국제부담금납부 ¹⁾
유엔정규예산분담금납부(2131-401)	7,642	국제기구분담금납부
유엔PKO예산분담금납부(2131-402)	15,744	
기타의무분담금납부(2131-403)	6,333	
국제기구사업분담금납부(2131-404)	10,004	
합 계	40,422	

주: 1) 유엔중앙긴급대응기금(CERF), 유엔인도지원조정실(OCHA)

자료: 외교부

하지만, 하반기 환율변동⁷⁾에 대해서는 외화예산환전제도와 이·전용을 통해서만 환차손에 대해 대응하였다. 환율변동에 따른 이·전용은 「예산총칙」, 「외국환거래법」, 「예산 및 기금운용 집행지침」에 따라 허용되지만, 국제기구분담금과 같은 의무성 지출과 재외공관 기본경비 및 행정직원 인건비와 같은 경직성경비는 매년 집행규모가 일정하기 때문에 사업 간 이·전용을 통한 빈번한 대응은 사업의 안정적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럼에도 집행지침 및 규정에서 환차손발생 시 대응수단으로 활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사업계획 변경이나 예비비에 대해서는 대응수단으로 활용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2022년도와 같이 급격한 환율변동이 발생할 수 있는 시기를 고려하여, 외교부 내부적으로는 주기적인 환위험 예측과 관리와 외화지출이 크거나 외교적으로 중대한 사업의 경우 계약시점 및 집행시점을 기준으로 주기적인 집행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7) 환차손 발생액 중 재외공관 기본경비 20,730백만원(33%), 재외공관 행정직원 역량강화 17,593백만원(28%), 재외공관 인건비 14,494백만원(23%), 재외공관 안전확보 및 시설개선 3,569백만원(6%), 재외공관 운영 1,116백만원(2%)을 차지한다.

또한, 환율변동에 따른 환차손 발생 시 대응수단으로 이전용과 예비비, 그리고 외국환평형기금, 그리고 예산 편성 시 외화예산 편성 등이 있는데, 가능한 수단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제도적 수단의 최적 조합을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환율변동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외화예산환전제도의 경우 집행지침에 환율변동 대응수단으로 동제도의 활용이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과 환차손에 대한 예비비는 사례가 없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기획재정부는 재량적 판단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환차손 대응수단에 대한 명확한 실시기준을 수립하는 등 외화예산 편성규모가 높은 부처가 안정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환차손 대응수단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

가. 현 황

지역별 원조사업은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¹⁾ 중 아시아 및 태평양지역 국가원조, 아프리카지역 국가원조, 중남미지역 국가원조, 중당CIS지역 국가원조, 총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도국이 지속가능한 경제사회발전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 기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나. 분석의견

한국국제협력단이 수행하는 무상ODA 사업은 당초 세운 계획과 다르게 매년 세부사업별 및 세부사업 내에서 내역조정이 과다하고 증액조정된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낮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정규모 예산 편성 및 집행관리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ODA 사업 진행 중 수원국과의 협의 지연, 수원국 정정불안 등을 사유로 사업기간 중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이·전용 등을 통해 예산을 조정한다.

2022년 전체 국별협력사업(ODA)의 집행실적에 의하면 80% 이상인 사업 수가 총 377개²⁾의 사업 중 303개인데 이는 예산현액 기준의 집행률이며, 본예산 기준 집행률에 의하면 80% 이상의 집행률 사업 수는 195건이다. 두 집행률 간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년도 이월액과 이·전용, 그리고 추경을 통한 예산조정이 있기 때문이다.

연중 이·전용을 통한 증액은 당초 예산을 적게 편성하였으나, 필요시 전용을 통해 부족한 재원을 마련하여 집행한 사업이다. 2022년을 대상으로 본예산 대비 예

한서영 예산분석관(sy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2400

2) 4개지역 국가원조 내 사업행정비, 분쟁 및 취약국, 사업효과성제고비, 소규모 무상원조를 제외

산현액이 전용 조정액을 통해 증가하는 사업은 총 125건인데 그중에서 본예산 규모 대비 10배 이상을 전용을 통해 증액한 사업은 8건이며, 2건은 예산현액 기준 집행률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액된 사업과 관련해서는 2022년 추경 및 전용 감액된 사업은 총 198개이며,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84개이다. 아래 사업은 본예산 편성 이후에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추경 및 전용 감액전용 후에도 집행률이 10% 미만대로 매우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다.

[2022년 전용된 국별협력사업(ODA) 중 집행률 부진 사업]

(단위: 백만원, %)

내역사업명	본예산	전용 조정액	추경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률 (본예산)	집행률 (예산현액)
세네갈 지속가능한 미곡 가치사슬 강화사업 (‘16~’23/850만불)	50	1,515	-	1,565	997	1994.00	63.7
에티오피아 오로미아주 라디오방송을 통한 초등교육역량강화사업 (‘13~’22/710만불)	50	864	-	914	718	1436.00	78.5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역량강화 사업(WHO) (‘22~’25/1,200만불)	4,141	-	△2,938	1,203	6	0.14	0.5
인도네시아 해안쓰레기 관리정책 역량강화 (‘21~’23/250만불)	700	-	△529	171	1	0.14	0.7
가나 관개지구 개선 및 물 관리 역량강화 사업 (‘20~’24/653만불)	1,000	△291	△450	259	14	1.40	5.3

주: 증액된 사업의 경우 본예산 규모 대비 10배 이상 전용증액한 사업 중 집행률이 80% 미만인 사업
이며, 감액된 사업의 경우 본예산 대비 50% 이상 감액한 사업 중 집행률이 10% 미만인 사업임
자료: 외교부

이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에 의하면 ODA 사업의 특성상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수원기관과의 협의의사록 체결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아 국가 간 약정 체결 및 사업 착수에 시일이 걸려 사업운영계획에 차질이 발생한다. 또한, 계속사업도 수원국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하는 ODA 사업의 특성상 수원국의 정세 불안 등 예측하지 못하는 요인이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예산 수립 시 제출한 계획과는 다르게 집행 시점에서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2022년 전용된 국별협력사업(ODA) 중 집행을 부진 사유]

사업명	집행부진사유	집행부진사유 유형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역량강화사업	WHO 인도네시아 사무소의 사업추진역량 및 의지가 부족하여 양자사업(사업 수행자를 국내기관)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업비 지연 발생	계획변경 (추가조사 등 포함)
인도네시아 해안쓰레기 관리정책 역량강화	수원기관 측의 사업대상지 변경 및 구성요소 변경 요청으로 인한 신규사업대상지 추가조사에 따른 사업일정 지연	
가자 관개지구 개선 및 물 관리 역량강화 사업	가자 관개청의 외화계좌 개설이 현지 행정 처리 지연으로 인해 연재 지급 불가	사업착수 준비

자료: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하지만, 집행과정 중 필요에 의해 다른 사업으로부터 전용증액 되었음에도 집행이 되지 않거나 차년도로 이월하는 것은 사업 초기 단계와 사업 진행 단계에서 예산 집행계획이 면밀하지 않아 추경 및 이·전용을 통해 과도하게 예산이 조정되었음을 의미한다.

일례로, 인도네시아 국가 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 역량강화 사업의 경우 코로나-19의 여파로 WHO와의 약정체결 일자가 하반기로 지연됨에 따라 추경 시 감액되었고³⁾, 이후 추경 감액이 이루어졌음에도 2022년 5월⁴⁾ 기획조사과정에서 사업수

3) 2022년도 예산안 심사 당시 외통위 감액 제안사유로 인도네시아 사업이 “COVID-19 확산에 따른 수원기관 협조 난항, 현장 사업 형성 및 수행 어려움”으로 감액의견이 제시되었음에도 2022년 정부 제출 예산안대로 사업 예산이 확정되었다.

4) 추경(2022년 5월) 당시에도 WHO와의 약정체결이 지연되고 있었으므로, 추경이 결정되기 전 WHO

행자인 WHO의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부족을 확인하여 양자사업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사업비 전액이 불용되었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에서 수행하는 무상ODA의 경우 수원국의 행정적 특성을 고려하여 수원국의 사업추진 여건 및 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면밀한 검토과정을 거쳐서 불필요한 예산조정은 최소화하고 향후 예산안 심사 시에도 적정 금액을 계상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의 사업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수원국 특성 상 행정적 지연에 의해 확인이 늦어졌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미 WHO는 국가재난대응 공공의료체계와 비슷한 사업을 호주와 진행하고 있음을 뒤늦게 확인하였다.

가. 현 황

한국국제협력단은 별도의 조달시스템(nebid.koica.go.kr)을 활용하여 개발협력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조달(원조조달입찰)과 이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의 사업과 관련된 조달(일반행정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2019~2022년 한국국제협력단 자체전자조달시스템 이용현황]

(단위: 건, 억원, %)

연도	조달구분	계약 건	금액	비율	합계
2019	원조조달	174	2,229	85.21	2,616
	일반행정	72	387	14.79	
2020	원조조달	226	2,553	95.37	2,677
	일반행정	48	124	4.63	
2021	원조조달	192	2,684	85.84	3,134
	일반행정	51	449	14.16	
2022	원조조달	205	3,015	90.84	3,319
	일반행정	63	303	9.16	
총 계					11,747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나. 분석의견

한국국제협력단은 다수의 계약을 특별한 사유 없이 긴급공고로 추진하였는데, 참여 가능한 업체 대상 입찰 공정성이 저해되고, 적격업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유도하는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우므로, 향후 이러한 집행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협력단은 원조조달(국외조달)과 일반행정(국내조달)에 대해서 일반공고와 긴급공고를 통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긴급공고의 건수는 2019년에는 7% 미만이었었는데, 2020년부터는 급격하게 증가하여 24.7%에서

한서영 예산분석관(syhan@assembly.go.kr, 6788-4639)

2022년에는 61.86%로 비중이 증가하였다. 긴급공고가 아닌 일반공고는 2019년 56.45%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지만 2020년부터 점차 감소하기 시작하여 2022년에는 10% 미만이다.

[2019~2022년 일반 및 긴급 입찰공고 현황]

(단위: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건수	비율
일반공고	162	56.45	65	24.07	19	6.60	29	9.97
긴급공고	20	6.97	64	24.07	159	55.21	180	61.86
입찰 공고 없는 수의계약 ¹⁾	105	36.59	141	52.22	110	38.19	82	28.18
전체	287	100	270	100	288	100	291	100

주: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 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경쟁률의 변화에 의하면, 긴급공고로 냈을 때의 경쟁률이 일반공고로 냈을 때보다 경쟁률이 더 낮게 나타난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변화에 의하면 일반공고는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으며 긴급공고의 경쟁률은 2019년과 비교했을 때 낮아지는 추세이다.

낙찰률의 변화에 의하면, 긴급공고 건수가 일반공고 건수보다 낙찰률이 더 높으며, 2019년부터 2022년까지의 추이를 봤을 때 2019년을 제외하고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긴급공고 건에 대해서 낙찰률이 증가하며, 일반공고 건에 대해서는 낙찰률이 감소하고 있다.

[2019~2022년 일반 및 긴급 입찰공고별 낙찰률]

(단위: %)

	2019	2020	2021	2022
일반공고	93.52	94.24	91.99	88.00
긴급공고	97.28	92.86	93.00	94.00

주: 1. 각 계약공고 간 편차로 인해 중간값으로 표기하였음

2. 낙찰률이 95% 이상인 계약 건 비율은 일반공고의 경우 70%(2019)→70.2%(2020)→52%(2021)→51%(2022)이며, 긴급공고의 경우 88%(2019)→58%(2020)→73%(2021)→73%(2022)로, 일반공고와 긴급공고 간 낙찰률의 차이가 유의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구성

2019년부터 2022년까지 경쟁률의 감소와 낙찰률의 증가는 코로나-19 특례가 적용에 따라 긴급공고로 진행되는 계약 비율 증가에 기인한다. 일반공고와 비교했을 때 긴급공고는 참가할 가능성이 있는 신규업체가 공고에 대한 정보를 인지하고, 계약서 작성 등의 준비까지의 기간이 단축(40일→10일)된다는 점에서 신규업체가 진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기존업체 대상 수의계약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입찰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다.

또한, 신규업체의 진입이 불리하여 경쟁률이 하락된 상태에서 입찰이 진행되므로 가격의 하락을 유도하는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워져 적격한 업체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선택할 수 없다.

일례로, 2022년 ODA 일반자격시험 위탁운영용역 사업의 경우 시험일시가 7월에 예정되어 있거나, KOICA 연보제작 및 발간사업이나 웹진사업과 같이 언론홍보 관련 사업의 경우 사업기간에 여유가 있고, 코로나-19와 상관없이 국내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해도 무리없는 업종 및 서비스이다. 하지만, 연초에 긴급공고로 인해 조기에 낙찰되었고, 사업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동일한 업체에 낙찰되었다.

이에 대해 한국국제협력단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 동안의 고시에 의해(기재부 고시 제 2022-33호), 긴급 수의계약 사유에 추가된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 문구의 추가와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 의하면 유찰 수의계약 기준이 완화되어 1회 유찰 시 수의계약이 가능함.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특례 적용과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에서 모든 경쟁입찰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1의2호에 따라 국가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긴급입찰로 발주 가능하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하였다.²⁾

그럼에도, 한시적 특례의 취지 자체가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의 ‘감염방 예방 및 확산방지’에 대해 특례를 적용하는 것이며, 두 규정 모두 재량규정으로 반드시 적용해야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의해 엄격하게 코로나-19로 인해 입찰업체 간 경쟁이 불가한 경우로 한정되어야 한다. 코로나-19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기 전인 2019년에는 일반공고를 통한 발주가 50% 이상이었으며, 긴급공고는 6.97%로 극히 일부 건에 대해서만 긴급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내수·민생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하여 신속한 공공구매 집행 및 조달기업 지원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조달기업 지원’이라는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입찰 참가 가능성 있는 기업들의 기회를 박탈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적절한 집행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국제협력단은 긴급발주로 낸 입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경쟁이 불가능한지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긴급발주 사유서의 작성 등 내부적으로 절차를 마련하여 긴급공고에 대해서는 필요시에만 적용되어 원활한 경쟁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6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의계약 기준 완화,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가. 현 황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각 대륙별 비중점 국가그룹(ODA) 지원을 통해서 원조 소외 완화 및 수원국과의 전략적 우호관계 형성을 위하여 수원국에 물자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아시아태평양,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CIS지역 비중점 국가그룹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특히, 2022년도에 중동CIS지역 비중점 국가그룹(ODA)¹⁾ 내에서 소규모 무상원조는 15억에서 30억으로 증액되었다.

[2022회계연도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소규모 무상원조	11,500	11,500	-	△224	11,276	10,462	278	535	78,000
아시아태평양	2,000	2,000	-	-	2000	1,823	2	174	16,500
아프리카	5,000	5,000	-	-	5000	4,759	82	157	27,000
중남미	1,500	1,500	-	-	1500	1,477	-	22	18,500
중동CIS	3,000	3,000	-	△224	2776	2,401	193	181	16,000

자료: 외교부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나. 분석의견

중동CIS 무상원조 사업은 중점협력국으로 전환된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과의 협력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산이 증액되었지만, 증액 대비 해당국가에 대한 집행이 저조하였으므로, 향후 집행계획 수립과 사업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2022년도 정부 외교정책에 따른 중동CIS 지역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와 2022년 기준 신규사업이 부재한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을 지원할 수 있는 재원이 필요함에 따라 중동CIS지역 일반협력국 사업 내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예산이 15억에서 30억으로 증액되었다.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제3기 ODA 중점협력국 재선정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이 중점협력국으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에는 비중점협력국에서 집행되었던 사업이 2022년부터는 중점협력국 사업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두 국가 모두 2021년에 기존사업이 종료되었고, 2023년부터 신규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이 진행되기 전 2022년에는 두 국가에 대한 협력성을 유지하고, 중동CIS국가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을 증액하여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증액목적과는 다르게 실제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에 대한 소규모 무상원조 집행이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CIS 국가에 대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의 집행액은 24억원과 집행률 86.5%이다. 이를 증액의 사유가 되었던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 대상 집행내역을 봤을 때, 중동CIS국가 대상 지원사업 12개 중 타지키스탄을 지원하는 사업은 1건이며, 예산액 대비 집행액 비율은 8.58%에 불과하였다.

[2022년 중동CIS국가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사업 운영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사 업 명	집행액	집행률
1	카자흐스탄공화국 크즐오르다주 교육기관 컴퓨터 지원	211	8.79
2	조지아 기술 발전을 통한 국가 비상대응 능력강화	258	10.75
3	몰도바 “스즈레이” 국립병원 의료 기기 지원	280	11.66
4	세르비아 사회복지시설지원사업	165	6.87
5	몬테네그로 외교부 IT 기자재 지원 사업	238	9.91
6	아제르바이잔 실향민 지원	225	9.37
7	레바논 산림 조성 및 보존용 차량 지원	109	4.54
8	요르단 국립요르단대학교 교육기자재(스마트보드) 지원사업	244	10.16
9	팔레스타인 헤브론 청소년 센터 체육용품 지원사업	173	7.21
10	타지키스탄 코딩교육 진흥을 위한 IT장비 지원	206	8.58
11	이라크 정부에 대한 지뢰탐지기 지원	-	-
12	이라크 쿠르드지방정부(KRG) 의회 역량강화를 위한 의전차량 지원(아르빌)	285	11.87
합 계		2,401	100

출처: 외교부

외교부는 이에 대해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은 예산이 확정된 이후, 연말부터 당해연도 연중까지 수시로 수요를 받고 집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측 불가능한 상황 하에서 집행이 부진하게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에 대한 수요는 애초에 지난 3년간 2건 이하였고, 이를 인지하고도 외교부가 기존 수요 대비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과거 3년간 우크라이나와 타지키스탄에 대해 집행된 사업의 개수와 규모에 의하면, 타지키스탄은 2019년에 2건(1.4만불, 15만불), 2021년에 키르키스스탄 1건(20만불), 그리고 2020년에는 2개 국가에 대해서 지원된 소규모 무상사업이 없었다. 또한, 2월의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생하기 전에도, 부족한 사업수요를 인

지하고 연말부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등을 충분한 기간 내에 집행할 수 있었음에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2019~2022년 전체 중동CIS국가 소규모 무상원조사업 운영현황]

(단위: 건, 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접수	건수	15	10	17	14
	액수	251	158	271	240
집행	건수	6	6	9	12
	액수	625	697	1,577	2,401

출처: 외교부

[2019~2022년 타지키스탄 및 우크라이나 소규모 무상원조 사업운영현황]

구분			2019	2020	2021	2022
타지키스탄	접수	사업 수(건)	2	-	1	1
		사업 규모(만불)	164,000	-	150,000	150,000
	집행	사업 수(건)	2	-	-	1
		사업 규모(백만원)	170	-	-	207
우크라이나	접수	사업 수(건)	1	1	1	1
		사업 규모(만불)	160,000	160,000	100,000	100,000
	집행	사업 수(건)	-	-	-	-
		사업 규모(백만원)	-	-	-	-

자료: 외교부

따라서, 외교부는 예산 편성 당시 편성한 금액 및 목적에 따라서 수요발굴 등 계획을 면밀하게 세우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적극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¹⁾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제주포럼 개최비용 지원, 제주국제연수센터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제주평화연구원과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 사업은 민간경상보조로 수행되고 있다.

국제평화재단 산하에 있는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하는 세계평화의 섬 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되어 세계평화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외교역량 강화와 관련된 연구사업을 발굴하고 추진되는 기관이다. 또한,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사업은 제주평화연구원에서 국가 간 갈등과 협력을 나타내는 평화지수와 관련된 구축사업을 지원한다.

[2022회계연도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1,134	1,134	-	-	1,134	1,134	-	-	1,134
제주평화연구원 연구 사업비 지원 (민간경상보조)	116	116	-	-	116	116	-	-	116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 사업 (민간경상보조)	200	200	-	-	200	196.1	3.9	-	200

자료: 외교부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나. 분석의견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제주평화연구원의 수입구조는 국비, 지방비, 국제평화재단으로부터의 보조 비중이 높은 반면, 자체수입 비중은 낮아 외부지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므로, 자체수입 확보를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제주평화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²⁾로 외교부로부터 민간경상보조금과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출연금, 그리고 국제평화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다.³⁾ 보조금에 따른 수입 외에 자체수입으로는 수탁과제에 따른 수입과 기부금으로 구성 된다.

하지만, 2022년 기준 제주평화연구원의 수입구조에 의하면 외부로부터 받는 보조금 비율이 높은 반면, 수탁과제 등을 통한 자체수입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2022년 기준 제주평화연구원의 보조금은 4억 6,000만원으로 66.96%를 차지하는 반면, 자체수입은 2억 2,700만원으로 33.04%에 그치고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5조(세계평화의 섬의 지정) ① 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와 협력 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와 협력에 관한 사업
5. 평화이념 확산을 위한 기념사업
6. 그 밖의 국제평화와 협력을 위한 사업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36조에 따른 민간복합형 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을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

④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외교부는 제주평화연구원에 민간경상보조로 2개의 사업에 지원하고 있으며,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 비 지원' 사업에 대해 116백만원, '빅데이터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사업'에 대해 200백만원, 총 316백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제주평화연구원 수입 구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2021		2022		2023 ³⁾
	수입	비율	수입	비율	수입	비율	수입
보조금	413	67.05	266	46.26	460	66.96	316
국비(외교부) ¹⁾	135	21.92	122	21.22	316	46.00	316
지방비(제주도) ²⁾	278	45.13	144	25.04	144	20.96	0
자체수입금	203	32.95	309	53.74	227	33.04	0
과제수입금	153	24.84	269	46.78	177	25.76	0
기부금	50	8.12	40	6.96	50	7.28	0
합 계	616		575		687		

주: 1) 민간경상보조금 형태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과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 사업 등을 모두 포함한 총액 기준

2)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3) 2023년 6월 기준으로 미정이며, 과제수입금은 하반기 추진 예정, 기부금은 현재 50백만원 추진 중

자료: 외교부

또한, 지난 3년간 수입구조의 변화에 의하면,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받는 지원비중이 2020년에는 67.05%에서 2022년에는 66.96%로 60%대 후반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수탁과제에 따른 수입금은 2020년 24.84%에서 2022년에는 25.76%로 증가율이 0.92%p으로만 그쳐서 개선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제주평화연구원의 운영에 있어서 낮은 재정자립성으로 인해 보조금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그 현상이 개선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제주평화연구원 자체수입(수탁과제 및 기부금)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탁 과제	과제(수)	4	3	3	2	6	3
	외교부 수탁과제(수)	4	3	3	2	4	3
	타기관 수탁과제(수)	0	0	0	0	2	0
	과제수입 (액수)	197	154	119	153	269	177
	기부금 모금(액수)	110	60	73	50	40	50

자료: 외교부, 제주평화연구원

이와 같이 재정적으로 의존도가 높아지는 현상은 제주평화연구원의 재정자립성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 부족에 기인한다. 지난 5년간 제주평화연구원의 수탁과제 수주현황에 의하면 매년 6건 이하를 기록하고 있으며, 수주한 과제의 위탁기관 또한 거의 외교부에 의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재정자립성이 낮을 경우 향후 외부지원에 변화가 생기는 경우 기존 연구 운영에 대한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 특히, 2023년부터는 연구원에 지원되는 제주특별자치시(지방비) 출연금이 중단되는데, 한정된 재원 안에서 기존의 연구 사업을 운영해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⁴⁾

그럼에도, 제주평화연구원의 재정자립성 확보는 이미 2020년 결산 시정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는데, 이에 수탁과제 수의 증가를 통해 2021년에 일시적으로 개선되었다가 2022년 실적은 다시 부진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와 지자체경상보조에 대한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제주평화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 수입 등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높임으로서 국고보조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을 개선사항으로 명시된 바 있다.

따라서, 제주평화연구원은 자체수입 증가와 같이 안정적인 수입구조를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재 수입구조를 적극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수탁과제 또한 기존의 방식에 머무르지 않고 외교부 외의 다른 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연구과제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2021년도부터 보조사업으로 신규 지원되고 있는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 사업’은 개발된 평화지수를 활용한 연구 등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연구성과나 외교정책 수립에 기여한 사례가 부족하여, 평화지수가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제주평화연구원은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 사업’을 통해서 외교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평화지수를 개발 및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⁵⁾. 본 사업에서는 기존에 개발된 평화지수에 대한 개선작업과 학술회의

4) 이는 제주평화연구원이 민간경상보조와 지자체경상보조에 대한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에서도 제주평화연구원이 수행하는 연구용역 수입 등을 활용하여, 연구사업의 자부담 비율을 높임으로서 국고보조 부담을 완화하도록 개선사항으로 명시한 바 있다. (국제평화재단 및 제주포럼 지원 사업에 대한 2022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

등 관련 연구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지수를 활용한 연구 실적이나 실제 외부 활용사례, 외교정책에 기여하는 등 실용적인 측면에서의 성과가 부족하여 사업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 그 동안의 평화지수의 활용은 자문회의나 학술회의와 같이 평화지수 활용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⁶⁾.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가 개발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상 수행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활용성과가 개선되지 않는 것은 평화지수 관련 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대한 효과성 및 타당성이 문제가 된다. 또한, 신문기사 등을 통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상호국가 간 평화의 정도를 측정하고 있으나 신뢰도를 담보하기 어렵고 현재 활용현황 또한 내부공개로만 그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이 지속될 경우 향후 외부적으로 평화지수 활용 논의 시,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성이 낮아 보인다.

따라서, 평화지수에 대한 사업이 연구 및 외교정책에 기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성과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평화지수의 효과성과 지속필요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수익사업을 통해 연구원 외에도 외부에서 평화지수가 활용되어 운영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 실용적 활용 확보와 동시에 앞서 논의한 제주평화연구원의 자체수입확보를 위한 노력할 필요가 있다.

5) 빅데이터 활용 평화지수 확대/발전사업은 기존에 제주평화연구원에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외교부의 정책용역사업으로 평화지수를 도출하는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개발하였고, 2022년부터 개발된 평화지수가 우리나라 외교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확대 및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신규 보조금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

6) 2020년부터 2021년은 용역사업의 일환으로 수행, 2022년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평화지수를 활용한 성과는 지난 3년간 국내학술회의 8건, 국제학술회의 1건, 국내자문회의 12건, 연구보고서 1건이 진행되었다.

한국학기반확대 사업은 한국학 강좌운영, 한국전문가 육성, 한국이해 저변 확대의 총4개의 내역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한국학강좌운영 사업¹⁾은 한국학 교수직 설치, 객원교수 파견 등의 내내역사업을 통해 해외대학의 한국학 정규 강좌 운영을 지원함으로써, 해외대학의 한국학 장기발전과 지한 인사를 지속적으로 배출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을 위해 운영되고 있다.

[2022회계연도 한국학기반확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본예산	추경							
한국학기반확대	15,736	16,569	-	-	16,569	16,539	-	30	18,644
한국학강좌운영	10,997	11,461	-	-	11,461	11,456	-	5	13,745
한국전문가육성	3,794	3,846	-	-	3,846	3,834	-	12	3,908
한국이해 저변 확대	945	1,262	-	-	1,262	1,249	-	13	991

자료: 외교부

5-1. 한국학강좌운영 객원교수 사업 운영 비목 검토 필요

가. 현 황

한국학강좌운영 사업은 교수직 설치, 현지교원고용지원, 객원교수 파견, 한국학 온라인 강의 등의 내내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기준 114억 6,100만원 중 114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다.

한서영 예산분석관(sy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국제교류기금 2632-401의 내역사업

[2022회계연도 한국학기반확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본예산	추경							
한국학기반확대	15,736	16,569	-	-	16,569	16,539	-	30	18,644
한국학강좌운영	10,997	11,461	-	-	11,461	11,456	-	5	13,745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한국학강좌운영 내 객원교수 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객원교수 사업이 예산 편성 이후 코로나-19를 사유로 위탁용역방식에서 직접 집행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이러한 사업운영방식의 변경은 2021회계연도에 동일하게 발생한 바 있으므로, 향후 예산 편성 당시 면밀하게 운영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 기반확대 사업 내 세부사업인 객원교수 사업은 한국어 및 한국학 교원이 부족한 해외대학에 객원교수를 파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국제교류재단은 국내에서 객원교수를 선발하여 체제비, 여행자보험, 왕복항공료를 지원하고, 해외대학에서는 파견된 객원교수에게 현지숙소 제공과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객원교수를 선발하고 파견하는 과정은 기존에 직접집행방식으로 운영되었는데, 해외대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용역업체를 통해서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2021년도부터는 일반용역비(210-14) 비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2022회계연도 기금운영계획 변경현황에 의하면, 7월 15일에 일반용역비(210-14)에서 국외업무여비(220-02)로 자체변경 하였고, 이에 대한 변경사유는 객원교수 파견사업 추진방식 변경에 따른 예산조정이다. 이러한 조정은 2021년 8월 18일에도 동일하게 사업추진방식이 변경되었다.

[한국학강좌운영 객원교수 사업 자체변경 내역]

(단위: 백만원)

일자	구분	세부사업명	변경 증액		변경 감액		변경 사유
			세목	금액	세목	금액	
2021. 8.18.	자체 변경	한국학 기반확대 (2632-401)	국외업무 여비 (220-02)	777	일반용역비 (210-14)	957	객원교수 체제비 직접지급에 따른 비목변경
2022. 7.15.				800		900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외부 환경 변화에 따라 용역 규모를 확정할 수 없어서, 사업 추진 방식을 변경함. (위탁용역 → 직접집행)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은 2021년과 2022년 사업추진방식 변경에 대한 사유로서, 코로나-19로 인해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연중에 직접집행방식으로 변경하였다는 입장이다.

연속적 집행방식 변경원인은 2020회계연도 예산 편성 당시인 2019년에 코로나-19가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었고, 차년도에도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가능했음에도 실현가능성이 낮은 집행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산 편성 당시 사업운영계획에 있어서 운영방식이나 업체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사전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객원교수 파견사업 운영에 대한 예산은 국외업무여비(220-02)로 편성 및 집행되었는데, 실제로 객원교수에게 지원되는 항목은 2년 이상 단기성 해외출장이 아닌 장기체류에 따른 매달 수당의 특성으로 예산이 집행되어 관련 지침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사업특성에 맞는 비목으로의 집행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학강좌운영 세부사업 내 객원교수 파견을 위한 지원은 국외업무여비(220-02)로 집행되었으며, 지원항목은 체제비, 교재연구비, 특수지수당, 해외이전경비, 왕복항공료이다.

[2022년 한국학 객원교수 1인당 지원내역]

지원항목		산출내역
매달 지원	체재비	\$2,617 ~ \$3,457 (‘차’ 지역 기준) / 월 ¹⁾
	교재연구비	\$200 / 월
	특수지수당	\$350 ~ \$550 / 월 ²⁾
	총계	\$3,167 ~ \$4,207 / 월 × 12개월 = 약 42백만원 ~ 56백만원 ³⁾
이전 시 지원	해외이전경비	\$2,000(1회)
	왕복항공료	실비 지원 ⁴⁾

주: 1)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2) 「재외공무원 수당 지급규칙」

3) 1,130원/달러 기준환율 적용

4) 「한국국제교류재단 내 해외한국학지원사업 시행지침」 제44조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국외업무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의한 해외출장여비 중 업무수행관련 여비인 경우 활용할 수 있으며, 특정업무(조사·확인·점검·물품구매·검사, 협력체결 등), 외교활동(정상회담, 대통령 특사, 국가 간 협약체결 등), 국제회의 및 국제행사 등에서만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각 지원항목에 대한 성격과 지급근거를 봤을 때, 국외업무여비(220-02)의 성격으로 집행되어야 할 항목이 수당형태도 집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객원교수 사업은 파견 시, 해외대학에서 강의를 수행하며 2년(연장 시 최대 4년) 동안 현지 국가에서 장기체류 하는데, 단기적 특수 업무 집행에 지급되는 국외업무여비 비목으로, 매달 수당 형태로 체재비를 지급하는 집행방식은 지침이 준수되지 않는 사항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체류하여 강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재단과 객원교수 간 근로 및 용역계약 이행을 통해 상용임금과 같은 인건비 비목을 활용하는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5-2. 한국학강좌운영 객원교수의 엄격한 선발기준 마련 필요

가. 현 황

한국학강좌운영 사업은 교수직 설치, 현지교원고용지원, 객원교수 파견, 한국학 온라인 강의 등의 내내역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기준 114억 6,100만원 중 114억 5,6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한국학기반확대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본예산	추경							
한국학기반확대	15,736	16,569	-	-	16,569	16,539	-	30	18,644
한국학강좌운영	10,997	11,461	-	-	11,461	11,456	-	5	13,745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국제교류재단은 선발된 객원교수 중 한국학 및 한국어 과목과 일치하지 않는 전공자 선발과 같이 선발과정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부재하므로, 객원교수의 채용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학강좌운영 사업에서 파견된 객원교수는 한국학 및 한국어 강의를 하고 있으며, 2022년도 기준 신규로 파견된 교수 17명 중 한국학을 가르치는 교수는 4명이며,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수는 13명이다. 객원교수의 전공현황에 의하면, 한국학 강의를 하는 교수는 동아시아학, 정치학, 미국사, 헝가리문학 전공이며, 한국어를 강의하는 교수는 한국어교육학을 비롯하여 국문학, 북한학, 페르시아어문학 등이다.

[2022년 신규파견 객원교수 전공 및 학위 분류]

(단위: 명)

전 공			학 위	
한국학 ¹⁾	한국어 ²⁾	기타 ³⁾	석사	박사
2	8	9	4	13

주: 1) 동아시아학, 정치학

2) 한국어교육, 국어학, 국문학, 언어학, 문예창작학

3) 북한학, 헝가리문학, 미국사, 페르시아문학 등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제공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한국어교육 전공자 6명과 나머지 11명은 연관된 전공인 북한학, 헝가리문학, 페르시아문학 등을 전공한 교수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 교수 중 35%의 교수만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와 전공이 일치하며, 나머지 11명의 전공은 미국사, 페르시아문학, 헝가리 문학 등 여러 인문학 및 사회과학 전공자이다. 일례로, 북한학 전공인 교수가 한국어 강의를 하거나, 미국사, 페르시아 문학을 전공한 교수가 한국학을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객원교수의 전공과 강의 현황에 따르면, 한국어 및 한국학 강의와 직접적인 연관이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애초에 세부전공과 무관하게 객원교수의 선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2).

특히, 2021년도에는 파견된 교수 90명 중 4명은 강의실적이 연간 2개 강좌 이하로 나타나고, 대학 측 대학평가에서 5점 만점에 3점 미만을 받는 등 성과가 저조한 교수가 있어 국회 시정요구를 받은 바 있다. 객원교수의 선발과정에 있어서 세부전공과 경력의 부재가 객원교수의 저조한 실적(낮은 강의평가, 강의 불이행 등)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교류재단은 파견된 해외교수에 대한 실적 모니터링 뿐 아니라 자격 있는 객원교수가 한국학 및 한국어 강의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발기준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차원에서 조치사항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2) 경력 상 한국어나 한국학 강의경험이 있는 경력자가 일부 있으나, 같은 대학에서 연장된 것으로 보아 이전 관련 경력이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

가. 현 황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사업¹⁾은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의 내역사업이며,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수행 중인 국제교류 온라인 사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전산자원 도입과 운영, 그리고 인터넷 회선사용을 위한 사업이며 현황은 다음과 같다.

[2022회계연도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 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본예산	추경							
국제교류 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2,553	2,553	-	-	2,553	2,553	-	-	2,766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434	434	-	-	434	434	-	-	434

자료: 외교부

나. 분석의견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사업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 사업에서 외부업무수행을 위해 태블릿PC에 대한 공공요금이 매달 집행되고 있는데, 정보화사업으로의 집행은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국제교류기금 기타운영비 사업(7076-201)을 통해 집행될 필요가 있다.

국제교류재단은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의 내역사업인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에서 2019년에 구입한 모바일단말기(태블릿PC) 25대에 대한 통신요금을 매달 40천원씩 ‘공공요금및제세(210-02)’를 통해 납부하고 있다. 모바일단말기

한서영 예산분석관(sy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국제교류기금 2636-401 의 내역사업

사용 대상은 임원, 간부직원, 예산담당자이며, 사용목적은 잦은 외부출장으로 인해 결재문서 처리 등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통신요금은 한국국제교류재단의 기타운영비(7076-201) 사업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편성되어 있는데, 태블릿PC 사용에 대한 요금이 기타운영비가 아닌 정보화사업으로 집행되었다. 즉, 정보화 사업에서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통신요금을 지원하는 것은 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은 집행이라 볼 수 있다.

또한, 태블릿PC에 대한 통신요금 지원대상 중 3명(이사장, 이사 2명)에 대해서 기타운영비를 통해 통신요금을 이미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정보화 사업에서의 통신비 관련 지급은 유사중복적 지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책별 태블릿PC 사용 현황]

(단위: 명)

직책	직급	인원 수
이사	임원	3
실장	1~2급	5
부장	3~4급	13
담당자	5~6급	3

자료: 한국국제교류재단

한국국제교류재단에 의하면 기타운영비 사업(7076-201)에서 지원되는 통신요금은 연락을 위한 휴대용 통신기기이며, 태블릿PC에 대한 통신요금은 빈번한 출장으로 인해 문서기안을 외부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활용하고 있어서 사용하는 용도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통신기기를 활용하여 사업을 운영한다는 취지는 동일하다는 점과 전산 자원을 관리하고 시스템을 운영 목적을 가진 정보화사업이 직원의 외부 업무처리와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기타운영비를 통한 통신요금 집행이 적합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국제교류재단은 외부업무 수행에 필요한 통신요금은 사업의 목적에 맞게 기타운영비 사업에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업무 외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관리대장을 마련하는 등 자산 활용에 대한 관리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공요금 및 제세를 통한 통신비 납부 형태로 태블릿PC 자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자산취득 시 통신요금과 구분하여 자산취득비를 통해 집행할 필요가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는 외부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2019년부터 태블릿PC 25대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통신비를 국제교류정보시스템 운영(정보화) 사업의 공공요금 및 제세를 통해 집행하였다. 납부한 요금에는 통신비 뿐 아니라, 할부원금, 즉 자산취득에 대한 비용 또한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자산취득비를 통해 집행되지 않을 경우 자산등록에 필요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았기 때문에, 관리 대상 자산으로 등록되지 않고 부외자산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경우, 자신이 관리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자산사용에 있어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며 향후 감가상각을 고려한 처분에 있어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별도의 관리대장 없이 직원 개인이 휴대하며 사용하고 있어 자산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제교류재단은 자산취득에 있어서 관련된 집행지침과 절차를 준수하고, 자산 사용에 있어서 관리대장을 마련하는 등 별도 지침을 통해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6억 7,300만원이며, 29억 1,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4.1%인 27억 3,900만원을 수납하고, 1억 7,1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673	1,673	1,673	2,910	2,739	171	-	94.1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통일부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318억 8,900만원이며, 이 중 89.4%인 2,967억 5,700만원을 지출하고, 41억 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10억 2,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30,881	329,911	331,889	296,757	4,107	31,025	89.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통일부

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수입계획현액은 1조 5,571억 2,800만원으로, 3,954억 3,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3,913억 3,300만원을 수납(수납률 99.0%)하고 280억 6,500만원은 미수납되었다.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남북협력기금	1,557,128	1,557,128	1,557,128	395,438	391,333	28,065	-	99.0

자료: 통일부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현액은 1조 5,703억 5,900만원으로, 이 중 3,913억 3,300만원을 지출(집행률 24.9%)하였고 다음연도로 이월액은 없으며, 1조 2,513억 4,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남북협력기금	1,557,128	1,557,128	1,570,359	391,333	-	1,251,348	24.9

자료: 통일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242억 9,300만원 (66.5%)이 감소한 122억 3,0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39억 7,100만원 (24.5%)이 감소하였다.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 (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2,172	1,673	1,673	2,739	1,066	567
기금	14,029	34,850	34,850	9,491	△25,359	△4,538
합계	16,201	36,523	36,523	12,230	△24,293	△3,971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통일부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1조 2,243억 5,800만원(81.6%)이 감소한 2,769억 5,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91억 9,300만원(21.6%)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 (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194,248	230,881	229,911	196,757	△33,154	2,509
기금	33,517	1,271,405	1,271,405	80,201	△1,191,204	46,684
합계	227,765	1,502,286	1,501,316	276,958	△1,224,358	49,193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통일부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통일부의 자산은 3조 5,910억 9,400만원, 부채는 2조 3,056억 1,200만원으로 순자산은 1조 2,854억 8,2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2,335억 9,600만원, 투자자산 2조 7,991억 7,600만원, 일반 유형자산 4,497억 2,8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722억 8,200만원(2.1%)

증가하였다. 이는 환율 상승에 따른 외화 대여금 증가 등으로 인해 남북협력기금 투자자산이 1,006억원 증가한데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4,359억 7,900만원, 장기차입부채 1조 8,695억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억 3,700만원(0.0%) 감소하였다. 이는 유동부채 3,247억 8,400만원 증가, 장기차입부채 3,254억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통일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3,591,094	3,518,812	72,282	2.1
Ⅰ. 유동자산	233,596	262,707	△29,111	△11.1
Ⅱ. 투자자산	2,799,176	2,698,551	100,625	3.7
Ⅲ. 일반유형자산	449,728	459,963	△10,235	△2.2
Ⅳ. 무형자산	11,188	6,666	4,522	67.8
Ⅴ. 기타비유동자산	97,407	90,926	6,481	7.1
부 채	2,305,612	2,305,475	137	-
Ⅰ. 유동부채	435,979	111,195	324,784	292.1
Ⅱ. 장기차입부채	1,869,500	2,194,000	△324,500	△14.8
Ⅲ. 기타비유동부채	134	280	△146	△52.1
순 자 산	1,285,482	1,213,337	72,145	5.9
Ⅰ. 기본순자산	246,751	246,751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942,901	863,389	79,512	9.2
Ⅲ. 순자산 조정	95,830	103,197	△7,367	△7.1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2년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에서 재정수입(수익)을 뺀 재정운영순원가가 2,231억 2,7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017억 300만원, 관리운영비 717억 5,200만원, 비배분비용 433억 5,8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894억 9,800만원, 비배분수익 41억 8,800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전기 대비 401억 9,700만원(22%) 증가한 2,231억 2,7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순원가가 전기 대비 367억원(48.6%)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8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프로그램(735억 6,900만원), 개성공단 등 남북경제협력 프로그램(668억 7,400만원)과 통일교육 프로그램(247억 8,8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456억 7,000만원과 경비 260억 8,1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이자비용 443억 5,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통일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A)	2021 회계연도 (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12,205	75,494	36,711	48.6
가. 프로그램 총원가	201,703	185,675	16,028	8.6
나. 프로그램 수익	89,498	110,181	△20,683	△18.8
II. 관리운영비	71,752	70,405	1,347	1.9
III. 비배분비용	43,358	45,993	△2,635	△5.7
IV. 비배분수익	4,188	8,962	△4,776	△53.3
V.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223,127	182,930	40,197	22.0
VI. 비교환수익 등	1,881	100	1,781	1,781.2
VII. 재정운영결과(V-VI)	221,246	182,830	38,416	21.0

자료: 통일부

통일부의 2022년도 기초순자산은 1조 2,133억 3,7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1조 2,854억 8,200만원으로 기초 대비 721억 4,500만원(5.9%) 증가하였는데, 이는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2,212억 4,6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3,007억 5,8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등 재원의 조달 3,052억 2,9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44억 7,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49억 8,600만원, 투자증권평가손익 △23억 8,1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통일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1,213,337	1,075,43	141,794	13.2
Ⅱ. 재정운영결과	221,246	182,830	38,416	21.0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00,758	299,342	1,416	0.5
Ⅳ. 조정항목	△7,367	25,283	△32,650	△129.1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1,285,482	1,213,337	72,145	5.9

자료: 통일부

마. 재정 구조

2022회계연도 통일부의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은 다음과 같다.

회계·기금 간 거래를 살펴보면, 일반회계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1,000억원이 전출되었다.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 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 통일부

통일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경협기반(무상) 등이 있다. 경협기반(무상) 사업은 교류협력지원협회 사무공간 관련 내역에서 5,000만원이 감액(2,475.4억원 → 2,474.9억원)되었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② 국제통일기반조성 사업, ③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④ 통일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⑤ DMZ 평화적 이용 사업 등이 있다.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내 가짜뉴스 모니터링을 위해 2억원이 신규 증액되었고, 국제통일기반조성 내 중립국 대북협력 포럼 사업 1.2억, 탈북민 안전지원을 위한 예산 0.4억원, 통일교육을 위한 메타버스 통일교육 콘텐츠 개발 2억원, 고성 평화의 길 도로보수 사업 20억 등이 증액되었다.

통일부는 ① 비핵화와 남북 신뢰구축의 선순환, ② 상호 존중에 기반한 남북관계 정상화, ③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과 분단 고통 해소, ④ 개방과 소통을 통한 민족동질성 회복, ⑤ 국민·국제사회와 함께하는 통일준비를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통일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강원·충청·경기 통일+센터 신축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전년도 이월액, 사업 공정률 및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통일부는 보조금 집행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기본조사설계 단계부터 지연이 발생하여 단계적 공정이 순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변경된 사업 계획에 따라 2023년 내에 공사착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수립하는 등 단계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통일부는 2022년내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약 이행 경과에 맞추어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금 지급 최대 금액인 70%를 연말에 집행하였고, 기본조사설계 완료 이전 단계에서 실시설계비를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향후 주의가 필요하다.

넷째, 통일부는 특수경비용역 계약 기초가격 산정을 위한 시중노임 단가를 확인하지 않아 용역 계약 업무를 제때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계약 업무 추진시 사전 절차 및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준비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거나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경제교류협력대출, 개성공단 운영대출 등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소요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연초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 연내 집행 가능한 보조금 교부 및 면밀한 집행 관리 필요

가. 현 황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은 지역사회 통일관련 서비스를 종합지원하고 민간과 정부 간 소통·협력의 거점을 마련하여 지역사회 통일공감대 확산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내통일기반조성¹⁾의 내역사업이다. 통일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 현액 51억 8,000만원 중 38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5,6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내통일기반조성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국내통일기반 조성	10,019	9,989	-	±105	9,989	8,365	1,312	312	8,735
통일+센터 설치·운영	5,180	5,180	-	±62	5,180	3,811	1,312	56	3,877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2018년 9월 최초의 통일+센터가 인천광역시에 개관된 이후 광역 지자체 수요조사를 거쳐 2021년 호남권(목포), 강원권(춘천)과 2022년 충청권(홍성), 경기권(의정부)이 후보지로 선정되어 각각 센터 설치를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고, 2025년까지 총 7개 권역에 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031-301

나. 분석의견

강원·충청·경기 통일+센터 신축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이 낮음에도 전년도 이월액, 사업 공정률 및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여 이월액이 발생하였으므로 통일부는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2022년에 충청(홍성)·경기관(의정부) 통일+센터 설치를 추진하면서 전라남도 등 각 4개 지자체에 각각 4억 7,500만원, 8억 1,300만원, 4억원, 15억원의 보조금을 교부(국고보조율 50%)하였다.

그런데 보조금 실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남도에 교부된 보조금은 전액 집행된 반면, 강원도의 경우 이월된 보조금 16억 2,500만원 중 2억 2,800만원(14.0%)이 집행되고 2022년 교부금은 전액 이월되었으며, 충청남도는 보조금 4억원 전액 이월, 경기도는 보조금 15억원 중 14억 5,700만원(97.8%)이 이월되었다.

[2022회계연도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 수행 주체	통일부			사업수행주체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불용액	다음연도 이월액	실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전남	475	475	475	475	-	475	475	-	-	100
강원	1,625	1,625	813	813	1,625	2,438	228	-	2,210	9.3
충남	400	400	400	400	-	400	-	-	400	-
경기	2,000	2,000	1,500	1,500	-	1,500	43	-	1,457	2.2

자료: 통일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자치단체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은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하고, 연내 집행 가능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여부 등을 명확히 확인한 후 집행 가능한 보조금만을 교부하여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다.²⁾

그런데 강원도의 경우 2021년도 교부액 16억 2,500만원(설계비 및 공사비) 전액이 이월되었고 2022년 6월에도 설계 절차가 진행 단계로 이월된 설계비 3억원

2)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117.

외에 공사비는 연내 집행가능성이 낮음에도 2022년도 공사비 8억 1,300만원을 8월에 교부하여 2021년도에 이어 2022년도에 이월액을 발생시켰다.

또한, 강원도는 2021년 이월된 보조금 16억 2,500만원 중 2억 2,800만원을 집행하고 13억 9,700만원을 재이월하였다.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3)에 따라 국고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이월과 재이월이 불허되고, 예외적으로 이월이 허용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재이월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외에는 허용의 여지가 없는 바, 통일부는 보조금 집행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강원권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 계획 변경 일정]

구분	당초(2021.9월 기준)	현재 진행 상황(2023.4월 기준)
강원	○ 2021.3.~8. 건축기획 용역 ○ 2021.9.~11.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 2021.11.~2022.6. 설계 ○ 2022.6.~2023.9. 공사	○ 2021.4.~8. 건축기획 용역 ○ 2021.9.~2022.3.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 2022.4.~10. 설계 ○ 2023.1.~2024.2. 공사

자료: 통일부

[2022년도 강원권 통일+센터 신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월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1월~5월	8월	9월~12월	합계
강원도	1,625	-	813	-	813

주: 교부액은 공사비임

자료: 통일부

3)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25조(보조사업비의 이월)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제2호의 경우 재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2.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재해복구 경비, 입찰공고 후 장기간이 소요되거나 협상에 의한 계약 등으로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비

충청 센터의 경우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충청권 내 타 광역지자체의 재정 부담 필요성이 제기되어 재심사 절차로 사업 착수가 늦어졌고, 경기 센터는 국토부 중앙 건설기술심의, 경기도 건설기술심의 등의 행정절차로 사업 진행이 지연되었으나, 통일부는 이에 대한 고려를 하지 않고 보조금을 교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충청·경기권 통일+센터 설치·운영 사업 계획 변경 일정]

구분	당초('21.9월 기준)	현재 진행 상황('23.4월 기준)
충청	○ 2022.1.~4. 건축기획 용역 ○ 2022.3.~5.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 2022.5.~12. 설계 ○ 2023.1.~6. 공사	○ 2022.2.~5. 건축기획 용역 ○ 2022.3.~10.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 2023.3.~9. 설계 ○ 2023.9.~2024.2. 공사
경기	○ 2022.1.~4. 건축기획 용역 ○ 2022.2.~4.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 2022.5.~10. 설계 ○ 2022.11.~2023.6. 공사	○ 2022.1.~5. 건축기획 용역 ○ 2022.2.~2023.2. 각종 심사 등 행정절차 ○ 2023.5.~10. 설계 ○ 2023.11.~2024.11. 공사

자료: 통일부

[2022년도 충청·경기권 통일+센터 신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월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12월	합계
충청	400	-	380	-	20	-	-	400
경기	2,000	-	750	-	-	750	-	1,500

자료: 통일부

권역별 센터 사업은 당초 사업 계획 수립 이후 진행 상황을 감안하여 건립 일정을 변경하였는데 당초 사업 계획보다 사업 진행이 지연된 만큼 향후 추가적인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신규 통일+센터 연차별 예상 건립 공정]

(단위: 백만원)

센터	총사업비 (국비)	건립기간	기본설계	실시설계	예산편성(안)		
					2021	2022안	2023이후
호남 (목포)	6,300 (3,150)	'21.1~' 23.7	'21.2 ~11	'21.12~ '23.7	2,675 (설계비·공사비)	475 (공사비)	-
강원 (춘천)	6,500 (3,250)	'21.1~' 24.2	'22.4~10		'23.1~'24.2	1,625 (설계비·공사비)	1,625 (공사비)
충청 (홍성)	10,000 (4,000)	'22.1~' 25.2	'23.3~'23.10		'23.9~'25.2	-	400 (설계비)
경기 (의정부)	8,000 (4,000)	'22.1~' 24.11	'23.4~'23.10		'23.11~'24.11	-	2,000 (설계비·공사비)

자료: 통일부

따라서 향후 통일부는 통일+센터 사업의 사업추진 단계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고, 연내 집행가능한 수준의 보조금을 교부함으로써 교부된 보조금의 불필요한 이월을 방지하는 한편, 강원 통일+센터의 신축 사업 추진과정에서 추가적인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연내 착공가능성 제고를 위한 체계적 사업 관리 및 철저한 집행관리 필요

가. 현 황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¹⁾은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공간을 임차하고 있는 북한자료센터의 장서 확충 및 열람공간 확대를 위해 북한전문도서관 기능의 자료센터를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32억 4,000만원 중 27억 7,4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000만원 이월, 1억 3,600만원은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통일정보자료 센터	3,240	3,240	-	-	3,240	2,774	330	136	10,647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통일부

통일정보자료센터는 2022년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당초 총사업비 445억원, 연면적 9,900㎡ 규모(사업기간 2022~2025년)로 계획되었으며, 2022년 경기 고양시로 부지를 확정하고 2022년 9월 기본설계에 착수하였다.

나. 분석의견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기본조사설계 단계부터 지연이 발생하여 단계적 공정이 순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변경된 사업 계획에 따라 2023년 내에 공사착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수립하는 등 단계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은 당초 2022년 중 설계를 완료하고 2023년 초 착공한다는 계획이었으나, 2022년 9월 설계사업자가 선정되어 2023년 3월에 기본 설계가 완료되어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 예산액 12억 9,200만원 중 8억 2,6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3,000만원 이월하고, 1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통일정보자료센터 사업 예산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사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통일정보자료 센터 건립	3,240	3,240	-	3,240	2,774	330	136

자료: 통일부

그런데 통일부는 당초 사업 계획 수립 시 2022년 4월~12월(9개월)까지 기본 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실제로 기본조사설계 5개월(2022.9 ~ 2023.3), 조달청 적정성 검토²⁾ 2개월, 실시설계 4개월 소요(2023.5~2023.9)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한 것을 볼 때, 이는 사전에 사업 일정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통일부는 조달청 적정성 검토 완료 직후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하고 2023년 9월 까지 실시설계 및 검토·협의를 마무리한 후 조속히 시공사를 선정하여 2023년 11월에 착공한다는 계획으로 설명하고 있다.

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에 대하여 설계 내용을 보완개선하고 현장 적용 타당성, 예산 및 시설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것으로 약 3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일정]

당초 계획(2021년 9월 기준)	변경 계획(2023년 4월말 기준)
- (2022년 1월~3월) 설계입찰 공고 및 심사 - (2022년 4월)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 - (2022년 4월~12월) 설계 진행	- (2022년 5월~8월) 설계입찰 공고 및 심사 - (2022년 8월) 설계업체 선정 및 계약 - (2022년 9월~2023년 9월) 설계 진행 * 기본설계(2022년 9월~2023년 3월), 일시중지(2023년 4월~2023년 5월) 실시설계 및 협의(2023년 5월~2023년 9월) - (2023년 11월~2025년 10월) 공사
- (2023년~2025년) 공사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공공건축사업계획 사전검토(2~3개월 소요) 단계부터 일정이 지연되어 이후 공정 단계인 기본설계 절차가 순연되었고, 설계 완료 후 시공사 선정을 위한 조달계약 일정에 통상 2~3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점도 최소 수준으로 반영하여 추가 지연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는 건축공사의 경우 기본조사설계비 및 실시설계비는 사업의 긴급성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동시 계상을 지양하도록 하면서, 실시설계비는 기본조사설계 및 타당성조사 후 해당 사업 추진을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예산에 반영하도록 정하고 있다³⁾.

이는 사업진행 단계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예산을 반영함으로써 사업지연 등에 따른 예산 미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건축공사 사업을 추진하면서 설계착수 전 사전 절차에 대한 소요기간을 최소한으로 예측하고 2022년도 통일정보자료센터 예산에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동시에 계상하여 예산 이월을 발생시켰다.

그리고 2022년도 예산안이 수립된 2021년 9월 이후 건설공사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⁴⁾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협의가 지연되지 않고 변경된 일정에 따라 이루어질수 있도록 사업관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3)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42~245

4) 건설공사비지수(2015년=100): ('21. 7월) 133.41, ('21. 8월) 135.08, ('21. 9월) 136.83, ('22. 7월) 147.66, ('22. 12월) 148.6, ('23. 3월) 151.11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일정 관련 검토 사항]

구분	기본 설계	총사업비 협약	실시설계	총사업비 협약	시공사 선정	착공
통일부안	'22.9~	최소	'23.5.~'23.9. (4개월)	최소	최소	'23년 11월
추가 검토사항	'233.	특정 곤란	7개월 ¹⁾	특정 곤란	약 2~3개월 또는 그 이상	'24년 초 이후

주: 1)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3조(설계기간) ② 발주청은 설계용역을 발주할 경우 공사의 규모와 특성과 발주청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별표 1의 공종별 설계 기간을 참고할 수 있다.

[별표 1] 공종별 설계단계별(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발체)

(단위: 월)

공종	기본설계			실시설계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100~500억	500~1,000억	1,000억이상
건축	4.5	7	9.5	7	7.5	8

- 주 1. 기본설계, 실시설계의 기간은 관계기간 협약,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 평가 등에 소요된 기간을 제외한 기간임
 2. 단순, 보통, 복잡 등에 따라 공종별 설계기간에 $\pm 10\%$ 의 범위내에서 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음
 3. 실시설계시 기본설계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는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실시설계기간의 1.3~1.5배를 적용할 수 있음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따라서 통일부는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 사업의 변경된 계획에 따라 2023년 내에 공사착수를 위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고 사업 계획을 좀 더 면밀히 수립하는 등 단계별 사업관리를 철저히 하여 추가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부는 2022년 내에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수 없음을 인지하였음에도 계약 이행 경과에 맞추어 선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금 지급 최대 금액인 70%를 연말에 집행하였고, 기본조사설계 완료 이전 단계에서 실시설계비를 집행한 것은 부적절한 예산 집행으로 향후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2022년 5월 동 사업의 설계용역 공고 시 기본조사설계 및 실시설계를 모두 포함한 과업내용으로 1개의 업체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2022년 9월부터 기본설계 단계를 진행하였다.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용역명	계약금액	계약기간	계약업체
통일정보자료센터 건립사업 설계용역	1,099	2022.9.15.~2023.7.11.(300일)	건축사사무소 ○○파스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통일부는 설계용역 계약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으로 기본조사설계비(5억 1,700만원)와 실시설계비(7억 7,500만원)에서 각각 2억 5,403만원과 5억 1,500만원을 집행하여 2022년 11월 15일에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7억 6,940만원을 선금으로 집행하였다.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제11항⁵⁾에 따르면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 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을 체결한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회계연도 내 집행가능성을 감안하여 계약 업체의 공사·용역 등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통일부는 과업 수행기간이 2개월 미만(45일)임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선금을 지급하여야 했음에도, 2022년 11월 15일 계약금의 70%를 선금으로 과다 집행한 것은 단순히 불용률을 낮추고자 한 취지로 보여진다.

5)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적용범위) ⑪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기간등에 비추어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해당 예산을 전액 집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해당 예산의 사고이월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연도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을 한도로 선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지급하여야 할 선금중 미지급된 금액은 예산이 이월된 연도에 지급하여야 한다.

[2022회계연도 통일정보자료센터 사업 설계비 집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기본조사설계비 (420-01)	517	517	-	517	311	109	97
실시설계비 (420-02)	775	775	-	775	515	221	39
합 계	1,292	1,292	-	1,292	826	330	136

자료: 통일부

그리고 2022년 예산안에는 기본조사설계비(420-01) 예산과 실시설계비(420-02) 예산이 각각 분리되어 편성되었고 공정상 기본조사설계 완료 후 실시설계 단계가 진행되므로 실시설계 착수 이전에 실시설계비를 집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의 70%에 해당하는 선금을 요구하여 기본조사설계비와 실시설계비를 예산액 비율에 따라 각각 70%씩 집행하였고, 이는 예산조기 집행 기조에 따라 이월 및 불용의 최소화를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통일부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선금을 집행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나원 교육훈련사업의 철저한 사전 준비 및 면밀한 예산 편성 필요

가. 현 황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¹⁾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통해 사회적응능력을 제고하고 우리사회에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일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액 136억 9,600만원 중 100억 2,200만원을 집행하고 36억 7,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14,010	13,623	73	±630	13,696	10,022	-	3,674	12,854
하나원 교육훈련	10,708	10,342	73	416 △503	10,329	7,338	-	2,991	9,848
제2하나원 교육훈련	3,302	3,281	-	214 △127	3,367	2,684	-	683	3,00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통일부

3-1. 사업 추진시 사전 준비 철저히 할 필요

가. 현 황

통일부는 하나원 특수경비 용역 외부위탁 계약이 2021년 12월 종료 예정임에 따라 조달청에 동 용역 공개경쟁입찰을 요청하였으나 1차 입찰(2021.10.27.~11.9) 시 응찰 업체들이 투찰금액으로는 특수경비를 운영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계약을 포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2337-302

기하여, 이후 재공고 입찰(2021.12.9.~12.17)을 실시하였으나, 조달청은 기초 가격이 시중노임단가 미만으로 산출되었다는 사유로 조달요청을 반려하였다.

[2022년도 하나원 특수경비 용역 공고 경과]

구분	기 간	결 과	비 고
1차 공고	2021.10.27.~11.9	유찰	응찰업체들이 계약금액 과소문제로 계약 포기
2차 공고	2021.12.9.~12.17	조달청반려	기초 가격이 시중노임단가 미만으로 산출
3차 공고	2022.2.11.~2.15	업체선정	관리용역비 부족분 364백만원 세목조정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하나원 교육훈련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통일부는 특수경비용역 계약 기초가격 산정을 위한 시중노임 단가를 확인하지 않아 용역 계약 업무를 제때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향후 계약 업무 추진시 사전 절차 및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준비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특수경비대 관리용역비 부족분 3억 6,400만원을 일반수용비(210-01)에서 일반용역비(210-15)로 세목조정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3차 입찰 공고를 실시하여 용역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확인된다.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세목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목조정 (‘22.1.20.)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 01	364	북한이탈주민 교육훈련 (2337-302)	210- 15	특수경비대 용역비 발주예산 부족분 충당

자료: 통일부

시중노임단가²⁾³⁾는 건설업이나 제조업 종사 근로자들의 급료뿐만 아니라 산재 사고나 교통사고 시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득을 결정할 때 중요한 요소가 되고 특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시에 원가계산의 기준이 되는 노무비 산정의 기초자료로 사용되므로 하나원 특수경비 용역 계약 시 가장 중요한 사항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통일부는 용역 계약 입찰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사항인 시중노임단가를 확인하지 않아 행정력을 낭비했을 뿐 아니라, 2022년 용역 계약을 제때 수행하지 못함으로 기존 용역 계약 업체와 추가로 2개월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는 적절한 집행으로 볼 수 없다.

통일부는 향후 계약 업무 추진 시 기초가격 산정 및 사전 절차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준비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통일부는 하나원 특수경비 용역 계약 시 일관된 기준 없이 당시의 상황에 따라 제한, 수의 등의 계약방식을 편의적으로 운영하였는데, 향후에는 계약 업무 추진시 사전 절차 및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준비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2009년 4월부터 특수경비용역 계약을 통해 하나원 경비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 방식을 살펴보면 제한경쟁, 수의, 일반경쟁 등 계약방식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2) 중소기업중앙회가 해마다 2차례 발표하는 건설업과 제조업 부문 노동자의 평균 임금을 뜻한다.

3)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30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 ② 원가계산기준이 정해지지 않은 기타의 용역계약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노임에 의한다

1. 시설물관리용역: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하는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의 단순노무종사원 노임

[하나원 특수경비 용역 계약 경과]

(단위: 백만원)

계약기간	계약방식	근거(사유)	계약금액	용역 업체
2009.4.~2011 (장기계속계약)	제한경쟁 (신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용역수행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	(2009) 1,159	A사
			(2010) 1,641	
			(2011) 1,545	
2012	수익 (계약연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보안상 필요시 수익계약 가능)	(2011) 1,740	
2013	수익 (계약연장)		1,884	
2014~2016 (장기계속계약)	제한경쟁 (신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 (용역수행실적에 따른 참가자격 제한)	(2014) 1,655	B사
			(2015) 1,907	
			(2016) 2,028	
2017	일반경쟁 (신규)	용역실적제한은 적격심사 실적평가로 대체	2,186	C사
2018	수익 (계약연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보안상 필요시 수익계약 가능)	2,239	
2019	수익 (계약연장)		2,490	
2020	수익 (계약연장)		2,548	
2021	수익 (계약연장)		2,548	
2022.1~2	수익 (계약연장)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1호나목 (보안상 필요시 수익계약 가능)	481	
2022.3~12	일반경쟁 (신규)	「국가계약법」 제7조	2,173	D사
2023~2025 (장기계속계약)	일반경쟁 (신규)	「국가계약법」 제7조	(2023) 2,668	E사
			(2024) 2,578	
			(2025) 2,578	

자료: 통일부 제출자료 재작성

국가계약 관계 법령은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일부 하나원 특수경비용역의 계약 목적·성질·규모 등은 상황에 따라 단 시간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계약방식의 잦은 변경은 입찰에 참가하려는 사람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므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통일부는 향후 계약 업무 추진 시 사전 절차 및 관련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준비를 면밀하게 할 필요가 있겠다.

3-2. 예산 편성시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가. 현 황

통일부는 제2하나원 리모델링 사업 수행비로 공사비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동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420-02) 3,000만원, 감리비(420-04) 1,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다.

[제2하나원 리모델링 사업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실시설계비 (420-02)	-	-	-	30	-	30	25	-	5
공사비 (420-03)	562	562	-	△40	-	522	473	-	49
감리비 (420-04)	-	-	-	10	-	10	5	-	5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제2하나원 리모델링 사업 예산에 실시설계비와 감리비 미편성으로 세목조정을 통해 사업 집행을 하였으므로, 통일부는 향후 예산 편성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관련 지침의 확인을 통해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제2하나원 리모델링 사업 수행비로 공사비 5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4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4,9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는데 동 사업을 위해 실시설계비(420-02) 3,000만원, 감리비(420-04) 1,000만원을 세목조정하여 집행하였다.

제2하나원 강의실·교육생 생활관 등에 대한 환경개선 공사를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위한 예산 편성시 공사비 외에 실시설계비 및 감리비 예산을 같이 편성하여 집행했어야 함에도 미편성된 예산을 세목조정을 통해 집행한 것은 사업 예산 편성시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는 일괄입찰(턴키) 방식으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효과적인 교육환경 개선공사를 위해 전문성이 있는 설계·감리업체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불가피하게 세목 조정을 통해 집행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⁴⁾에서 공사비를 반영할 경우 감리비도 동시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는 사업 계획 수립시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 편성한 것으로 보여진다.

통일부는 향후 사업 계획 수립 시 관련 사항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4)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247

가. 현 황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¹⁾의 내역사업인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북한이탈주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남북 주민 간 소통·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남북통합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통일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58억 7,300만원 중 157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1,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아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지원체계 운영	15,873	15,873	-	-	15,873	15,760	-	113	16,322
남북통합문화센터	3,537	3,537	-	-	3,537	3,435	-	102	3,54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탈북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남북 주민 간 소통·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5월 13일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운영중이고, 남북통합문화센터는 ① 남북주민 소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② 탈북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③ 체험교육 및 도서관 운영의 3개 사업을 수행하며, 통일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기획·운영을 하고,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은 민간위탁사업비(320-02목)로 편성하여 위탁 운영하고 있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2331-300

나. 분석의견

남북통합문화센터 사업은 법적인 근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여 남북 통합문화센터를 민간위탁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통일부는 동 사업의 민간위탁 법령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의 문화생활 참여 기회를 확산하고 남북 주민 간 소통·통합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 5월 13일 남북통합문화센터를 개관하여 운영 중이고, 남북 통합문화센터는 ① 남북주민 소통문화 프로그램 운영, ② 탈북민 문화생활 종합지원, ③ 체험교육 및 도서관 운영의 3개 사업을 수행하며, 통일부에서 사업계획 수립 등 전반적인 기획·운영을 하고, 시설관리 및 사업운영은 민간위탁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사업은 예산현액 35억 3,700만원 중 34억 3,5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2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다.

[2022년도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사업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사업 명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	3,537	3,537	3,537	3,435	-	102
- 상용임금(110-03)	54	54	54	50	-	4
- 일반수용비(210-01)	91	91	91	91	-	-
- 공공요금및제세(210-02)	147	147	147	121	-	26
- 임차료(210-07)	20	20	20	20	-	-
- 유류비(210-08)	6	6	6	1	-	5
- 시설장비유지비(210-09)	82	82	82	82	-	-
- 재료비(210-11)	11	11	11	8	-	3
- 복리후생비(210-12)	1	1	1	1	-	-
- 일반용역비(210-14)	122	122	122	121	-	1
- 관리용역비(210-15)	538	538	538	483	-	55
- 국내여비(220-01)	5	5	5	3	-	2
- 사업추진비(240-01)	10	10	10	10	-	-
- 민간위탁사업비(320-02)	2,340	2,340	2,340	2,340	-	-
- 고용부담금(320-05)	10	10	10	6	-	4
- 자산취득비(430-01)	100	100	100	98	-	2

[2022년도 남북통합문화센터 민간위탁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계약액	계약업체	총수탁 협약기간	계약방법
남북주민소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사업	674.5	KC대학교 컨소시움 ¹⁾	'22.1-'22.12	협상에 의한 계약
탈북민문화생활 종합지원	893	남북하나재단 컨소시움	'22.1-'22.12	협상에 의한 계약
통합문화체험교육 및 도서관 운영사업	772.5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컨소시움	'22.1-'22.12	협상에 의한 계약

주: 1) 'KC 대학교 컨소시움'은 KC대학교(Korea Christian University, 舊 그리스도신학대학교)와 새조위(사단법인 새롭고 하나된 조국을 위한 모임)로 이루어진 공동수급체로서 남북통합문화센터 남북주민소통문화프로그램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자료: 통일부

그런데,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정부조직법」 제6조제3항²⁾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항³⁾ 등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는데, 통일부는 남북통합문화센터 관련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법령상 민간위탁 근거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근거 법령

2) 「정부조직법」

제6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③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였고, 2023년 현재 까지 사업 위탁의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감사원의 통일부에 대한 2021년도 정기감사(2022.2.)에서도 지적된 사항임에도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

[남북통합문화센터에 대한 2021년 감사원 감사결과 주요내용]

문제점	주요내용
민간위탁사업의 근거법령 부재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관 주재 회의를 통해 민간위탁 실시 결정

자료: 감사원, 「통일부에 대한 2021년도 정기감사」, 2022.2.

통일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 하였으나 법제처가 법률 개정사항이라고 판단함에 따라 정부입법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2023년 4월 20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통일부는 남북통합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한 민간위탁의 법령상 근거가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DMZ 평화적 이용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시 체계적인 관리 필요

가. 현 황

DMZ 평화적 이용 사업¹⁾은 비무장지대(DMZ)를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의 평화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일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계획현액 293억 3,400만원 중 116억 9,400만원이 지출하고 176억 4,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DMZ 평화적 이용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DMZ 평화적 이용	26,698	26,698	2,636	-	29,334	11,694	-	17,640	12,027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	1,200	1,200	-	-	1,200	-	-	1,200	-
DMZ 평화의길	11,692	11,692	2,324	-	14,016	8,539	-	5,477	-
철원 DMZ 평화의길 비마교 복구	-	-	2,150	-	-	2,150	-	-	-

자료: 통일부

5-1.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 사업 계획수립 시 면밀한 사전 검토 필요

가. 현 황

내역사업인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 사업은 DMZ 내 화살머리고지 GP를 시설 개선하여 현장기념관으로 조성하고, 평화·희망 등의 비전을 형상화한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형태의 복합공간 기념관을 건립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통일부는 예산액 1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사업 중단으로 전액 불용처리하였다.

[2022년도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부 처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	1,200	-	1,200	-	-	1,200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평화기념관) 사업은 사업계획 수립 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등에 따른 관계절차 및 사업 추진여건, 정책 환경에 대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 집행이 되지 않은 것으로 통일부는 향후 신규 사업 추진 시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좀 더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당초 동 사업은 지자체의 요청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1단계 DMZ내에 현장기념관 조성(총 사업비 20억원), 2단계 DMZ 밖에 평화현장기념관 조성(총 사업비 191억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화살머리고지 기념관 건립 계획]

(단위: 백만원)

구분	건축물	예산	위치	사업내용
1단계	현장기념관	2,000	DMZ 내	화살머리고지 GP를 리모델링하여 전시·추모 공간 등 조성
2단계	평화기념관 조성	19,100	DMZ 밖	라키비움(도서관+기록관+박물관) 형태의 복합공간 조성

자료: 통일부

그런데 1단계 사업은 당초 2020년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하였으나, 단계별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2022년 12월에 공사 완료 후 2023년 현재 유지보수 등이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화살머리고지 기념관(현장기념관) 건립 추진 경과]

구 분	당초계획	진행 경과(현재)
• 설계용역(안전진단 및 내·외부 기본설계)	'20. 8. ~ '21. 3.	'21.2. 완료
• 리모델링(내·외벽 보강 및 방수공사 등)	'21. 4. ~ 5.	'22.12. 완료
• 전시기획안 공모 및 전시시설물 연출	'21. 4. ~ 11.	'22.11. 완료
• 부대공사(경계성 보안시설 및 지붕보강 등)	'21. 4. ~ 11.	'22.12. 완료
• 종합 시운영, 유지보수 등	'21. 11. ~ 12.	진행 중('23.1월~)

자료: 통일부

[화살머리고지 기념관(현장기념관) 건립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부 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현액	집행액								
2020	2,000	2,000	-	2,000	2,000	-	-	2,000	-	2,000	-	2,000	-
2021	-	-	-	-	-	-	-	-	2,000	2,000	599	671	730
2022	-	-	-	-	-	-	-	-	671	671	651	-	20

자료: 통일부

2단계 사업은 철원군에서 평화기념관 조성의 기본 방향, 비용 추정, 건축·전시 콘텐츠 구상, 운영·관리 방안 수립 등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2020.12~2021.6) 후 2022년도 예산안에 동 사업을 위해 설계비 일부 예산 12억원을 편성하였다.

그런데 철원군에서 사업 추진 도중, 문체부 소관 법령에 따른 공립 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²⁾ 결과 부적정 통보(2022.5월)를 받고, 기념관 건립 후 관리·운영 부담 등을 이유로 사업 중단 의사를 표시(2022.6월)함에 따라 동 사업을 종료 처리(2022.8월) 한 것으로 확인된다.

[화살머리고지 기념관(평화기념관) 건립 추진 경과]

구 분	당초계획	진행 경과(현재)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등 절차 이행 •사업비 교부 •기본 및 실시설계 등 사업착수	'22.상반기 '22.7월 '22.8월~	- 사전평가 부적정 통보('22.5.) - 철원군, 사업 중단 의사 표명(22.6.) - 사업 중단('22.8.)

자료: 통일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³⁾에 따르면 지자체 보조사업의 경우 부지확보, 사전절차이행 등 보조사업 수행여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고, 전시기능이 포함된 신규 문화시설 건립 요구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설립타당성 사전 평가’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부는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절차 전에 예산 편성을 편성하였다.

참고로, 문체부가 실시한 공립박물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의 구체적 근거 및 자료 미흡, 기념관 정체성 부각을 위한 방안 미흡, 특화된 자료 및 수집 활용 계획 수립 필요 등으로 확인된다.

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3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공립 박물관·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박물관·미술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이하 “사전평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3) 2022년도 예산안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114

[문체부 공립박물관(화살머리고지 평화기념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결과]

구 분	주요 심의 의견
설립 추진 계획 및 운영계획	설립 추진 및 운영계획의 구체적 근거 및 확증 자료 미흡 - 전시, 자료수집 및 정리, 교육 등 학예전문 인력의 확충 필요 - 지역 유입 관람객 연계 전략 필요
부지 및 시설 계획	- 기념관 정체성 부각을 위한 방안 미흡 - 전시구성과 연계한 시설 계획 및 공간 필요
자료 목록 및 수집 계획	- 특화된 자료 및 수집 활용 계획 수립 필요 - 유해 발굴 이외 자료 등 소장품 확보 구체적 방안 제시 요구 - 자료수집 경로 다양화 필요(유관기관 확장 MOU 등)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안 편성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예산 편성 전에 관련 법령에 따른 설립타당성 사전평가를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했음에도 동 절차 이전에 예산을 편성하였다. 향후 관련 지침에 따라 좀 더 면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5-2. 보조금 교부 사업 철저한 관리 필요

가. 현 황

내내역사업인 철원 DMZ 평화의길 비마교 복구 사업은 집중 호우로 유실된 비마교를 복구하고 철원구간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부는 2022년도 계획현액 21억 5,000만원 전액을 교부하였으나 지자체는 전년도 이월액이 포함된 교부현액 22억 1,300만원 중 2억 2,900만원을 집행하고 19억 8,400만원을 이월 처리하였다.

[철원 DMZ 평화의길 비마교 복구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부 처							사업시행주체(피출연·피보조 기관 등)					
	계획		전년도 이월액	계획 현액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집행률]	이월액	불용액
	당초	수정											
2021	2,300	2,300	-	2,300	150	2,150	-	150	-	150	87 [58]	63	-
2022	-	-	2,150	2,150	2,150	-	-	2,150	63	2,213	229 [10.3]	1,984	-
2023.4.	-	-	-	-	-	-	-	-	1,984	1,984	399 [20.1]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비마교 복구 사업 예산의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고려 없이 보조금을 교부하여 교부액의 98.7%에 해당하는 이월액을 발생시켰으므로 향후 보조금 교부에 앞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연내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사업기간 변경⁴⁾을 통해 2021년도 예산액 23억원 중 설계비 1억 5,000만원을 교부하고, 21억 5,000만원은 부처에서 이월 후 2022년도에 2차로 공사비 21억 5,000만원을 철원군에 전액 교부하였으나, 보조금 21억 5,000만원의 89.7%에 해당하는 19억 8,400만원이 이월되었다.

4) 당초 2021년도 단년도 사업으로 추진하였으나, DMZ내 특수상황(유엔사 출입승인, 관할 군부대 협의, 공사범위 내 지뢰 등)으로 2021년 제320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21.4.8)시 사업기간을 3개년 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철원DMZ 평화의 길 비마교 복구 사업 추진 경과]

구 분	당초계획	진행 경과(현재)
• 실시설계 용역 발주 및 용역사 선정 • 군보 협의 및 행정절차 실시 • 공사 착수 및 준공	'21.5.~'21.12. '21.말~'22.상반기 '22.상반기~'23.12월	• 실시설계용역('21.8.~'22.6.) • 철원군, 사업중단 의사 표명('22.7.) • 철원군, 사업중단 결정 철회 및 사업 재개 추진 의사 표명('22.10.) • 시공사 선정 및 착공('22.11.) ※ 동절기 공사중지('22.12.~) 후 재착공('23.4.)

자료: 통일부

사업 집행 부진에 대해 통일부는 공사 인력 출입 및 공사 승인 권한을 유엔사가 보유하고 있는 DMZ 내 사업의 특수성, 동절기 기온 저하로 인한 공사중지, 軍 지역사단-자치단체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중단·재개 등에 따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철원 DMZ 평화의길 비마교 위치]



자료: 통일부

보조금 교부현황을 살펴보면, 통일부는 이월된 공사비 예산을 2022년도에는 1차 교부시(11월 11일) 보조금 21억 5,000만원 전액을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022년도 비마교복구 사업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월별 교부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액	교부액			
		1월~10월	11월	12월	합계
강원도	2,150	-	2,150	-	2,150

주: 교부액은 공사비임

자료: 통일부

「국고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제1항5) 및 제2항6)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①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② 실현가능성, ③ 지방비 부담능력, ④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⑤ 연내 집행가능성, ⑥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있음에도 통일부는 2021년도 이월액 21억 5,000만원을 재이월 하지 않기 위해 2022년도에 보조금을 전액 교부하여 19억 8,400만원의 이월액을 발생시켰다.

따라서 통일부는 보조금 교부에 앞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면밀히 확인함으로써 이월 및 불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보조금 교부방법)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최소 2차례 이상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교부사이에 교부된 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잔여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은 낙찰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감안하여 교부한다.

- 6)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현가능성, 지방비 부담능력,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부지확보 여부, 인허가서류, 주민동의서 등), 연내 집행가능성(계속사업의 경우 전년도 집행 및 실집행 실적), 이월금 보유현황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 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는 관서운영경비 집행 필요

가. 현 황

통일부는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통일정책추진, 국내통일기반 조성,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등 4개 세부사업에서 관서운영경비의 범위(건당 500만원 이하의 운영비)를 초과하여 5건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2,719	2,719	128	203 △164	2,868	1,721	18	1,129	1,629
통일정책추진	2,072	2,072	-	±234	2,052	1,953	-	99	3,878
국내통일기반조성	10,019	9,989	-	±105	9,989	8,365	1,312	312	9,989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380	380	-	±15	380	333	-	47	2,48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일반수용비 및 임차료 등의 운영비는 건당 금액이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상 기준인 500만원을 초과함에도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한 사례가 있으므로, 통일부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부합하도록 비관서운영경비(일반지출)로 지급할 필요가 있다.

「국고금 관리법」 제22조 및 제24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재무관의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절차를 거쳐 지출하되, 이와 같은 절차에 따를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에 대해서는 재무관의 보조자인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교부받아 지급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¹⁾.

다만,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에 따르면 운영비(210목)는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에 한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²⁾.

기획재정부예규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에서는 건당(500만원)을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으로 규정³⁾하고 있고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예산과목	용 도
운영비(21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공과금 및 위원회 참석비, 선거관련 용품제작 및 인쇄비용, 우편요금, 청사임차료, 기업특별회계의 당해 사업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제한 없음). ※ 복리후생비, 학교운영비, 일반용역비, 관리용역비, 시험연구비 중 연구용역비는 제외

자료: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별지 제1호 중 일부

그러나 통일부는 4개 세부사업에서 관서운영경비 지급 최고금액인 500만원을

1) 「국고금 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관서를 운영하는 데 드는 경비로서 그 성질상 제22조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지출할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비(이하 “관서운영경비”라 한다)는 필요한 자금을 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지급하게 할 수 있다.

2)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비(복리후생비·학교운영비·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특수활동비·안보비·정보보안비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①영 제31조제1호에 따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 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① 규칙 제52조제1항에서 “건당(500만원)”이라 함은 동일한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1인의 채권자에게 1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

초과하여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벗어나 5건을 집행하였다. 이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및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적절하지 못한 집행이므로 비관서운영경비로 지출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관서운영경비 지급 최고금액(500만원) 초과 집행 현황]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과목	건 명	집행액
총액인건비 비대상 기관운영 기본경비	일반수용비	인쇄물 제작 대금 지급	5,984
		제77회 식목일 행사 물품구입(나무)	7,700
통일정책추진	임차료	학술회의 장소 임차료 지급	5,500
국내통일기반조성	일반수용비	사무기기(토너카트리지) 소모품 구입	5,889
북한인권개선 정책수립 및 추진	공공요금 및 제세	북한인권 증진 참고자료 영문 번역본 배포(택배운송비)	5,056

자료: 통일부 제출 지급대장 발췌

이러한 취지에서 국회는 2021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통일부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할 것’을 시정요구(주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재발되었으므로 통일부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회계 담당 공무원에 대한 회계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가. 현 황

민생협력지원 사업¹⁾의 내역사업인 보건의료협력 사업은 북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등 민생협력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 개선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통일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계획현액 5,223억 6,200만원 중 33억 7,100만원을 집행하고 5,189억 9,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민생협력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추경							
민생협력 지원	513,092	513,092	9,270	-	522,362	3,371	-	518,991	604,969
보건의료 협력	95,459	95,459	-	-	95,459	200	-	95,259	124,244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공개 경쟁 입찰을 통해 추진되어야 할 계약업무가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는데, 이는 경쟁원리를 통해 가장 적합한 연구수행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통일부는 코로나19 등 상황으로 남북 보건의료협력 수요가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협력 방안들을 효율적·구체적으로 모색하기 위해 보건의료협력 사업에서 2021년도부터 연구용역 사업을 실시하였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남북협력기금 2141-402

2022년에는 5건의 연구용역 과제 수행을 위해 2억원의 연구용역비를 집행하였고, 5건 모두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체결된 것으로 나타난다.

[2021~2022회계연도 연구용역 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연구과제명	계약기간	계약금액	계약업체	계약방식
2021	남북 감염학 용어집 발간 연구용역	'21.7.8.~ '21.12.8.	20	고려대산학협력단 (김** 교수)	수의
	대북 비감염성 만성질환 협력 로드맵 구축	'21.7.8.~ '21.12.23.	50	고려대산학협력단 (김△△ 교수)	수의
	대북 감염성 질환 협력 추진방안	'21.7.14.~ '21.12.14.	50	연세대산학협력단 (염□□ 교수)	수의
2022	대북 감염병관리 및 방역 대응 체계 강화 지원 방안 구축 연구	'22.4.13.~ '22.11.13.	40	연세대산학협력단 (염□□ 교수)	수의
	북한 결핵실태 평가와 역량 강화 방안	'22.4.13.~ '22.11.13.	40	연세대산학협력단 (강** 교수)	수의
	북한 만성질환 관련 의료 체계 강화 방안	'22.4.7.~ '22.11.7.	40	한국과학기술원 산학협력단 (차** 교수)	수의
	북한주민 영양실태 개선을 위한 실태분석 및 협력방안	'22.5.12.~ '22.11.12.	40	이화여대산학협력단 (권** 교수)	수의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중 장기 전략행동계획 수립	'22.3.11.~ '22.9.11.	40	고려대 산학협력단 (김△△ 교수)	수의

자료: 통일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²⁾이 원칙적으로 계약은 일반경쟁에 의하되, 예외적인 경우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수행하도록 정한 것은 연구자 선정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당 과제의 전문가가 연구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계약의 방법)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을 체결하려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指名)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隨意契約)을 할 수 있다.

또한,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연구용역비 집행 시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일부는 수의계약 체결 사유로 북한 관련 전문가가 제한적이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³⁾에 따라 특수한 지식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으로 보아 수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대북 감염병관리 및 방역 대응 체계 강화 지원 방안 구축 연구’(연세대 산학협력단)와 ‘한반도 보건의료협력 증강기 전략행동계획 수립’(고려대 산학협력단) 과제를 수행한 계약자는 2021년도에도 수의계약으로 연구용역을 수행하여 계약 과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특수한 지식을 요구하는 용역계약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할 때에는 경쟁에 의한 방법으로 입찰을 진행한 이후 적합한 연구 수행자가 없는 경우 수의를 진행하는 것이 동 법령의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당초에 경쟁 절차 없이 수의로 하는 것은 법령에 위배되는 집행으로 볼 수 있다.

연구용역의 수의계약 방식은 연구자를 기관 임의로 선정하게 됨으로 인해 경쟁 원리를 통해 가장 적합한 연구수행자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므로 불가피한 경우에만 최소화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현 황

경제교류협력대출(용자) 사업¹⁾은 「남북협력기금법」 제8조에 근거하여 교역 및 경제 분야 협력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보증 및 자금의 용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통일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계획현액 136억원 중 92억 6,400만원을 집행하고 43억 3,600만원을 불용하였다.

개성공단 운영대출(용자) 사업²⁾은 「남북협력기금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의 용자,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위한 것으로, 통일부는 2022년도 계획현액 254억 600만원 중 174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79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경제교류협력대출(용자) 및 개성공단 운영대출(용자)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경제교류 협력대출(용자)	25,000	13,600	-	-	13,600	9,264	-	4,336	10,000
개성공단 운영대출(용자)	14,489	25,406	-	-	25,406	17,411	-	7,995	2,058
개성공단 기반조성	15,617	18,306	-	-	18,306	17,350	-	956	9,059
경협기반 (무상)	247,488	245,282	1,325	-	246,607	11,563	-	235,044	245,282

자료: 통일부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남북협력기금 3040-403

2) 코드: 남북협력기금 3041-403

8-1.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한 신규사업 추진 지양 필요

나. 분석의견

남북협력기금의 기금운용계획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기금운용계획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거나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경제교류협력대출, 개성공단 운영대출 등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소요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연초에 기금운용계획 자체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금강산관광 중단('08.7월), 5.24조치('10.5월), 개성공단 가동중단('16.2) 이후 기업의 귀책사유 없이 경영 외적 사유로 생산 활동 중단이 장기화되고 코로나 19 상황으로 인한 기업 경영애로 상황이 지속되자 이의 해소를 위한 특별경제교류협력 대출과 개성공단 추가 특별대출을 실시하고, 투자자산추가피해지원, 기업운영관리경비지원을 시행하였다.

2022년 2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추가지원을 결정하고 대출 및 지원 사업을 위해 2022년 2월11일 기획재정부 협의를 통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실시하여 기금운용계획 변경액은 총 574억원으로 파악된다.

[2022년도 남북협력기금 특별대출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 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경제교류 협력대출	기금운용 계획변경 (‘22.2.14.)	450	04	교역자금 대출	△5,000	-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로 피해를 입은 경험·금강산 기업에 대한 추가 특별대출 마 련
		450	04	경협자금 대출	△14,000	
		450	04	광업협력 대출	△3,000	
		450	04	국제협력 대출	△3,000	
		450	04	특별경제교류 협력 대출	13,600	
소 계					△11,400	

(단위: 백만원)

구분		목	세 목	세사업	금액	계획수정 사유
개성공단 운영대출	기금운용 계획변경 (22.2.11.)	450	04	공단 기반시설 지원(용자)	△12,283	- '22년 개성공단 피해기업 추 가 특별대출을 위한 기금운용 계획 변경 - 10,917백만원은 경협기반(무 상) 및 경제교류협력대출 세부 사업 재원에서 조정
		450	04	개성공단 추가 특별대출	23,200	
소 계					10,917	
개성공단 기반조성	기금운용 계획변경 (22.2.11.)	320	01	공단기반시설 건설지원	△9,711	- '22년 개성공단 피해기업 추 가 지원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 2,689백만원은 경협기반(무 상) 및 경제교류협력대출 세부 사업 재원에서 조성
		310	01	투자자산 추가 피해지원	8,500	
		310	01	기업운영관리 경비지원	3,900	
소 계					2,689	
경협기반 (무상)	기금운용 계획변경 (22.2.11.)	320	01	기타경제협력 사업(비공개)	△10,406	- 금강산관광 중단 및 5.24조치 로 피해를 입은 경협·교역·금 강산 기업에 대한 추가 특별대 출 및 기업관리경비마련을 위 한 프로그램 사업비 규모 조정
		310	01		8,200	
소 계					△2,206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국정감사 이후 국회 예산 심의가 진행중이던 2021년 11월 경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시작하여 2022년 2월 10일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로 사업 추진을 결정하여 2022년 2월 14일 특별대출 사업을 실시하였다.

연초에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통일부가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을 사실상 회피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금운용계획변경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9조3)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가 발생하거나 기존사업을

3) 「국가재정법 시행령」 ① 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

보완하는 경우 가능하지만 경제교류협력대출 및 개성공단 운영대출 등의 지원사업은 예측하지 못한 긴급한 소요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남북경협사업 참여 기업 및 개성공단지구 기업들의 추가 지원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고, 동 기업들의 경영상 어려움은 사업 중단 이후 계속된 상황으로 예측 가능한 측면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부는 2022년도 예산안 부대의견⁴⁾과 남북경제협력 중단의 장기화 및 코로나19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어려움이 지속됨에 따라 이를 지원하기 위해 특별대출 및 지원사업을 실시하였다는 설명이다.

[2022회계연도 특별대출, 피해지원, 무상지원 사업별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액		계획 현액(A)	집행액 (B)	이월	불용	집행률 (B/A)
		당초	수정					
특별경제교류협력 대출		-	23,200	23,200	15,205	-	7,995	65.5
개성공단 추가 특별대출		-	13,600	13,600	9,264	-	4,336	68.1
개성공단 기반조성	투자자산추가 피해지원,	-	8,500	8,500	8,454	-	46	99.4
	기업운영 관리비지원	-	3,900	3,900	3,090	-	810	79.2
경협기반(무상) -기업운영관리경비지원		-	8,200	8,200	6,470	-	1,730	78.9
합 계		-	57,400	57,400	42,483	-	14,917	74.0

자료: 통일부

국회예산 확정 후 40일여일 만에 국회에서 확정된 내역사업을 모두 감액하고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하는 것은 국회 예산 심의·확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어 보이고, 동 사업을 2022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기 위해 예산 심의 과정에서 노력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안 심사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4) 2022년도 예산안 수정안: 정부는 남북경제협력 중단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한다.

둘째, 통일부는 경협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대한 지원 사업을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시행하고 있는데 국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장기적인 사업 계획 및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통일부는 경협기업, 개성공단 입주기업 등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의 규모, 기준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통일부는 동 특별대출 사업을 2010년 5.24조치 이후 경영애로가 있는 남북 교역·경협기업에 대해 총 4차례(1차: 2010년, 2차: 2012년, 3차 2014년, 4차: 2022년) 실시하였고, 2013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경영애로가 발생한 개성공단 입주기업 및 영업기업에 대해 총 3차례(1차: 2013년, 2차: 2016년, 3차: 2022년) 실시하였다.

[경제교류협력대출, 개성공단 특별대출 및 상환유예 현황]

(단위: 억원, 개사)

구 분	금 액			기업수 ¹⁾	
	집행	회수 등	잔액 (‘22.12월)	집행	잔액
교역대출(‘00~‘10)	716	665	51	66	10
경협대출(‘01~‘09)	2,387	1,229	1,158	48	17
1차 특별(‘10~‘11)	377	175	202	184	110
2차 특별(‘12)	183	80	103	99	66
3차 특별(‘14)	190	10	180	43	39
차주변경 ²⁾	-	-	40	24	23
4차 특별(‘22)	93	-	93	37	37
개성공단 1차 특별(‘13)	555	276	279	104	70
개성공단 2차 특별(‘16)	728	114	614	123	109
개성공단 3차 특별(‘22)	152	-	152	41	41
합계	5,381	2,509	2,872	471	308

주: 1) 2022.12월 현재 중복 제외 기업 수

2) 현대아산(주) 앞 경협대출의 차주변경(현대아산(주) → 협력업체(24개사))

1. 1~4차 특별 경협기업에 금강산 포함

자료: 통일부

그런데 이러한 경험기업 등의 경영상 어려움 해소를 위한 특별대출 사업이 기금운용계획변경을 통해 이루어졌고, 금강산 관광과 경험 중단 장기화로 이들 기업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되면서 특별대출금의 회수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특별대출 외 피해지원금과 무상지원금도 2012년부터 지급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피해지원금은 개성공단 기업에 대해 총 205개사 2,694억원, 경험기업 등에 93개사, 1,239억원, 무상지원금은 총 567개사 209억원으로 확인된다.

[피해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개사, 억원)

구 분 (개성공단기업)	투자자산 피해지원		유동자산 피해지원	
	기업	금액	기업	금액
피해지원 1차('16)	134	671	143	1,214
피해지원 2차('16)	36	43	35	35
피해지원 3차('17~'18)	64	136	155	512
피해지원 4차('22)	13	85	-	-
합 계	172	934	158	1,760

구 분 (교역·경협·금강산)	경협기업		교역기업		금강산기업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기업	금액
2018	13	464	35	496	38	262
2019	2	7	4	10	1	0.1
합 계	15	471	39	506	39	262

자료: 통일부

[무상 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개사, 억원)

구 분	경협기업		교역기업		금강산기업		합 계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기업	금액
긴급운영경비('12)	9	1	408	47	40	4	457	52
기업운영관리경비('18)	16	5	368	78	41	9	425	92
기업운영관리경비('22)	13	5	221	50	36	10	270	65
합계	18	11	507	175	46	23	567	209

자료: 통일부

[2022년도 제4차 특별자금 대출 세부조건]

구 분	교역기업	경협기업	
		금강산지역	기타지역
대출금액	교역기업 중 5·24조치 직전 2년 중 연간 교역실적 보유기업	금강산관광사업 협력업체	내륙 투자기업 중 남북교역실적 기업
대출한도	136억원		
기업한도	3억원		
대출기간	3년		
대출이율	연 1.0%		
상환방법	만기 일시상환		

자료: 통일부

정부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 등에 참여한 기업들이 당사자의 과오가 아닌 경영 외적인 사유로 사업 수행이 불가함에 따라 정부가 어느 정도의 피해보상을 해주는 것은 동 사업 취지에 적합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런데 국가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장기적인 피해보상 계획 및 명확한 로드맵을 수립하지 않고 당시의 상황에 따라 즉흥적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신규 내역사업을 신설하고 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통일부는 경협기업, 개성공단입주기업 등에 대한 적절한 피해보상의 규모, 기준 등을 포함한 중·장기적인 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맞추어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용을 체계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8-2.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재원구조 개선 필요

가. 현 황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지원재단”이라 함)의 운영재원은 개성공단 운영대출 사업에서의 유상지원(대출)과 개성공단 기반조성 사업에서 무상지원 예산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의 경우 무상지원 부분에서 54억 2,400만원, 유상지원 부분에서 20억 6,100만원 총 74억 8,500만원이 집행되었는데, 인건비 42억 5,400만원, 기본경비 9억 1,100만원, 사업비로 22억 2,000만원이 집행되었다.

[최근 5년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예산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유상 지원	무상 지원	유상 지원	무상 지원	유상 지원	무상 지원	유상 지원	무상 지원	유상 지원	무상 지원
인건비	1,269	2,860	1,384	3,001	1,503	2,852	1,254	2,968	1,230	3,024
기본경비	287	634	338	696	344	717	299	663	272	639
사업비	455	1,533	467	2,049	441	1,591	575	1,993	559	1,761
예비비	-	-	-	-	-	-	-	-	-	-
합 계	2,011	5,027	2,189	5,746	2,288	5,160	2,128	5,624	2,061	5,424

자료: 통일부

지원재단의 운영지원 예산이 유상과 무상으로 나뉘게 된 것은 2004년 개성공단 운영 시점에는 신속한 사업추진 필요성과 개성공단 활성화에 따른 자체 수입의 증가 등을 예상하여 예산의 무상지원 대신 융자⁵⁾로 사업을 시작하였다.⁶⁾

5) 융자조건은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으로 연 이자율 1%임.

6)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①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의 개발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④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정부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국유재산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2022년 12월 기준 대출금 총액은 918억원이고, 그 중 170억원을 상환하였으나, 2016년 개성공단 운영 중단 이후 원리금 상환을 유예하여 2022년 말 기준 미상환잔액은 874억원으로 파악된다.

[최근 5년간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대출·상환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2004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① 원금	81,017	2,011	2,188	2,288	2,128	2,206	91,838
② 이자	11,338	214	232	258	241	233	12,516
③ 상환액	16,691	-	-	-	-	-	16,991
④ 잔액 (①+②-③)	75,364	2,225	2,420	2,546	2,369	2,439	87,363

자료: 통일부

한편, 통일부는 개성공단이 2007년 1단계 완료 이후 남북관계 경색에 따른 공단 확장 중단과 신규투자 제한 등으로 지원재단의 수익이 감소함에 따라 2010년부터 일부 정부대행 업무에 대한 무상지원방식을 도입하였다.

또한, 2016년 개성공단 운영 중단 이후에는 지원재단의 수익사업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고, 정부의 업무를 대행하여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및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등을 위해 정부 종합상황대책반 내 기업 종합지원센터⁷⁾를 운영하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공단 자산관리 총괄사업 등을 수행함에 따라 무상지원을 하고 있다.

1.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차입금
3. 수익사업의 이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7) 개성공단 전면 중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주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2월 11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설치하였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재원구조]

(단위: 백만원)

연 도	무 상	차 입	자 체	전 체
2016	8,954(27.9%)	3,300(10.3%)	19,871(61.9%)	32,125(100%)
2017	6,221(63.0%)	2,656(26.9%)	999(10.1%)	9,876(100%)
2018	6,221(65.4%)	2,574(27.1%)	720(7.57%)	9,515(100%)
2019	6,221(51.4%)	2,574(21.2%)	3,319(27.4%)	12,114(100%)
2020	6,221(52.7%)	2,574(21.8%)	3,012(25.5%)	11,807(100%)
2021	6,104(67.5%)	2,302(25.4%)	642(7.1%)	9,048(100%)
2022	5,806(67.5%)	2,574(27.0%)	720(7.6%)	8,594(100%)

자료: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업무 구분]

구 분	주 요 업 무
정부대행(무상) - 기업종합 지원센터 운영	입주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개성공단 가치 확산, 기업민원 지원, 공단 자산(국유재산·부동산) 통합관리, 재산권보호(등기), 제도개선 및 국제화 정비, 조사연구 등 정부정책수립 지원, 자금 출납·정산 등
재단 운영(유상)	인사·조직관리, 사업기획, 예산 및 감사업무, 재무관리·회계, 정보화사업 등

자료: 통일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인력은 개성공단 운영 중단 전 78명에서 중단 이후 52명으로 33.3% 감축하여 2023년 5월 현재 임원 3명을 포함한 현원은 52명으로 확인된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인력 규모 현황]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6.
인 원	78명	76명	62명	60명	61명	55명	55명	55명	52명

자료: 통일부

따라서 통일부는 현재 남북관계 경색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개성공단 운영 정상화를 담보하기 어려운 점, 지원재단의 자체 수익 창출이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재단 구조개선 및 지원재단의 업무 등 조직구조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상황에 맞추어 적절한 규모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사업¹⁾은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사업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객관적·체계적 북한정보 분석 체계를 마련하고, 내부적으로 통일·북한 관련 인공지능(AI) 및 인적자원 융합 분석체계를 구축하며, 대외적으로 「북한정보포털」을 통해 인공지능·빅데이터 기반의 대국민 북한정보서비스를 국내외로 대폭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통일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09억 4,000만원 중 81억 9,0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4,4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9,314	9,314	1,626	-	10,940	8,190	2,407	344	2,06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통일부

나. 분석의견

통일부는 유사한 사업 내용의 시스템 구축을 2개년으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사업지연을 발생 시킨 바,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소요기간, 사업 추진 가능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조사를 기반으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금연 예산분석관(nosmoking@assembly.go.kr, 6788-4641)

1) 코드: 일반회계 1533-502

동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2년까지 2개 년도에 걸쳐 종합적 대북정책 수립을 위한 지능정보기술 활용 북한정보 인공지능·빅데이터 분석체계 구축 추진을 계획하였고, 2022년 주요 사업추진 내용은 인프라 도입, AI 분석모델 개발, SW 개발, 데이터 정비·관리 등이다.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사업 1차 및 2차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도	예산액	예산 현액 (A)	집행액 (B)	이월액	집행률 (B/A)	집행 세부내역
2021 (1차 연도)	10,400	10,400	7,420	1,626	71.3	• 내부 분석시스템 구축 - 기본 인프라 구축(내부) - AI모델 개발 및 내부포털 구축 - 빅데이터화(83개 기관·매체)
2022 (2차 연도)	9,314	10,940	8,190	2,407	74.9	• 시스템 고도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인프라 확장(대내 및 대외) - AI모델 추가 및 대국민포털 기반 구축 - 빅데이터화 확대(83 → 95개 이상)

자료: 통일부

통일부는 동 사업 추진 시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구분하고 이를 각각 2021년도와 2022년도에 별도의 계약을 통해 추진하였다. 이 과정에서 계약 업체가 코로나 등 불가항력 사유로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하였고, 1·2차 준공검사 불합격으로 2022년 3월 11일 준공검사가 완료됨에 따라 사업 지연이 발생하여 2023년 9월 이후 사업이 완료될 예정으로 확인된다.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사업 일정]

당초 계획(2021년 12월 기준)	변경계획(2023년 4월말 기준)
- (2022.1월) 내부용 서비스 오픈 - (2022.2월)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2022.4월~5월) 과업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 (2022.6월~7월) 조달공고 - (2022. 8월~12월) 사업계약 체결	- (2022.4월) 내부용 서비스 오픈 - (2022.5월) 2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 (2022.6월~7월) 과업심의 및 관계기관 협의 - (2022.8월~9월) 조달공고(2회) - (2022.10월~2023.9월) 사업계약 체결

자료: 통일부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사업 관련 용역계약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용역명 (사업명)	계약 금액	다음연도 이월액	계약 업체명	계약 기간	사업수행 완료일	지체 상금	지체 기간
2021	시스템 구축	7,700	1,540	○○○○ 컨소시엄	'21.3.30. ~'22.1.25.	'22.3.11.	219	37일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432	86	주식회사 ○○○○○	'21.3.31. ~'22.2.10.	'22.2.9.	-	-
	분리발주 SW구매	862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1.6.29. ~'21.9.30.	'21.9.27.	-	-
2022	시스템 구축	7,670	1,534	○○○○	'22.10.27. ~'23.9.22.	준공 기한 미도래	-	-
	시스템 구축 사업 감리	432	86	주식회사 ○○○○○○	'22.10.12. ~'23.9.7.		-	-
	분리발주 SW구매	799	786	나라장터 종합쇼핑몰	'22.11.28. ~'23.4.18		-	-

자료: 통일부

동 사업은 ISP 결과 사업기간 2년, 총 사업비 28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결과가 산출되었고, 통일부는 동 사업을 1차 연도와 2차 연도로 구분하여 사업을 진행하였고, 1차 연도 사업은 내부용으로 기본 인프라 구축, AI모델 개발 및 포털 구축, 빅데이터화를 진행하였고, 2차 연도 사업은 내부에 이미 구축한 인프라의 확장, 빅데이터화 확대 및 사용자 편의와 수요를 고려한 대국민 포털(북한정보포털) 개편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사업내용은 차이점이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사업 ISP 결과-시스템 구축비용]

(단위: 백만원)

구분	1단계	2단계	합계
H/W도입비	1,466	2,483	3,949
S/W도입비	3,210	4,582	7,792
S/W개발비	1,700	-	1,700
분석모델개발비	2,238	9,500	11,738
기타	1,386	217	2,843
계	10,000	18,022	28,022

자료: 통일부

사업 집행 부진은 사업협약이 지연되고 업체가 제출한 결과물을 보완하는 등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업지연의 주요원인 중 하나는 통일부가 사업기간을 2년으로 하여 추진할 사업을 단년도 사업으로 각각 추진하였기 때문이다.

동 사업은 사업의 목적과 과업내용, 범위를 고려할 때 사업기간을 2개년으로 계속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국정원 등 관계부처들과 사실상 동일한 협의절차를 반복해야 했으며, 결과적으로 동일한 업체를 선정, 계약 하기 위한 입찰 공고에도 상당 기간이 소요되었다.

[북한정보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구축 사업 1차 및 2차 단계별 현황]

연도	사업계획 수립	과업심의	관계기관 협의	공고기간	준공검사
2021 (1차연도)	2021.1월	2021.1월	2021.1~2월	2021.2.24~3.19	1차: 2022.1.25~2.3. ¹⁾ 2차: 2022.2.21~2.25. ²⁾ 3차: 2022.3.8~3.11. ³⁾
2022 (2차연도)	2022.5월	2022.6월	2022.6~7월	1차: 2022.8.17~9.1 2차: 2022.9.2~9.20	2023년 9월 이후 예정

주: 1) 1차 준공검사 불합격

2) 2차 준공검사 불합격

3) 3차 준공검사 합격

자료: 통일부

과업의 내용과 수집·축적되는 정보의 특성상 1단계에 참여한 업체 외에 다른 업체가 2단계에 참여하는 것이 사실상 제약된다는 점을 볼 때도 동 사업은 1개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절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통일부는 향후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 추진 체계, 사업 소요 기간, 사업 추진 가능성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조사를 기반으로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500만원이며, 2,4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50.0%인 1,200만원을 수납하고 1,2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불납결손은 없다.

[2022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5	5	5	24	12	12	-	5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22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37억 2,800만원이며, 이 중 96.9%인 326억 8,600만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은 없으며 10억 4,2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2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4,025	33,728	33,728	32,686	-	1,042	96.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자산은 290억 5,300만원, 부채는 없으며, 순자산은 290억 5,300만원이다.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283억 6,700만원, 무형자산 6억 8,6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5억 6,300만원(2.0%) 증가하였다. 이는 전년도 대비 유동자산 300만원 감소, 일반유형자산 6억 200만원 증가, 무형자산 3,500만원 감소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9,053	28,490	563	2.0
Ⅰ. 유동자산	-	3	△3	△100.0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28,367	27,765	602	2.2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686	721	△35	△4.9
Ⅵ. 기타비유동자산	-	-	-	-
부 채	-	-	-	-
Ⅰ. 유동부채	-	-	-	-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29,053	28,490	563	2.0
Ⅰ. 기본순자산	12,238	12,238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229	△794	565	△71.2
Ⅲ. 순자산 조정	17,044	17,046	△2	0.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331억 7,3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331억 8,500만원이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2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8,600만원(0.3%) 증가한 331억 7,300만원이며, 이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고유사업 예산 증가에 따른 프로그램순원가가 전년도 대비 6,3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총 2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통일논의플랫폼 기능강화 프로그램(286억 1,000만원)이며, 통일정책자문·건의 성과제고 프로그램 순원가는 45억 7,500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와 비배분비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33,185	33,122	63	0.2
가. 프로그램 총원가	33,185	33,122	63	0.2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12	△12	△100.0
IV. 비배분수익	12	47	△35	△74.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33,173	33,087	86	0.3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33,173	33,087	86	0.3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284억 9,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90억 5,300만원으로 기초 대비 5억 6,300만원(2.0%)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 331억 7,3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6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200만원, 재

원의 조달 및 이전은 337억 3,800만원으로 집계되어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337억 3,8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1,2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이익 상계액 △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28,490	26,065	2,425	9.3
Ⅱ. 재정운영결과	33,173	33,087	86	0.3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33,738	32,209	1,529	4.7
Ⅳ. 조정항목	△2	3,303	△3,305	△100.1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9,053	28,490	563	2.0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자문회의 운영 사업**이 있다. 자문회의 운영사업의 내역사업인 지역운영위원회 사업에서 국내 지역운영위원회 임차료 실집행 가능성을 감안하여 2,600만원이 감액(1억 5,000만원 → 1억 2,400만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자문회의 운영 사업**, ②**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 등이 있다.

자문회의 운영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해외 지역회의 사업에서 해외 자문위원의 항공료 지원 현실화를 위해 1억원이 증액(21억원(2020) → 22억원(2022), 격년사업) 되었고, 지역협의회 활동추진 사업의 내내역사업인 해외 정기회의 사업에서는 해외 정기회의 개최 횟수 확대를 통해 해외 자문위원의 통일 여론을 적시에 반영하기 위해 1억 3,000만원이 증액(2억 6,100만원 → 3억 9,100만원)되었다.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자문회의 운영**, ②**자문위원 역량강화** 등이 있다. 정부 재원 마련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4개 사업에서 인건비 및 경상경비 감액 △2억 9,700만원(100%)이다. 자문회의 운영 1억 9,800만원 감액(51억 4,800만원 → 49억 5,000만원), 인건비 1,000만원 감액(67억 9,600만원 → 67억 8,600만원),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 3,200만원 감액(11억 200만원 → 10억 7,000만원), 자문위원 역량강화 5,700만원 감액(29억 3,000만원 → 28억 7,300만원) 되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1.1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① 평화·통일 국민 공감대 확산으로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기반 조성, ② ‘국내·해외 지역운영위원회’ 예산 지원으로 지역사회 평화통일 논의 및 공감확산 활동의 추진력 강화, ③ 노후시설 개선과 지원 인프라(시설, 인력) 보강, ④ 「제20기 민주평통」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수 재원 확보 등을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평화통일여론조사에서 정기 여론조사와 수시 여론조사는 유사한 설문문항이 중복 진행되었으므로, 두 여론조사 간 차별성과 조사횟수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국내 및 해외 자문위원 대상 지역회의는 연임비율의 증가와 참여부진에 따른 조치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율 관리 뿐 아니라 자문위원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정기 및 수시 여론조사 간 중복성 개선 필요

가. 현 황

평화통일여론수렴분석 사업¹⁾은 통일 및 대북정책, 남북관계 현안 등에 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건의와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자문회의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2년 예산현액 2억 5,700만원 중 2억 5,4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자문회의 운영	5,148	4,950	-	-	4,950	4,630	-	320	4,339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264	252	-	5	257	254	-	3	26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 분석의견

첫째, 평화통일여론조사에서 정기 여론조사와 수시 여론조사는 유사한 설문문항이 중복 진행되었으므로, 두 여론조사 간 차별성과 조사횟수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한서영 예산분석관(sy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을 근거²⁾로 통일문제 현안에 대해 일반 국민, 통일 전문가, 그리고 국내외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통해 의견을 조사 및 분석하여 분기별로 발간하는 정기 여론조사와 수시 여론조사로 진행하고 있다. 수집된 자료는 보고서 발간 및 남북정책과 관련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2022년 평화통일 여론조사 개요]

	정기 여론조사	수시 여론조사
대상 ¹⁾	국민, 통일 관련 전문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국민
조사시기	분기별 조사 (1~3월, 4~6월, 7~9월, 10~12월)	수시 조사(3회) (5월, 8월, 10월)
구성	추이문항 6개 현안문항 5~6개	현안문항 1차: 4개, 2차: 7개, 3차: 5개
목적	통일필요성 등 고정문항 외에 남북관계 및 통일관련 이슈 분석을 통한 현안 설문문항 제안	대북·통일 관련 현안사항 등을 설문문항으로 제안
조사방식	전화설문조사	ARS

주: 1) 국민은 전국 만19세 이상 성인 대상 1,000명, 전문가는 평화통일 관련 전문가 150명 중 100명, 그리고 자문위원은 19,686명 중 약 5,000명이 응답함

정기 여론조사는 통일에 대한 인식 추이를 파악하기 위한 추이문항과, 통일과 관련된 현안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추이문항은 분기별 동일한 문항으로, 현안문항은 각기 다른 문항으로 조사되고 있다. 수시 여론조사는 통일과 관련된 현안이 발생할 시 매년 총 3회 진행하는 여론조사이다.

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조국의 민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1. 통일에 관한 국내외 여론 수렴
2.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 도출
3. 통일에 관한 범민족적 의지와 역량의 결집
4. 그 밖에 대통령의 평화통일정책에 관한 자문·건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정기 여론조사의 현안문항과 수시 여론조사의 문항은 통일에 대한 현안을 파악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비슷하므로 두 조사 간 활용에 대한 차별성이 중요하다.

하지만 두 조사 간 설문문항을 분석한 결과, 동일 문항, 중복되는 키워드와 의미 측면에서 유사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수시 여론조사에서 활용된 문항의 일부는 정기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가져오거나 일부 활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두 여론조사 문항 간 중복성 현황]

	유사도 구분		유사 항목 합	총 문항
	동일항목	키워드 및 의미 중복		
정기 여론조사	3	5	8 (40%)	20
수시 여론조사	3	4	7 (43%)	16

주: 수시 여론조사는 총 3회이므로, 2~4분기와의 중복성이 나타남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출자료 바탕 재구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수시 여론조사는 정기 여론조사가 진행되는 기간 외에 발생하는 통일 관련 현안에 대해서 시기성을 고려하여 그 당시 인식을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점에서 통일과 관련된 일반적 현안을 질의하는 정기 여론조사와는 취지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이미 정기 여론조사는 분기별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통일과 관련된 현안이 발생해도 그 인식을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시 여론조사의 실효성이 명확하지 않다. 일례로, 3분기 9월에 진행된 정기 여론조사와 8월에 진행된 수시 여론조사에서는 8·15 경축사 관련 동일한 현안 문항을 활용하였으며, 정기 여론조사와 수시 여론조사 자체로 설문항목 수가 소수이고, 불과 한달 간격으로 수집되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 두 조사 간 실질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³⁾.

따라서, 정기 여론조사의 현안조사와 수시 여론조사의 별도 운영에 대해서 조사시기와 대상 측면에서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중복이 발생하는 북한 관련 현안에

3) 일례로 8·15 광복과 관련하여 두 여론조사는 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담대한 구상'에 대한 공감도 조사를 한달간격으로 실시하였고(7~8월), 담대한 구상에서 비핵화의 영향이라는 문항에서는 정기 여론조사와 수시 여론조사 결과가 동일하다.

대해서는 정기 여론조사에서 현안문항과 수시 여론조사의 각기 다른 문항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일반연구비(260-01)로 집행하여야 할 통일문제 여론조사를 일반수용비(210-01)로 집행하였으므로, 관련 지침을 준수하여 비목에 맞게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

평화통일여론 수렴 및 분석사업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대상 여론수집에 필요한 설문지 설계, 실사, 전산처리 등을 업체에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⁴⁾에 따르면 실태조사와 같이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에 해당되는 비목은 일반연구비로 집행하는 것이 적합하다.

[2022년 평화통일여론조사 집행 내역]

(단위: 천원)

세사업명	내역	집행비목	집행액
평화통일여론 수렴·분석	평화통일여론조사 (용역업체: (주)KSOI)	일반수용비	90,000

하지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인쇄비, 소송 및 법률자문, 위원회 참석비와 같은 목적의 집행인 일반수용비⁵⁾로 편성 및 집행하였다. 특히 평화통일여론 수렴 및 분석에 따른 여론조사는 20여 년간 매년 정기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편성 당시 집행에 대한 예측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반수용비로 잘못 편성 및 집행하였다.

따라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을 준수하여 일반수용비가 아닌 일반연구비로 편성 및 집행할 필요가 있다.

4) 일반연구비 (260-01목): 국가로부터 학술, 기술, 평가, 자문 및 시운전, **실태조사**, 전산개발, 임상연구 등 지식기반 업무의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5) 일반수용비 (210-01목):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소송 및 법률자문 비용, 위원회 참석비, 업무용 택시 이용요금 등 규정, 다른 비목 성격 경비 집행 금지

가. 현 황

국내·해외 지역회의사업¹⁾은 국내 및 해외 각 지역별로 구성된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한반도 평화 및 통일정책 상황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제고하고, 지역회의 별로 활동방향을 결의를 위해 운영되는 사업이며, 자문회의 운영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2022년 예산현액 25억 6,400만원 중 24억 4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0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내·해외 지역회의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 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자문회의 운영	5,148	4,950	-	-	4,950	4,630	-	320
국내·해외 지역회의	2,709	2,564	-	37	2,564	2,404	-	16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나. 분석의견

국내 및 해외 자문위원 대상 지역회의는 연임비율의 증가와 참여부진에 따른 조치 부족으로 참여율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참여율 관리 뿐 아니라 자문위원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국내와 해외에 있는 자문위원을 대상으로 국내에서는 17개 시도 및 이북5도 지역별로, 해외에서는 5개 지역회의별로 국내 및 해외지역회

한서영 예산분석관(syhan@assembly.go.kr, 6788-4639)

1) 코드: 일반회계 1031-300의 내역사업

의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제고하고, 여론을 수렴한 후 최종적으로 대통령에게 통일정책에 대한 사항을 건의한다.

하지만, 최근 3기(18기~20기) 동안의 국내지역회의 참석률을 보면 2020년에 일시적으로 상승하였다가 2022년에 다시 하락하였다. 2022년 지역별 국내지역회의 참석률은 43~61%로 평균 53%의 참석률을 보이고 있는데, 평균 과반을 조금 넘는 참석률을 제고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같이 60%대의 참석률이 코로나-19 전에도 유지되는 것은 민주평화통일 회의와 관련된 사업의 지속적인 문제였음에도 개선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국내·해외 출범 / 지역회의 참석률]

(단위: 명)

연도	국내 출범회의	국내 지역회의	해외 출범회의	해외 지역회의
2018 (18기)	-	9,525/15,753 (60.5%)	-	1,528/3,600 (42.4%)
2019 (19기)	미개최 ¹⁾	-	2,491/3,551 (70.1%)	-
2020 (19기)	-	10,256/15,251 (67.2%)	-	2,564/3,540 (72.4%)
2021 (20기)	12,613/16,100 (64.0%)	-	2,622/3,900 (67.2%)	-
2022 (20기)	-	8,326/15,697 (53.0%)	-	1,744/3,900 (45.9%)

주: 1)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제19기 전체회의는 개최되지 못함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수별로 자문위원의 참여율과 신규 및 연임비율 현황을 종합했을 때, 자문위원의 참여율이 저조함과 동시에, 이들의 연임비율은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각 기수별로 신규 대비 연임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20기에는 연임자 비율이 50% 가 넘어서면서, 신규위원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18기~20기 국내외 자문위원 신규 및 연임 비율]

(단위: 명)

구 분	18기		19기		20기	
	신규	연임	신규	연임	신규	연임
계	10,504 (62.8%)	6,226 (37.2%)	9,276 (58.4%)	6,606 (41.6%)	8,159 (47.8%)	8,897 (52.2%)
직능대표	8,558 (65.3%)	4,542 (34.7%)	7,210 (58.7%)	5,072 (41.3%)	6,380 (48.5%)	6,776 (51.5%)
재외동포대표	1,946 (53.6%)	1,684 (46.4%)	2,066 (57.4%)	1,534 (42.6%)	1,779 (45.6%)	2,121 (54.4%)

특히, 연임횟수 별 연임비율에 의하면, 현재 기수(20기)를 기준으로 3회 이상 연임을 한 위원의 비율이 전체 연임자 중 30%를 차지하고 있다²⁾. 이는 자문위원의 과반수가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임무를 이행하지 않음에도 연임을 통해 유지되고 있어 낮은 참석률의 원인 중 하나로 볼 수 있다.³⁾ 자문위원 참여가 전제되어야만이 자문회의의 운영 사업의 본 취지인 통일정책 자문 및 건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비율 참여율 확보가 중요하다.

물론, 자문위원의 책임에 따른 참여를 관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⁴⁾에 따라 법정회의에 1/3 이상 참여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2) [20기 연임횟수 별 위원 수]

연임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위원수	4,418명	3,812명	869명	1,016명	1,348명

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11조(임기) ①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5. 22.>

② 대통령은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지체 없이 제10조에 따라 보궐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3. 5. 22.>

제16조(퇴직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의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2015. 12. 15., 2023. 3. 28.>

1. 제10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 <2023. 3. 28.>

3.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지방의회의원의 직을 상실한 때

② 대통령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이 직무수행에 불성실하다고 인정된 때

2. 위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

3. 그 밖에 통일자문회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위원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있다. 하지만, 개최되는 회의에 따른 체계적 참여율 관리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의하면, 국내외 자문위원의 저조한 참여율에 대해서 자문위원 위촉 해제나 지역협의회를 통한 개별연락을 통해 참여를 활성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참여율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대안이 부재하므로 자발적인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온라인 참여 제도의 활성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⁴⁾. 해외 자문위원이 참여하는 지역회의의 경우 국내에서 개최되는데, 이동까지 수반되는 물리적 및 시간적 제약사항으로 인해 더욱 참석률이 저조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온라인을 병행하는 방식을 통해 해외자문위원 또한 적극적으로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수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5조의2(위원의 직무수행) ① 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직무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2. 해당 위원이 구성원인 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회, 운영위원회, 지역회의 또는 협의회 등의 회의에 3분의 1 이상 출석할 것
- ② 사무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외 지역 출신의 위원에 대해서는 현지 실정 등을 고려해 별도의 직무수행 기준을 정할 수 있다.

5)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2조의2항에 따라(2023.03.28. 신설) 영상회의를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의할 수 있다.

제22조의2(원격영상회의) ① 의장은 천재지변, 감염병의 확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통일자문회의의 회의를 정상적으로 개의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격영상회의(위원이 동영상과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복수의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되는 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식으로 개의할 수 있다.

- ② 원격영상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3. 28.]

국방위원회





국방부

I 결산 개요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1조 7,462억 5,900만원이며, 1조 8,861억 1,8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3.8%인 1조 7,689억 8,900만원을 수납하고 1,164억 7,7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6억 5,2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08,081	208,081	208,081	340,094	230,484	108,958	652	67.8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771,635	771,635	771,635	819,409	817,569	1,840	-	99.8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766,543	766,543	766,543	726,615	720,936	5,679	-	99.2
합계	1,746,259	1,746,259	1,746,259	1,886,118	1,768,989	116,477	652	93.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39조 6,995억 8,800만원이며, 이 중 95.0%인 37조 7,213억 1,900만원을 지출하고 1조 1,251억 1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8,531억 6,8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7,919,476	36,967,628	37,930,971	36,480,400	859,650	590,921	96.2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771,635	771,635	826,638	784,150	33,364	9,124	94.9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766,543	766,543	941,979	456,769	232,087	253,123	48.5
합계	39,457,654	38,505,806	39,699,588	37,721,319	1,125,101	853,168	95.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나. 기금 결산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정 수입계획액은 4조 7,634억 2,900만원이며, 4조 7,010억 62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9.2%인 4조 6,618억 6600만 원을 수납하고 391억 6,400만원을 미수납하였으며 3,200만원을 불납결손처리 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 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수입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당초	수정						
군인복지기금	1,020,296	1,020,296	1,020,296	942,950	915,870	27,048	32	97.1
군인연금기금	3,721,213	3,743,133	3,743,133	3,758,112	3,745,996	12,116	-	99.7
합계	4,741,509	4,763,429	4,763,429	4,701,062	4,661,866	39,164	32	99.2

자료: 국방부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의 수정 지출계획액은 4조 7,634억 2,900만원이며, 이 중 97.7%인 4조 6,618억 6,600만원을 지출하고 83억 1,700만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698억 9,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지출계획액		계획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당초	수정					
군인복지기금	1,020,296	1,020,296	1,026,441	915,870	8,317	69,895	89.2
군인연금기금	3,721,213	3,743,133	3,743,133	3,745,996	-	-	100.1
합계	4,741,509	4,763,429	4,769,574	4,661,866	8,317	69,895	97.7

자료: 국방부

다. 총수입·총지출 결산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은 예산 대비 1,564억 5,900만원(8.0%)이 감소한 1조 7,992억 2,8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148억원 5,400만원 (0.8%)이 감소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수입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 (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674,020	755,358	755,358	615,525	△139,833	△58,495
기금	1,140,062	1,200,329	1,200,329	1,183,703	△16,626	43,641
합계	1,814,085	1,955,687	1,955,687	1,799,228	△156,459	△14,854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2022회계연도 국방부 총지출은 추가경정예산 대비 7,803억 5,900만원(1.9%) 이 감소한 41조 3,335억 7,900만원으로, 전년도 결산에 비해서는 4조 9,585억원 1,900만원(13.6%)이 증가하였다.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총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2021 결산 (A)	2022				전년 대비 (C-A)
		예산액		결산 (C)	예산 대비 (C-B)	
		본예산	추경(B)			
예산	32,323,106	38,798,900	37,847,052	37,068,661	△778,391	4,745,555
기금	4,051,954	4,266,886	4,266,886	4,264,918	△1,968	212,964
합계	36,375,060	43,065,786	42,113,938	41,333,579	△780,359	4,958,51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라.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국방부의 자산은 265조 7,584억 6,800만원, 부채는 259조 6,928억 1,300만원으로 순자산은 6조 656억 5,500만원이다.

자산은 일반유형자산 251조 5,636억 3,000만원, 유동자산 12조 2,549억 4,400만원, 투자자산 1조 7,493억 6,7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7조 2,154억 4,400만원(2.8%) 증가하였는데, 이는 군수품 취득에 따른 선급금 및 소모성군수품 등 유동자산 8,014억원 증가, 시설자산과 전비품 취득 등 일반유형자산 6조 8,410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247조 5,706억 3,600만원, 기타비유동부채 5조 7,936억 6,200만원, 장기차입부채 3조 166억 6,800만원 등으로 구성되며, 전년도 대비 8조 4,729억 1,600만원(3.4%) 증가하였는데, 이는 주로 할인율 감소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등 장기충당부채의 8조 2,001억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국방부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 산	265,758,468	258,543,024	7,215,444	2.8
Ⅰ. 유동자산	12,254,944	11,453,510	801,434	7.0
Ⅱ. 투자자산	1,749,367	1,917,940	△168,573	△8.8
Ⅲ. 일반유형자산	251,563,630	244,722,614	6,841,016	2.8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188,498	446,880	△258,382	△57.8
Ⅵ. 기타비유동자산	2,029	2,080	△51	△2.5
부 채	259,692,812	251,219,896	8,472,916	3.4
Ⅰ. 유동부채	3,311,847	3,221,889	89,958	2.8
Ⅱ. 장기차입부채	3,016,667	2,957,766	58,901	2.0
Ⅲ. 장기충당부채	247,570,636	239,370,552	8,200,084	3.4
Ⅳ. 기타비유동부채	5,793,662	5,669,689	123,973	2.2
순 자 산	6,065,655	7,323,128	△1,257,473	△17.2
Ⅰ. 기본순자산	139,459,467	139,459,467	-	-
Ⅱ. 적립금 및 잉여금	△195,125,086	△195,647,300	522,214	0.3
Ⅲ. 순자산 조정	61,731,274	63,510,962	△1,779,687	△2.8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46조 8,526억 7,300만원으로 프로그램 총원가 53조 3,683억 3,400만원, 관리운영비 7,181억 1,300만원, 비배분비용 6,483억 3,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수익 1조 1,256억 1,100만원, 비배분수익 6조 7,556억 7,600만원, 비교환수익 등 8억 1,8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2조 5,603억 3,100만원(5.2%) 감소한 46조 8,534억 9,100만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재정운영결과는 전년도 대비 2조 5,584억 8,300만원(5.2%) 감소한 46조 8,526억 7,300만원이며, 이는 프로그램총원가 및 비배분수익 증가 등에 기인한다.

총 14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 총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급여정책 프로그램(15조 8,393억 784만원), 군인연금(연금정책) 프로그램(15조 4,354억 6,48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업무추진비 2,206억 4,645만원과 복리후생비 1,642억 909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비용은 감가상각비 110억 8,971만원과 이자비용 613억 3,407만원, 기타비용 5,739억 8,231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국방부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52,242,723	54,936,119	△2,693,396	△4.9
가. 프로그램 총원가	53,368,334	56,051,070	△2,682,736	△4.8
나. 프로그램 수익	1,125,611	1,114,952	10,660	1.0
II. 관리운영비	718,113	780,202	△62,089	△8.0
III. 비배분비용	648,331	356,210	292,121	82.0
IV. 비배분수익	6,755,676	6,658,709	96,967	1.5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46,853,491	49,413,822	△2,560,331	△5.2
VI. 비교환수익 등	818	2,666	△1,848	△69.3
VII. 재정운영결과(V-VI)	46,852,673	49,411,156	△2,558,483	△5.2

자료: 국방부

2022년도 기초순자산은 7조 3,231억 2,8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6조 656억 5,5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조 2,574억 7,300만원(17.2%) 감소하였다. 기말 순자산이 감소한 이유는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이 전년도 대비 7조 1,311억 4,100만원 감소한 것 등에 기인한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43조 8,826억 605만원으로 국고 수입, 무상이전수입 등 재원의 조달 45조 6,591억 3,915만원과 국고이전지출, 무상이전지출 등 재원의 이전 1조 7,765억 3,310만원으로 구성된다. 조정항목은 1조 7,125억 9,336만원으로 투자증권평가손실 578억 1,394만원, 자산재평가손실 1조 6,409억 3,729만원, 기타 순자산의 증가 3조 4,113억 4,459만원 등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국방부 순자산변동표 요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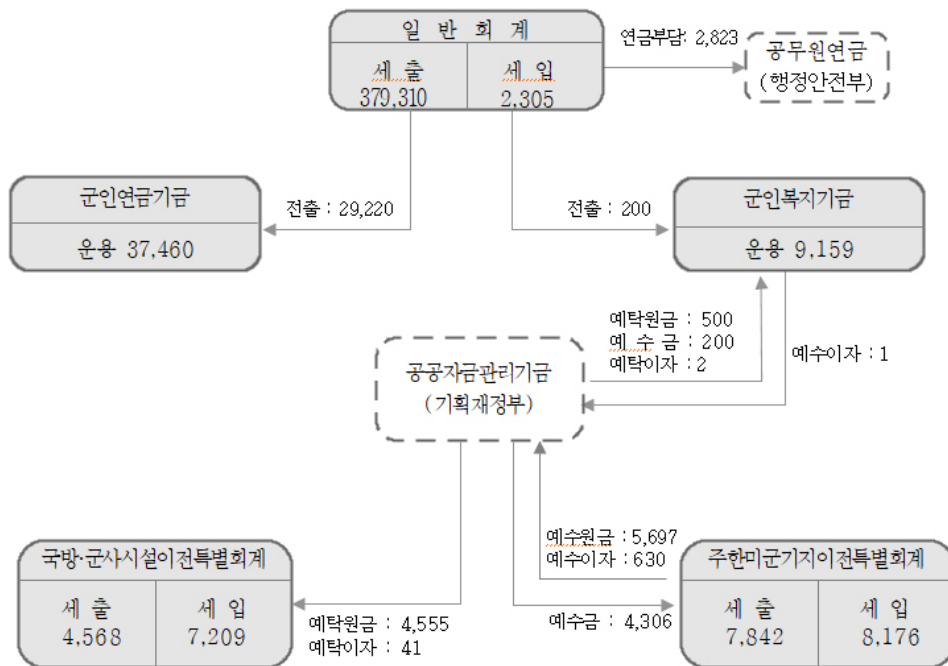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	2021 회계연도	전년도 대비 증감	
			금액	비율
I. 기초순자산	7,323,128	1,701,560	5,621,568	330.4
II. 재정운영결과	46,852,673	49,411,156	△2,558,483	△5.2
III. 재원의 조달 및 이전	43,882,606	46,188,989	△2,306,383	△5.0
IV. 조정항목	1,712,594	8,843,735	△7,131,141	△80.6
V. 기말순자산(I - II + III + IV)	6,065,655	7,323,128	△1,257,473	△17.2

자료: 국방부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간 재원이전 현황]

(단위 : 억원)



국방부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① **미등재건축물 양성화 사업**, ② **7사단 관사 신축 사업**, ③ **개인전투체계 사업** 등이 있다.

미등재건축물 양성화 사업은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건축물 보전부담금의 연내 실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209억원이 감액(530억원 → 321억원)되었고, 7사단 관사 신축 사업은 사업부지 내 문화재가 출토됨에 따라 대체부지 검토 및 총사업비 재설계 필요로 연내 공사비 집행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102억원이 감액(105억원 → 3억원)되었다. 개인전투체계 사업은 개인화기 조준경 등 3종의 과거 집행단가를 고려시 과다계상된 편성단가의 현실화 필요로 65억원이 감액(337억원 → 272억원)되었다¹⁾.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안경제작 사업**, ② **육군훈련소 생활관/식당 신축사업**, ③ **민간조리원 처우개선 사업** 등이 있다.

안경제작 사업은 렌즈·테 분리 발주에 따른 안경 단가 인상분과 전투용 저시력자 안경의 적정 소요 반영을 위하여 47억원이 증액(15억원 → 62억원)되었고, 육군훈련소 생활관/식당 신축사업은 장병의 인권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조기 개선을 위해 생활관 3동, 취사식당 2동 신축을 위한 33억원이 증액(0원 → 33억원)되었다. 민간조리원 처우개선 사업은 실질적인 군 급식 품질향상을 위해 우수한 민간조리원의 지원을 제고하기 위해 기본급 및 교통보조비 등 처우개선을 위하여 26억원이 증액(955억원 → 981억원)되었다²⁾.

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2)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국회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이 채택된 사업**으로 ① 병 내일준비지원금 사업, ② 군 주거지원 사업 등이 있다. 병 내일준비지원금 사업은 “병 내일준비지원사업의 소득역진 현상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군 주거지원 사업은 “자채수입 확보 등 기금 재정 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이 부대의견으로 채택되었다³⁾.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업으로 ①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사업, ② 예비전력유지 사업, ③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사업 등이 있다. 군사시설 건설 및 운영 사업은 설계 및 착공 지연, 자재수급 제한에 따른 사업 연부액 조정, 시설유지관리 공사비 감액 등 연내 집행이 어려운 3,968억원이 감액(3조 5,581억원 → 3조 1,613억원)되었고, 예비전력유지 사업은 코로나 19로 인한 예비군훈련의 훈련일수 축소로 급식비, 보상비 등 불용이 예상되는 676억원이 감액(1,774억원 → 1,098억원)되었다.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 사업은 장기간 협정공백에 따른 신규 시설사업 미추진 등 불용이 예상되는 1,936억원이 감액(1조 2,472억원 → 1조 536억원)되었다⁴⁾.

3)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4)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2022년도 국방부는 전방위 국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대응역량을 확충하고, 미래세대에 부합하는 장병복무여건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고 사업을 추진하였다.

스마트국방혁신, 과학화 훈련체계 확대 등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국방 역량을 구축하는 한편, 기본급식비 인상, 병봉급 인상 및 병 내일준비지원금 지원 등 건강한 병영문화 정착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국방부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단계적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해 다양한 문제점과 우려 사항이 발생하고 있다. 병 의무복무기간의 단축,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초급간부 지원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급격한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해 초급간부 지원률 하락 심화가 우려되고 있고, 인상된 봉급을 받기 위한 지연 입대로 병력충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둘째, 군 전문인력 육성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과학기술전문사관의 경우 장기복무자가 없고, 전역 이후 타 분야에 종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군 특성화고에서 기술전문인력으로 양성한 인원의 임기제부사관 임관률이 57%까지 하락하고 있으므로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셋째,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과 관련하여, 광주 군 공항 이전 시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우려⁵⁾가 있음에도 연약지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연약지반공사

5) 동 영외탄약고는 전시 광주 군 공항 지원을 위한 탄약저장시설로, 광주 군 공항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할 필요가 있어 원 사업은 현 광주 군공항 부지 옆으로 이전하려고 하였으나,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해당 탄약고를 조기에 철거하고 이전한 군 공항에 동일 예산을 투입하여 탄약고를 재건설하는 과정에서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를 한 예정부지로의 이전계획이 불투명하여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이전계획 중단을 대비하여, 매몰비용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넷째,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41.27%에 불과하였는데, 만기 후 원리금에 대한 매칭지원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사업구조로 전역 후 즉시 해지 하지 않는 경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구조와 적금 가입 시 계좌를 여러 개 개설해야 하는 불편 및 비대면 해지 불가능 등의 편의성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국방부는 사업구조 단순화, 가입 및 해지 체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1

단계적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문제점 및 우려 사항

군인 인건비 사업¹⁾은 장병의 봉급 및 수당을 지급하는 단위사업이다. 동 사업은 장교인건비, 부사관인건비, 병 인건비의 세부사업으로 나뉘어져 있다. 2022년도 각 세부사업의 집행액은 장교 인건비 사업 4조 5,497억 1,100만원, 부사관 인건비 사업 6조 3,163억원, 병 인건비 사업 2조 2,523억 6,600만원으로 총 13조 1,183억 7,7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년도 군인 인건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	예·결산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액
			예산액		결산	
			본예산	추경		
[1101]	군인 인건비	12,801,511	13,203,177	13,186,519	13,118,377	14,163,253
	[151] 장교 인건비	4,483,634	4,552,164	4,545,279	4,549,711	4,636,212
	[152] 부사관 인건비	6,052,546	6,318,581	6,308,808	6,316,300	6,674,580
	[153] 병 인건비	2,265,331	2,332,432	2,332,432	2,252,366	2,852,461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최근 10년간 군인 인건비 지출액 현황을 보면 2013년 8조 4,364억 8,300만 원에서 2022년 13조 1,183억 7,700만원으로 약 55.5%가 증가하였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01

[2013~2022년도 군인인건비 지출액 현황]

(단위: 백만원)

2013	2014	2015	2016	2017
8,436,483	8,735,451	9,271,415	9,733,593	10,222,828
2018	2019	2020	2021	2022
11,292,359	11,458,522	12,208,135	12,801,511	13,118,3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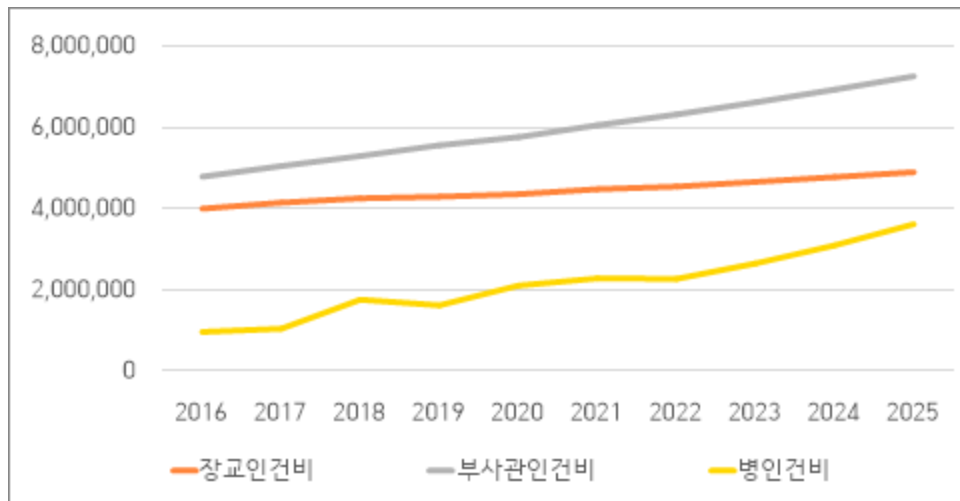
자료: 국방부

군인 인건비는 모든 세부사업의 지출액이 증가하였고, 최근 10년간 지출액 추이를 보면 가장 상승률이 높은 부문은 병 인건비 사업으로 2013년 약 6,298억원에서 2022년에는 약 2조 2,523억원까지 증가하여 약 3.7배로 증가하였다.

[2013~2022년도 군인 인건비 지출액(결산) 추이]

(단위: 백만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장교 인건비	3,641,628	3,705,273	3,865,598	4,004,340	4,152,885
부사관 인건비	4,164,975	4,318,272	4,558,853	4,784,039	5,044,735
병 인건비	629,880	711,906	846,964	945,214	1,025,208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장교 인건비	4,257,804	4,299,462	4,361,780	4,483,634	4,549,711
부사관 인건비	5,293,316	5,557,275	5,758,464	6,052,546	6,316,300
병 인건비	1,741,239	1,601,785	2,087,891	2,265,331	2,252,366



주: 2023년 이후는 연평균 증가율을 이용한 추세치임.

자료: d-Brain 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국방부는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 병 봉급을 인상할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2022년 기준 67.6만원인 병사 봉급(병장 기준)을 2025년에는 150만원까지 인상할 예정이다.

이러한 계획에 따른 병 봉급 인상률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12.5%, 2022년에는 11.1%이나 2023년부터는 병장 기준으로 47.9% 2024년 25%, 2025년 20%로 급격하게 증가한다. 뿐만 아니라, 병 내일준비지원 사업²⁾을 통해 월 최대 약 55만원의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여 병장 기준 월 205만원 수준(봉급 150+자산형성프로그램 55)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21~2025년도 전년대비 병봉급 인상률]

(단위: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전년대비 인상률	병장	12.5	11.1	47.9	25	20
	상병			31.1	미정	
	일병			23.2		
	이병			17.6		

자료: 국방부

[2023~2025년 병사(병장기준) 봉급 및 내일준비지원금 지급 계획]

(단위: 만원)

구 분	병(병장기준) 봉급 및 내일준비지원금(최대)					
	2023년 (130만원)		2024년 (165만원)		2025년 (205만원)	
	봉급	내일준비 지원금	봉급	내일준비 지원금	봉급	내일준비 지원금
병사 (병장기준)	100	30	125	40	150	55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 병역의무 이행기간 중 급여를 적립함으로써 전역 후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역사업으로 1% 이자지원 사업과 매칭지원금(또는 사회복귀준비금)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1-1.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초급간부 지원 저조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가. 현 황

장교 인건비 사업³⁾ 및 부사관 인건비 사업⁴⁾은 각각 장교 및 부사관의 기본급 및 제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장교 인건비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4조 5,608억 7,300만원 중 4조 5,497억 1,100만원을 집행하고 111억 6,200만원을 불용하였고, 부사관 인건비 사업의 예산현액 6조 3,212억 5,100만원 중 6조 3,163억원을 집행하고 49억 5,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장교 및 부사관 인건비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장교 인건비	4,552,164	4,545,279	-	15,594	4,560,873	4,549,711	-	11,162	4,636,212
부사관 인건비	6,318,581	6,308,808	-	12,443	6,321,251	6,316,300	-	4,951	6,674,580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2025년부터 병사(병장)에게 월 205만원의 봉급 및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상회하여 초급간부 층원의 어려움이 심화될 수 있으므로, 국방부는 병사와 초급간부 보수가 적정 수준의 차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군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방 분야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초임 장교인 소위로 임용되는 학사사관후보생 및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의 경우 최근 5개년 간 경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학사사관후보생의 경우 2018

3) 코드: 일반회계 1101-151

4) 코드: 일반회계 1101-152

년 경쟁률이 4:1이었으나 2022년 2.6:1의 경쟁률로, 학군사관후보생의 경우 3.3:1에서 2.4:1의 경쟁률까지 하락하였다. 부사관 후보생 역시 2018년 4.5:1에서 2022년에는 3.2:1까지 경쟁률이 하락하였다.

[최근 5년간 장교 및 부사관 후보생 선발 경쟁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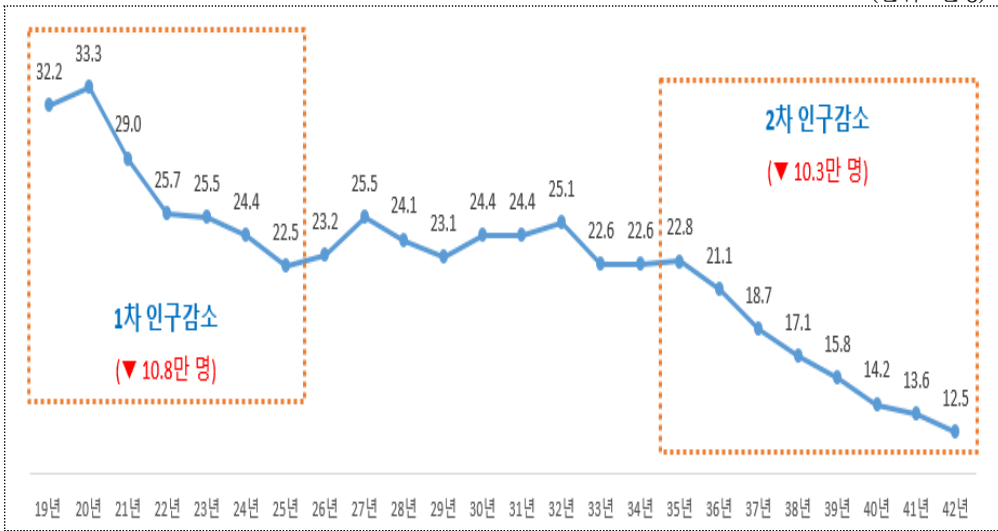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학 사	4.0 : 1	3.3 : 1	2.7 : 1	2.6 : 1	2.6 : 1
학 군	3.3 : 1	3.1 : 1	2.7 : 1	2.6 : 1	2.4 : 1
부사관	4.5 : 1	4.4 : 1	3.7 : 1	3.5 : 1	3.2 : 1

자료: 국방부

이러한 경쟁률의 하락은 병역자원의 감소와 더불어 초급간부로 임관하는 것의 장점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2020년의 20세 남성인구는 33.3만명에 달하였으나, 2022년에는 25.7만명으로 23%가 감소하였다. 2037년부터는 20만명에도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병역자원의 감소로 인한 초급간부 임용이 시간이 지날수록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0세 남성인구 전망]

(단위: 만명)



자료: 병무청

또한, 병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꾸준히 단축되어 육군 및 해병대의 경우 18개월만 복무하면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으나, 초급간부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이 10년 이상 변동 없이 유지⁵⁾되어 의무복무기간의 차이가 크게 증가하였다.

[병사 및 간부의 의무복무기간 비교]

구 분	병	학군장교	학사장교	부사관
육군	21개월	2년 4개월	3년	4년
해병대	→ 18개월	2년		
해군	23개월 → 20개월			
공군	24개월 → 21개월	3년		

주: 가장 최근의 병역기간 단축 시행(2018년) 직전 기준 비교

자료: 국방부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에 더해 병 봉급 인상 계획에 따라 보수측면에서도 병사와 초급간부와의 격차가 크게 감소할 예정으로 간부경쟁률 하락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한국국방연구원(KIDA)의 보고서⁶⁾ 등에 따르면, 지난 15년 동안 초급간부의 ‘실질적인 보상수준’은 크게 하락하였고, 병사 복무기간 단축과 병사 봉급 인상으로 인해 초급간부 의무복무기간의 암묵적 비용⁸⁾이 빠르게 증가한 것을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병 봉급 인상 시 초급간부 지원 의향 변화에 대해 설문한 결과⁹⁾에 따르면, 현재 장교 지원 희망자 중 41.5%, 부사관 지원 희망자 중 23.5%가 병 봉급이 205만원

5) 뿐만 아니라, 병사는 훈련기간이 의무기간에 포함되어 산정되지만 「군인사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장교·준사관 및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은 임용된 날부터 기산하도록 되어 있어, 장교 등은 6~17주의 후보생 교육기간이 복무기간으로 산정되지 않으므로 실제 격차는 더 크게 벌어진다.

6) 민광기,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KIDA, 2022. 12.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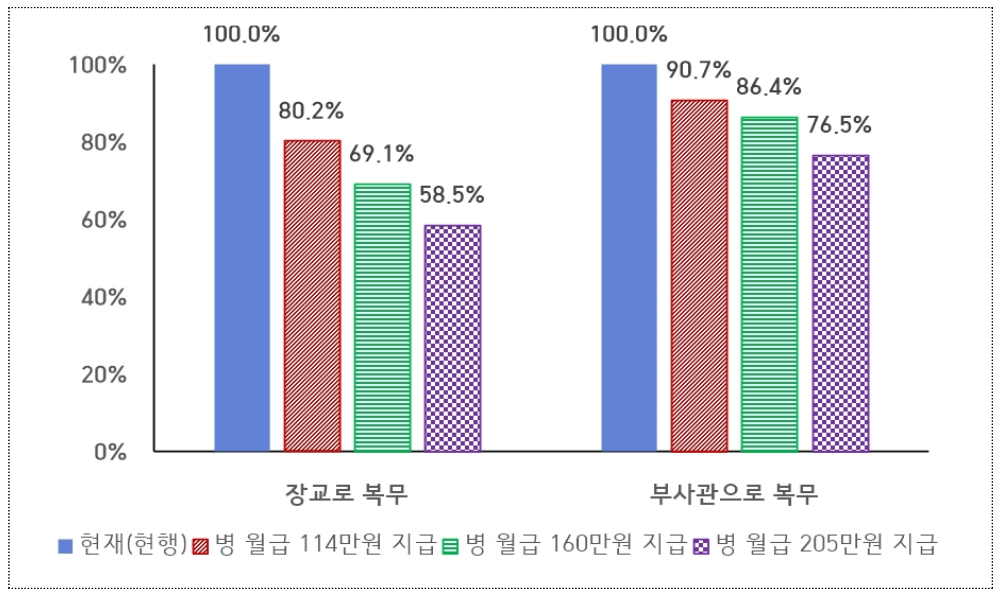
7) 권현진, 「군 인력획득 관점에서의 초급간부 보상수준 연구」, KIDA, 2022. 11.

8) 즉, 단기복무부사관 의무복무기간(48개월)에 대비하여 “병 복무기간(18개월) 중 보수+민간업체 취업시 받을 수 있는 보수(30개월)”가 증가함으로서 생기는 기회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9)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p.9, KIDA, 2022. 12. 20.

이 되면 지원하지 않겠다는 결과가 나타났다.¹⁰⁾ 2025년이 되면 장교 및 부사관 지원 희망자가 크게 줄어들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병 급여 인상 시, 초급간부 지원 의사 변화]



자료: 「병 급여 인상이 초급간부 지원 의사에 미치는 영향」 p.9, KIDA, 2022.12.20.

이러한 상황에서 2025년까지 계획된 병 봉급 인상 계획이 그대로 실현된다면, 초급간부 임용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계획에 따르면 2025년에는 병사(병장)이 월 205만원을 봉급 및 지원금을 받을 예정으로, 현재의 초급간부 기본급 상승률을 고려하면 병사의 봉급 및 지원금이 초급간부의 기본급을 상회할 것이 예상되고 있음에도 국방부는 이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즉, 전반적인 군인 인건비 체계에 대한 고민 없이 병 봉급 인상 계획만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10) 설문결과 각각 58.5%, 76.5%만이 여전히 부사관을 지원하겠다고 하였으므로, 장교복무 희망자 중 41.5%, 부사관복무 희망자 중 23.5%는 지원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병사 수령액 및 초급간부 기본급 비교(월 기준)]

(단위: 천원)

구분		2022	2023	2024	2025
병사 수령액	병사 봉급 (병장 기준)	676	1,000	1,250	1,500
	내일준비지원금	141	300	400	550
	소계	817	1,300	1,650	2,050
하사 기본급	하사 1호봉	1,705	1,771	미정	
소위 기본급	소위 1호봉	1,756	1,785		

자료: 국방부

이와 같이 초급간부와 병사의 보수에 큰 차이가 없게 되는 경우 병사에 비해 학사장교의 경우 18개월, 부사관의 경우 30개월을 추가로 의무복무하여야 하는¹¹⁾ 초급간부의 지원율이 하락할 수 있고, 간부 충원의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국방부는 “2023~2027 국방중기계획”에서 상비병력 50만 명을 규모를 유지하면서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국방인력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작전·전투분야를 중심으로 숙련된 간부 1,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국방인력 정원 계획]

(단위: 만명)

구분	2022년 정원	2027년 정원	증 감
현역	50	50	-
간부	20.1	20.2	0.1
병사	29.9	29.8	△0.1
군무원	4.5	4.7	0.2

자료: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따뜻한 병영” - 「'23~'27 국방중기계획」 향후 5년간 331조 4천억 투입-, 국방부 보도자료(2022.12.28.)

그러나, 이와 같이 초급간부로 임용할 유인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군 간부 중심의 군 구조 개편계획은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11) 육군으로 입대한 병사 기준이다.

따라서, 초급간부 충원을 위해 병 봉급과 부사관 보수 간의 적정 수준의 차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러한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군인에 대한 전반적인 인건비 조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방 분야의 대표적 경직성 경비인 인건비의 급격한 인상을 지양할 필요가 있다.

1-2. 단계적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한 병력충원 불균형 문제

가. 현 황

병 인건비 사업¹²⁾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봉급 및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액 2조 3,324억 3,200만원 중 2조 2,523억 6,600만원을 집행하고 520억 2,9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병 인건비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병 인건비	2,332,432	2,332,432	-	2,304,395	2,252,366	97.7	-	52,029	2,852,461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단계적 병 봉급 인상 계획의 영향으로 연말에는 입대를 하지 않고, 연초로 입대를 지연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는데, 매해 연도 말에는 이와 같이 병력을 충원하지 못하는 문제가 반복될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적으로는 2024년도 말까지 연 단위 병력충원에도 어려움을 보일 것으로 보이므로 국방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코드: 일반회계 1101-153

국방부는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지급하기 위하여,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연 단위의 단계적인 병 봉급 인상 계획을 발표하였다. 직접적인 병 봉급 인상뿐만 아니라, 자산형성을 위한 매월의 지원금 지급 계획까지 발표하면서 2025년에는 병장 기준 월 205만원까지 지원하도록 하였다.

국방부의 병 봉급 및 자산형성프로그램 인상 계획에 따르면, 2022년에 병장으로 복무하면 월 81.7만원의 실질 소득을 얻게 되지만, 2023년에는 월 130만원, 2025년에는 205만원까지 증가한 수입을 얻게 된다.

[병 봉급 및 자산형성프로그램 인상 계획]

□ 추진배경: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병역의무 이행자에게 합리적 수준의 보상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요구와 나아가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병 봉급 인상을 추진

□ 주요내용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1.7만원	130만원	165만원	205만원
병 봉급 (병장 기준)	67.6만원	100만원	125만원	150만원
자산형성프로그램 (월 최대 지원금)	14.1만원	30만원	40만원	55만원

□ 시행일: 2023년 1월 1일

자료: 국방부

이와 같이 입대 대상인 병역의무자들은 지금 당장 입대하는 것에 비해 늦게 입대할수록 기대소득이 증가하게 된다. 만 18세 이상 남성으로서 병역의무 대상자들은 학업 등의 사유로 입대를 지연하거나 해군, 해병, 공군 등의 모집병 지원을 통해 입대 시기를 어느 정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병 봉급 인상 계획으로 인해 군의 병력 수급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실제, 병 봉급 인상 계획이 발표된 이후¹³⁾ 입영률 현황을 보면, 2022년 4/4분기에 급격한 입영률 하락(10월 72.8%, 11월 46%, 12월 67.3%)을 보여, 월 평균 '1만 676명'만이 입영하였다. 반면, 2023년 1/4분기에는 입영률이 회복(1월 95.2%, 2월 100.7%, 3월 100.4%)되어 월 평균 '1만 8,431명'이 입영하였다.

13) 정부는 2022년 8월 30일 병 봉급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국방예산안을 발표하였다.

이와 같이 불균형한 인력충원의 문제는 연말에는 군의 인력부족 문제를 가져와 병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주의 깊은 관리가 필요하다.

연 단위 입영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2022년도 입영률은 2020년 95.8%, 2021년 96.6%에 비해 약 10%가 감소한 86.8%에 불과하였다. 봉급 인상 계획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 병역의무자들이 입대 시기를 조정하려는 유인이 꾸준히 발생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2022년도 입영률 현황]

(단위: 명, %)

구분	2023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계획	21,079	17,312	17,728	20,981	20,014	-	-	-	-	-	-	-	
입영	20,065	17,428	17,861	21,062	19,616	-	-	-	-	-	-	-	
입영률	95.2	100.7	100.8	100.4	98.0	-	-	-	-	-	-	-	
구분	2022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계획	17,615	19,478	17,236	18,536	20,079	16,779	16,260	21,974	15,575	19,554	15,842	15,605	214,533
입영	16,819	17,764	15,528	18,718	19,844	15,800	15,462	20,077	14,162	14,233	7,295	10,499	186,201
입영률	95.5	91.2	90.1	101.0	98.8	94.2	95.1	91.4	90.9	72.8	46.0	67.3	86.8
월별	2021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계획	20,158	17,954	21,193	20,713	22,212	20,168	17,377	20,660	13,682	15,958	17,199	16,123	223,397
입영	19,955	17,383	20,839	20,155	21,924	19,608	17,429	20,926	13,720	15,570	15,843	12,402	215,754
입영률	99.0	96.8	98.3	97.3	98.7	97.2	100.3	101.3	100.3	97.6	92.1	76.9	96.6
월별	2020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계획	19,960	19,129	26,321	17,965	19,747	24,231	19,175	22,903	16,200	20,010	19,562	21,309	246,512
입영	19,490	18,770	26,358	17,928	19,462	23,286	18,893	22,700	15,688	18,637	17,220	17,714	236,146
입영률	97.6	98.1	100.1	99.8	98.6	96.1	98.5	99.1	96.8	93.1	88.0	83.1	95.8

주: 입영률이란 군의 병력 충원 계획 대비 입영 인원 비율을 뜻함

자료: 국방부

2025년까지 매년 단계적으로 병봉급이 인상될 것임을 고려하면, ① 연중에는 매년 4/4분기에 입영률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여, 4/4분기마다 군 병력운영에 차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다 긴 시계에서는 ② 인상계획이 종료되는 2025년까지는 연 단위의 충원율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 2024년도 말까지는 지속적으로 병력충원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러한 시기별 병력충원 불균형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보다 완만한 병 봉급 인상 계획을 검토하고, 군 간부 중심의 구조개편과 연계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III

개별 사업 분석

1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 개선 필요

가. 현 황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¹⁾은 병사의 군 복무 간 정보화 단절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대학 등의 인터넷 강좌 수강과 사이버학습 등이 가능한 인터넷 PC를 전국 군 부대에 구축·운영하는 것으로 정보통신기반체계구축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국방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액 109억 3,200만원 중 104억 2,500만원을 집행하고 3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사이버 지식정보방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정보통신기반 체계구축	276,512	276,512	1,321	8,144	5,463	291,441	284,675	3,826	2,940		263,143
사이버 지식정보방	10,932	10,932	-	△504	-	10,428	10,425	-	3		11,00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131-301의 내역사업

첫째, 2019년부터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이 시범운영²⁾됨에 따라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률이 크게 감소하였으므로, GP 근무자나 해상 근무자 등 스마트폰 사용이 불가능한 장병들을 주 대상으로 하여 사업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은 전군에 “인터넷 PC방”을 구축 운영하려는 것으로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을 위한 PC 등의 임차료, 유지보수비 및 소모품비 등으로 구성 되어 있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은 2018년까지는 가동률이 87.9%에 이르는 등 운영이 활성화되었으나, 2019년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허용에 따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2022년에는 20%대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가동률은 1일 1회 이상 사용이 있는 경우를 파악한 것으로, “운영 시간”에 대한 통계는 없으나 저조할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PC 가동률 현황]

(단위: 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수량	50,700	50,700	40,276	40,276	40,276
가동률	87.9%	44.5%	42.7	36%	27%

주: 가동률(1일 1회 이상 사용실적)

자료: 국방부

이러한 이용률 감소에 따라 사업의 효율화를 도모하라는 지적이 있어 왔고, 2021년도 결산심사 결과 “기존 사이버지식정보방 이용자가 대학 원격강좌 등 온라인 교육플랫폼에 접속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국회의 시정 요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국방부는 나라사랑포털, 대학 원격강좌, 개인결제 자격증 학습의 경우에는 사이버지식정보방의 활용 비중이 높으며, 과제물 작성 및 출력, 코딩 실습 등의 휴대전화로 대체가 불가능한 부분이 존재하는 것을 근거로 사업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국방부는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로 사이버지식정보방의 PC 운영 대수를 2026년 2만 700대까지 감축하는 사업 축소계획을 마련하였다.

2) 평일 일과 후(18:00 ~ 21:00) 및 휴일(08:30 ~ 21:00) 휴대전화 소지·사용, 2023년 기준으로는 일부 부대에서 “아침점호 이후부터 21시”로 소지시간을 확대하는 시범운영 중에 있다.

[국방부 사이버지식정보방 사업 중기계획]

(단위: 대)

구 분	2023	2024~2025	2026
PC	25,181	25,791	20,700

자료: 국방부

다만, 사이버지식정보방의 이용률이 떨어지는 것은 휴대전화 허용으로 생긴 결과이므로, 장병이 실제 휴대전화가 사용 가능한지에 대한 각 부대 여건별 차등적인 운영 효율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GP에서 근무하는 장병의 경우³⁾에는 여전히 휴대전화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사이버지식정보방의 필요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GP부대 위주로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재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해상의 경우 휴대전화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해상에서 근무하는 전투함 및 군수지원함 승조원 등의 장병들을 위한 사이버지식정보방을 운영할 필요⁴⁾가 있다.

이와 같이 근무지 및 근무 형태별 차등 없이 온라인 학습 등이 가능하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하여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장병 간의 형평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둘째, 하모니카 OS를 사용하는 PC의 경우 민간업체의 학습 동영상, 대학 원격강의 등이 작동하지 않는 사례가 많으므로 지속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은 현재, Windows를 운영체제로 탑재한 PC와 하모니카를 운영체제로 탑재한 PC가 운용되고 있다. 하모니카는 정부 지원을 통해 개발된 개방형 OS로 리눅스 기반의 운영체제이다.

3) 일반적으로 부대별 3~6개월 단위로 GP지역에 배치되는 순환근무를 한다.

4) 비용의 문제를 고려하여 통신이 가능한 연근해의 경우에는 제외하고, 통신이 불가능한 지역에서만 제한적으로 위성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이버지식정보망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이버지식정보방 운영체제별 PC 현황]

(단위: 대)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Windows	50,700	50,700	27,776	27,776	27,776
하모니카	-	-	12,500	12,500	12,500

자료: 국방부

다만, 대부분의 상용 프로그램이 Windows 운영체제를 사용하는 PC기준으로 제작되고, 리눅스를 운영체제로 사용하는 PC를 지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보니, 각종 자격증 취득 강의, 공무원임용시험 준비, 외국어 강의, 대학 원격강의 등이 하모니카 OS가 설치된 PC에서는 재생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지식정보방이 장병들의 원격강의 수강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활용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모니카 OS가 설치된 PC에서 민간 교육 동영상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동영상 서비스 제공업체가 DRM⁵⁾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제공해야 한다. 이는 결국 해당 업체의 비용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이러한 개선이 있도록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민간 교육업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국방부의 하모니카 OS의 호환성을 높여 교육 동영상 등을 플레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동 사업을 효율화하는 과정에서 하모니카 OS 기반의 PC를 중심으로 감축 계획을 세우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자료 유출을 막는 보안프로그램의 일종이다.

가. 현 황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 사업¹⁾은 군인의 전사, 순직 등 사망 및 전공상·공상 등 상이에 관한 중앙·보통심사위원회 운영 및 유가족 상담·장기미인수영현 관리 지원을 위한 것으로 인사정책지원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국방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3억 2,800만원 중 3억 1,000만원을 집행하고 1,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중앙전공사상심사 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인사정책지원	14,409	14,409	-	523	14,932	14,676	96	161
병영정책지원	2,961	2,961	-	△367	2,594	2,570	-	24
중앙전공사상 심사 지원	338	338	-	10	328	310	-	1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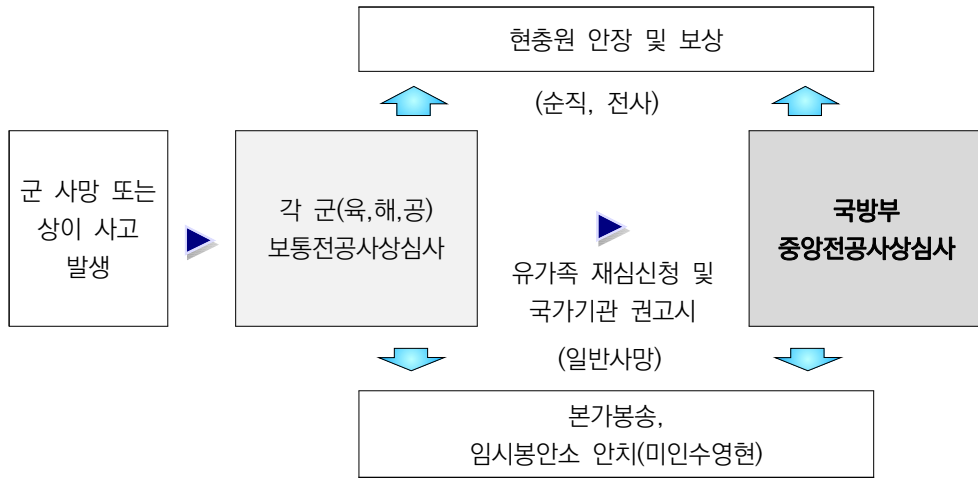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고, 최대 15개월 정도의 심사 대기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심사 기간을 설정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는 전공사상구분에 관한 사항을 심사 및 결정하는 위원회로서 각 군의 전공사상 심사결과에 유족 등이 불복하는 경우 재심사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9-306의 내역사업

[전공사상 심사 관련 제도 절차]



자료: 국방부

「군인사법」 제54조의3제1항2)은 전사자 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각 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두어 1차 심사를 하도록 하였고, 동법 제54조의4제1항3)은 각군의 보통전공사상 심사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 하거나, 군사망진상규명위 등의 국가기관의 심사권고 결정이 있는 경우 등에 중앙 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 전공사상 심사 처리 현황을 보면 2021년의 경우 처리건수는 218건, 평균 처리기간은 267일이었고, 2022년의 경우에는 372건, 평균 처리기간은 348일이다. 2021년에 비해 2022년의 경우 처리 건수와 평균 처리기간이 증가하였다.

2) 「군인사법」

제54조의3(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3) 「군인사법」

제54조의4(전공사상 재심사 및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①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또는 당사자의 「민법」상 재산상속인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권한을 가지는 타 국가기관이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다른 권고 또는 결정을 한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전사자등의 사망 또는 상이에 관한 재심사를 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둔다.

[중앙 전공사상 심사 처리 현황]

구 분	2021년	2022년
처리건수	218건	372건
평균 처리기간	267일	348일

주: '각 연도에 심사 처리된 건'의 접수일부터 처리일까지 걸린 기간의 평균
자료: 국방부

현재, 국방부는 2023년 4월 현재 심사대기 건수가 286건에 달하고 있고, 월 평균 24건 이상의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이 경우 산술적으로는 12개월의 심사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특히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당사자 등이 직접 신청한 것뿐만 아니라, 타 국가기관의 결정에 따라서도 심사수요가 추가로 발생하는데, 군사망진상규명위원회에서 300건 이상이 조사진행 중에 있어 추가적인 심사 수요가 발생할 것을 감안하면, 15개월의 심사기간이 소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심사지연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사망·상이 장병 등에 대한 예우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 심사대기 기간 관련 현황]

- 현재 심사대기 건수 286건 / 월 24건 심사 시: 약 12개월 소요
* 심사대기(286건) ÷ 월단위 심사가능 건(24건/월) ≃ 12개월
- 군사망진상규명위 조사진행 중인 328건 중 심사권고 예정
※ 심사권고 예정 건을 고려하면, 국방부 추산 최대 15개월 예상

자료: 국방부

이러한 문제의 원인 중 하나는 「군인사법」이나 국방부의 「전공사상자 처리 훈령」 등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 법령에 심사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심사 기간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의 의사상자심사의 경우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⁴⁾ 신청일로부터 60일,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30일을 규정하여 최대

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인정신청 등) ① 이 법의 적용을 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소지

90일의 심사 기간과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7조는 법정 민원의 처리 기간을 설정하고 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를 고려⁵⁾하면, 현재와 같이 심사 기간에 대한 기준 없이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법정처리기간 설정 관련 규정]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17조(법정민원의 처리기간 설정·공표)** ① 행정기관의 장은 법정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법정민원의 신청이 접수된 때부터 처리가 완료될 때까지 소요되는 처리기간을 법정민원의 종류별로 미리 정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할 때에는 접수기관·경유기관·협의기관(다른 기관과 사전협의를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및 처분기관 등 각 기관별로 처리기간을 구분하여 정하여야 한다.
-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리기간을 민원편람에 수록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따라서,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심사 기간을 신설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규정된 심사 기간 내에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심사 기간 단축 방안을 마련하여 국방부 차원에서 군 복무 중 사망·상이자자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는 구조행위자를 관할하는 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할 구역 안에서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사상자 인정 여부의 결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 의사상자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구조행위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5)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상 법정민원은 제2조에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데, 당해 전공사상심사 신청은 특정한 사실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확인 또는 증명을 신청하는 민원으로 볼 수 있다.

형사처벌 등 결격사유로 인한 의무복무기간 중 제적자에 대한 단기복무장려금 환수 필요

가. 현 황

단기복무장려금 사업¹⁾은 병 복무기간 단축으로 단기복무 장교 지원을 하락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학군 및 학사 사관후보생을 대상으로 장려금을 지급하여 우수인력을 획득하기 위한 것으로 간부확보장려 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국방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217억 7,900만원 중 217억 7,300만원을 집행하고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단기복무장려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간부확보 장려사업	71,725	71,725	-	△60	71,665	70,247	-	1,418	83,136
단기복무 장려금	22,998	22,998	-	△1,219	21,779	21,773	-	6	34,74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2023년 기준으로 단기복무 장려금은 학군(3학년) 및 학사 사관후보생(4학년)을 대상으로 일시급으로 9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제외되고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9-301의 내역사업

[단기복무 장려금 제도 현황]

구 분	학군 사관후보생(ROTC)	학사 사관후보생
지급대상	학군 장교후보생 3학년	학사 예비장교후보생 4학년
의무복무기간	육군 2년 4개월 해군·해병 2년 공군 3년	3년
지급단가	600만원(2022년), 900만원(2023년)	
지급기간	선발 후 1회	
기타	가산복무 지원금 수령 시 미지급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초임 장교 지원율의 지속적인 하락에 따라, 2021회계연도에 대한 국회 결산심사에서는 이러한 간부 수급 어려움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시정요구를 의결하였고, 국방부는 단기복무 장려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단기복무장려금의 지급단가는 2011~2017년에는 평가등급에 따라 15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나누어서 지급했으나, 2018년부터는 균등지급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매년 꾸준히 인상되어 2023년에는 지급단가가 900만원까지 인상되었으며, 추후에도 현재의 2배 수준으로 인상하는 방향²⁾을 검토 중이다.

[단기복무장려금 지급단가 변동현황]

(단위: 만원)

2011~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등급(300), 2등급(150)	180	200	300	400	600	900

주: 2017년까지 평가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하였으나 2018년부터 균등지급 방식으로 변경

자료: 국방부

2) “전투형 강군” 군 체질 변혁을 위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국방부 보도자료(2023. 3. 3.)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장교 임관 이후 의무복무기간 중 징계, 형사처벌 등으로 인한 제적 시 단기 복무장려금을 지급받은 장교에 대한 환수 관련 규정이 있음에도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환수할 필요가 있으므로 장교 제적 시 관련 반납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임관 이전에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에 해당하여 임관이 되지 않는 경우 후보생시절에 지급한 단기복무장려금을 반납받고 있다. 단기복무 장려금은 초임장교의 복무를 유인하기 위한 제도로 의무복무기간 동안 복무를 하는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장려금이므로 이와 같이 임관을 하지 않은 경우에 반납을 받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것이다.

다만, 임관 이후 질병 등의 당사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조기 전역된 초임장교의 경우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한 것이므로 반납받지 않는 것이 타당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제적된 자에 대해서는 장려금을 회수할 필요성이 있다.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는 장려금의 환수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동조제1호),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등 형사 처벌을 받아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동조제3호) 등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는 동 규정에 따라 임관 이후 단기복무장려금을 환수한 사례가 없으며, 환수절차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

[군 장려금 반납 관련 규정]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군 장려금의 반납)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군 장려금을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1.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2.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법 제6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군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 3. (생략)
4. ~ 6. (생략)
- 6의2.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 나. (생략)
7. ~ 8. (생략)

제40조(제적) ①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적된다.

1. ~ 2. (생략)
3. 파면되었을 때
4. 제10조제2항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 다만, 제10조제2항 제6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 가. ~ 다. (생략)
5. 제37조제2항에 따라 제적결의가 있을 때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년도에만 징계 또는 형사처벌로 인해 의무복무기간 중 총 36명의 장교가 제적되었으므로, 이 인원 중 단기복무장려금 수령자가 있다면 관련 규정에 따라 환수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의무복무 기간 중 징계, 형사 처벌로 인한 장교 제적 현황]

(단위: 명)

구 분	군인사법 제40조제1항		
	징계	형사처벌	계
육 군	12	10	22
해 군	3	3	6
공 군	0	7	7
해병대	0	1	1
계	15	21	36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다만, 국방부는 「군 장려금 지급 규칙」 제5조의 군 장려금 반납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군 참모총장이 대상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때 임관하지 않는 경우에만 환수할 것을 고지하여 환수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의무복무기간 중 징계 또는 형사처벌 등 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제적된 장교에 대해 각군 참모총장이 환수할 수 있도록 장려금 지급 시 “제적될 경우 반납”을 고지하는 등의 반납 절차를 마련하여 추후 발생하는 제적자에 대해서는 단기복무장려금을 환수할 필요성이 있다.

목적 외 보조금 사용에 관한 환수 및 관리 의무 철저 필요 (국방전직교육원)

가. 현 황

취업활동지원 사업¹⁾은 전역예정장병에 대한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해 취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전직교육원을 통하여 수행하는 보조사업이다. 국방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계획현액 154억 300만원 중 153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5,7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취업활동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계획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계획액
	당초	수정							
취업활동지원	15,403	15,403	-	-	15,403	15,346 (14,520)	-	57	16,339
일반관리	3,335	3,448	-	-	3,448	3,448 (3,429)	-	-	3,550
취업지원 사업	12,068	11,955	-	-	11,955	11,899 (11,091)	-	57	12,789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의 내역사업 중 일반관리 사업은 국방전직교육원의 기관운영비로 편성된 사업이고, 취업지원 사업은 국방전직교육원의 사업비로서 장병에게 진로교육 및 전직컨설팅 제공, 취업상담 프로그램 지원, 취업박람회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등을 위하여 편성된 사업이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군인복지기금 2239-647

나. 분석의견

국방전직교육원은 운영비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인건비 지급목적으로 사용하여 사업계획서 상 승인받은 인건비를 초과하여 집행하였는데, 국방부는 이러한 교부목적 외의 다른 용도의 사용에 대해 환수하고 추후 보조사업자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르면, 법령이나 교부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면 아니되며,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보조사업 사업의 목적외 집행금지 관련 규정]

「국방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Ⅳ. 보조금의 집행관리

1. 보조사업자는 법령이나 교부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다음의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변경 집행)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국방부장관(사업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비목 및 보조세목의 신설, 보조비목간의 전용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6조(보조사업비의 변경)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사업계획서상의 보조비목을 준수하여 집행한다.

국방전직교육원은 2022년 12월 29일에 “2022년 직원들의 퇴직금” 1,386만원을 운영비 중 복리후생비(210-12)로 집행하였는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2)은 연봉의 1/12을 퇴직급여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어 이러한 퇴직급여 적립금을 집행한 것으로 보인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 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국방전직교육원의 운영비 집행내역]

운영비(210)	복리후생비(12)	2022년 09월 28일	14,286,590	9월 정임내직원 4대보험 사용자분
		2022년 10월 20일	1,111,498	9월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액
		2022년 10월 20일	694,062	10월 정임내직원 주민세 종업원분
		2022년 10월 26일	13,966,570	10월 정임내직원 4대보 험 사용자분
		2022년 11월 23일	715,607	11월 정임내직원 주민세 종업원분
		2022년 11월 23일	1,540,270	10월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액
		2022년 11월 29일	13,899,570	11월 정임내직원 4대보 험 사용자분
		2022년 12월 23일	593,180	11월 맞춤형 복지포인트 사용액
		2022년 12월 23일	13,891,530	12월 정임내직원 4대보 험 사용자분
		2022년 12월 28일	825,549	12월 정임내직원 주민세 종업원분
		2022년 12월 28일	40,000	하반기 동아리활동 지원
		2022년 12월 28일	162,100	12월 동아리 행사 진행
		2022년 12월 29일	13,861,463	2022년 퇴직금 적립

자료: 국방전직교육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그러나, 이러한 퇴직급여 총당금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에 따라 인건비 중 보수(110-01)목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인건비 (110)	보수 (01)	1.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2. 연봉제 직원의 경우에는 연봉 월액 3. 성과급 4. 퇴직금 및 퇴직급여 총당금 5. 직급보조비

자료: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별표 1】 보조비목·보조세목별 산정기준 등

보조사업자가 사업계획서상의 보조사업비 예산을 변경 집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 사유와 보조비목을 명시하여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국방전직교육원은 이러한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인건비로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운영비로 집행을 하였다.

이는 2022년도 보수(110-01)로 편성된 19억 5,100만원의 보조사업비를 모두 집행하여 그 부족분이 발생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국방전직교육원의 보조비목별 총괄명세서]

(단위: 원)

보조비목	보조세목	보조사업비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률
업무추진비(240)	사업추진비(01)	2,000,000	2,000,000	0	100%
업무추진비(240)	기관업무비(02)	26,626,000	23,626,000	3,000,000	88%
여비(220)	국내여비(01)	10,000,000	4,719,800	5,280,200	47%
운영비(210)	일반수용비(01)	73,103,567	68,103,567	5,000,000	93%
운영비(210)	공공요금 및 제세(02)	294,927,692	294,927,692	0	100%
운영비(210)	일·숙직비(06)	3,300,000	3,300,000	0	100%
운영비(210)	임차료(07)	62,758,780	62,758,780	0	100%
운영비(210)	유류비 등(08)	9,663,716	7,663,716	2,000,000	79%
운영비(210)	시설장비유지비(09)	32,914,580	32,914,580	0	100%
운영비(210)	복리후생비(12)	207,186,498	207,186,498	0	100%
운영비(210)	일반용역비(14)	68,266,500	65,266,500	3,000,000	95%
운영비(210)	관리용역비(15)	661,961,357	661,961,357	0	100%
운영비(210)	기타운영비(16)	10,217,310	10,217,310	0	100%
유형자산(430)	자산취득비(01)	34,000,000	33,621,000	379,000	98%
인건비(110)	보수(01)	1,951,000,000	1,951,000,000	0	100%
합계		3,447,926,000	3,429,266,800	18,659,200	

자료: 국방전직교육원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비가 아닌 인건비 등을 국고에서 지원받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보수를 증액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비목별로 구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고 있다. 보수로 지급할 예산이 부족함에도 2022년 국방전직교육원 직원들의 임금인상을 단행하였고, 그 부족분을 운영비로 집행하여, 「국방부 국고보조금 관리지침」 및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등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국방부는 이러한 보조사업자의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반하는 자의적인 보조금 집행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사업관리에 미흡함이 있으므로, 교부목적과 다르게 지급한 퇴직급여 충당금 부문을 환수하고, 추후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을 활용한 군사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군 전문인력 양성·운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국방과학기술분야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이스라엘의 탈피오트제도를 참고하여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도입하였고, 최근에는 선발대상을 석사학위 트랙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확대하고 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안보과학기술대학원의 설립을 추진하여 과학기술인력육성을 위한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또한, 군 내에서 운용할 기술인력확보를 위해 직업계 특성화고(이하 ‘군 특성화고’라 한다.) 3학년을 대상으로 병과별 교육을 통해 고등학교 졸업 후 기술전문병으로 18개월 동안 의무복무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하도록 하는 기술인력육성지원 사업도 실시하고 있다.

군 특성화고의 경우 정보통신, 궤도정비, 총포정비, 공병, 수송정비, 기갑조종, 자주포병, 헬기정비, 탄약관리, 방공, 조리, 기관정비, 상륙장갑 등 다양한 병과가 운용되고 있어 군의 기술전문인력을 확충하려 하고 있으며, 2022년 기준 45개 고교가 운용되고 있다.

5-1.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 개선 필요

가. 현 황

과학기술인력육성을 위해 국방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 동 제도는 과학기술전문사관 모집선발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사업¹⁾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2년도 예산현액 3억 8,0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연도 과학기술전문사관 모집선발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
	본예산	추경							
과학기술인력 육성지원 기반구축	3,592	3,592	-	-	3,592	3,592	-	-	3,181
과학기술전문사 관 모집선발 및 교육훈련과정 운영	380	380	-	-	380	380	-	-	473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는 이공계 대학 우수 학생을 선발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임관 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간 복무하게 하고 있다. 2년 동안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 매 학기별로 전문역량개발비 2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2024년부터는 현 학사학위자 대상 선발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석사급 이상 연구인력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내에 석사 선발트랙을 신설하여 매년 25명을 추가 선발하려는 계획에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력하여 한국과학기술원 내에 안보과학기술대학원을 설립하여 과학기술전문사관이 군 복무 중에 석사학위를 취득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 중이다.

1) 코드: 일반회계 1744-404의 내역사업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

지원 자격	전국 4년제 이·공계 분야 재학생 (모집계열: 전기·전자 / 기계·항공 / 전산·컴퓨터 / 순수과학)						
교육 훈련 관리 체계	선발 ↓		임관(6월) ↓		부서배치(8월) ↓		전역 ↓
	대학교육	양성교육	보수교육		연구개발 참여		
	각 대학	육군학생군사학교 (8주)	ADD 아카데미		ADD 연구부서		
	임관 전		임관 1년차	임관 2년차	임관 3년차		
	(관리·운영) 과기부·국방부		(관리·운영) 국방부				
	대학 교육	국방과학기술교육(12학점 이상) + 창업전문교육(6학점 이상) + 현장실습교육(80시간)					
	양성 교육	전문사관 교육과정 교육(가입교 1주 + 군인화 5주 + 신분화 2주) * 임관 시 전공분야 및 개인희망 고려하여 군 및 병과 분류					
보수 교육	임관 후 초군반 교육 대체 ADD 집체교육 (각 군 이해, ADD 전문기술·IT 교육 등)						
혜택	(학기당) 등록금 전액 + 전문역량개발비(250만원) / 최대 2년(5~8학기) 간 지원						
복무	3년 / 장기복무 지원 가능						
임관 후 활동	전원 ADD 파견복무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는 국방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진학을 이유로 실제 임관하지 않는 인력도 발생하고 있고, 의무복무 이후 타 분야에 취업하는 사례가 있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국방과학기술분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과학기술전문사관 제도를 운영하여, 대학졸업 후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3년간 의무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현재 운영 중인 과학기술전문사관제도의 경우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본연의 목적 달성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전문사관으로 선발 되더라도 학사를 마치고 입대하여야 하는 시스템으로 인하여 학업(석·박사) 지속 등의 사유로 임관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선발인원은 25명이나 매년 17~21명만이 실제 임관으로 이어지고 있으며²⁾, 학사 출신으로서 전문적 연구수행에는 다소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2년 국방인력구조 개편 계획 대비 현황]

(단위: 명)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선발	20	25	25	25	25	25	23	25	25	218
임관	-	-	-	18	20	21	20	20	17	116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장기복무를 위하여 2022년에는 국방과학연구소에 대위 계급 5석을 확보하였으나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다. 또한 과학기술전문사관 1~2기 전역자 총 38명 중 20명은 진학, 14명은 취업, 1명은 창업하였고, 이 중

2) 과학기술전문사관의 선발을 담당하는 한국과학기술원 과학기술전문사관지원센터에 따르면 임관포기 사유는 대부분 학업을 지속하려는 때문이다. 1~8기 후보생중 후보생자격이 취소된 35명 중 23명이 대학원에 진학하였으며, 대학원 진학 후 석사 학위 이상을 취득하고 3년간 근무하는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이행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도 있다.

취업자 3명은 국방 분야와 다소 거리가 먼 자동차 제조업종에 취업하는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는 국회 국정감사³⁾에서의 지적도 있었다.⁴⁾

이와 같이 동 제도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주요한 원인 중 하나로 국방과학연구소의 연구인력 수요는 석사 이상이나, 과학기술전문사관은 학사학위자가 선발되므로 연구인력으로 활용하기에 부족한 측면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러한 운용은 병역대체복무제도의 하나인 전문연구요원⁵⁾과 같이 보조인력 수준의 제한적인 역할이 주어지게 되고, 본 제도의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이라는 목적을 달성하는데 제약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방부는 석사학위 트랙을 신설할 예정이나, 국방 R&D과제의 경우 3~5년 주기로 이루어지는데, ADD에서 의무복무하는 기간이 3년으로 R&D 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인력이 추후 국방과학기술분야에 지속적으로 종사하게 만들기 위한 유인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동 제도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가장 대표적인 국방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의 경우는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국내 최고 수준이었으나, 2022년에는 21개 과기분야 정출연 중 11위 수준의 연봉⁶⁾으로 우수인력을 유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며, 다른 국방 분야 연구소들의 경우도 유사한 상황에 있다.

3) “과학기술전문사관 전역사관(1기,2기) 총 38명 중 20명은 진학, 14명은 취업, 1명은 창업. 이 중 취업자 3명은 국방분야와 다소 거리가 먼 자동차 제조업종에 취업. 이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2021년 과기정통부 국정감사)

4) 국방부는 단기사관인 과기사관의 양성 목적은 국방연구개발 분야로 한정할 수 없으며, 과기사관 출신이 자동차 제조업 등 민간기업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함으로써 전체 국가연구개발 인력 육성에도 이바지한다고 밝혔다.

5) 학문과 기술의 연구인력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병역대체복무제도이다.

6) (2018년) 11위 → (2019년) 8위 → (2020년) 7위 → (2021년) 11위 → (2022년) 11위

[정부출연연구기관 연봉 비교]

(단위: 천원)

구분	국방분야			타 분야	
	국방과학 연구소	한국국방 연구원	국방기술 품질원	한국전자통신 연구원	한국기계 연구원
연봉	99,015	93,114	88,027	117,098	107,371

주: 2022년 기준임.

자료: 국방부

또한, 연구에 따른 성과 배분 측면에서도 타 분야에 비해 국방과학기술분야에 종사하는 것이 불리한 구조이다. 국방분야의 경우 핵심 무기체계 연구개발에 성공 하더라도 기술이전 가능 기술 및 대상이 제한되어 있고, 국가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7)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8)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구자가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을 받도록 하는 규정도 국방과학기술분야에는 적용되지 않는다.⁹⁾¹⁰⁾

7)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⑤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 성과 활용에 기여한 직원 등에 대한 보상금
2.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⑥ 제2항에 따른 납부 기준, 제4항에 따른 감면 기준과 제5항에 따른 기술료 사용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1조(기술료의 사용)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 및 제3항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제5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연구개발비에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정부지분기술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 및 사용비율 기준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1.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한 연구자에 대한 보상금: 정부지분기술료의 100분의 50 이상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 2. (생략)
3.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로 구성된 국방 분야의 사업

10) 다만, 국방연구개발의 경우에는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및 국방과학연구소 내규 「기술료 징수 및 사용 요령」에 따라 보상금(50% 이내)을 지급하는 별도의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는 있으나, 전술한 바대로 기술이전 제한 및 50% 이상의 기술료를 받을 수는 없어 차등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국방과학연구소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 1인당 기술료가 8만원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에는 약 1,100만원에 달하는 등 정부출연기관 내에서도 기술료 지급에 상당한 차등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연봉뿐만 아니라 연구 성공에 따른 기술료 같은 인센티브 구조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우수한 인재를 국방과학기술분야로 유치하는 것이 어렵다.

[2022년 정부출연기관 대비 기술료 지급현황]

(단위: 천원)

구분	한국전자 통신연구원	한국에너지기 술연구원	한국전기 연구원	한국화학 연구원	국방과학 연구소
1인당 기술료	10,969	7,570	7,455	6,865	78

자료: 국방부

동 제도를 도입하면서,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제도¹¹⁾를 참고사례로 삼았는데, 이스라엘과 한국의 경우 제반 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스라엘은 고등학교 졸업 직후 군 입대가 전원 의무화(男 3년, 女 2년)되어 있으며 선호 부대를 입대하는 것이 향후 커리어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환경으로¹²⁾ 우수인력이 탈피오트에 지원할 유인이 매우 높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에는 산업구조가 다양하고, 의료, 법조 분야 직업의 선호도가 더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이러한 선호 직업보다 더 높은 처우를 보장하여야 우수인재를 유치하여 국방과학기술 인재로 양성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① 우수인력을 동 분야로 끌어들이기 위한 충분한 처우를 확보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② 창의력 있는 인재를 조기에 국방과학기술분야로 유도하기 위해 ‘사관학교’ 또는 유사한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며, ③이러한 양성 시스템을 통한 국방과학기술분야 인력이 동 분야에서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 및

11) 이스라엘의 과학기술 엘리트를 육성하는 군 복무 프로그램으로 소위 임관 후 6년간의 의무복무를 한다.

12) 이스라엘의 경우 방위산업이 차지하는 고용 규모가 제조업의 13%에 달할 정도로 핵심적인 산업으로 탈피오트로 선발되어 국방과학기술연구분야에서 군복무를 하고, 이러한 경력을 바탕으로 국방과학기술 분야에 종사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곧 성공적인 커리어를 달성하기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다.

창업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교육부 등의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이러한 국방과학기술인력 양성 및 활용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5-2. 군 특성화고 졸업자의 부사관 임관을 저하 대책 필요

가. 현 황

기술인력육성지원 사업¹³⁾은 직업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을 입대 전 군에서 필요한 기술전문인력으로 양성하여 졸업 및 입대 후 기술전문병-임기제부사관으로 복무시킴으로서 군의 우수 기술인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자기개발교육 사업의 내역 사업이다. 국방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85억 5,500만원 중 85억 3,400만원을 집행하고 2,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기술인력육성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자기개발교육	59,430	59,430	47	△2,456	57,021	54,494	258	2,269	56,230
기술인력육성 지원	8,549	8,549	-	6	8,555	8,534	-	21	8,54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현재 45개 군특성화고가 운영 중에 있으며, 고등학교 졸업 후 기술전문병 복무(18개월) 완료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연장복무(6개월~48개월) 지원 및 임관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13) 코드: 일반회계 2432-308의 내역사업

[군 특성화고 운영 현황]

(단위: 학교 수)

구 분	2008 ~ 2014	2015	2016	2019	2020	2021	2022
신규 지정	10	3	1	9	12	8	2
전체 운영 (누적)	10	13	14	23	35	43	45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군특성화고 졸업자의 임기제부사관 임관률이 57%까지 떨어져, 우수 기술인력을 확보하려는 동 사업의 효과가 떨어지고 있으므로 임기제부사관 임관을 유인하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직업계 특성화고에서 3학년생을 대상으로 군이 필요로 하는 전문기술직위 분야의 특수학과(주특기 교과과정 개발)를 운영하여 전문기술인력을 입대 전에 맞춤형으로 양성함으로써 숙련된 기술인력을 졸업과 동시에 군에 입대하게 하고 있다.

병역자원 감소 및 복무기간 단축에 따라 국방부는 상비병력을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전투·작전 숙련도가 높은 간부 비중을 확대하는 등의 군 인력구조 개편을 추진 중에 있는 상황으로 동 사업에 따른 우수 기술인력의 임기제부사관¹⁴⁾의 확보는 군의 전력운용에 필수적이다.

군 특성화고 졸업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18개월의 의무복무 이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지원하여 임관하게 되는데, 최근 군 특성화고 졸업자가 입대한 후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한 비율을 보면 2017년~2019년 입대자의 경우 임관비율이 70%를 상회하였으나, 2021년 입대자(22년 임관자)의 경우에는 57%까지 하락하고 있다.¹⁵⁾

14) 「병역법」

제20조의2(임기제부사관제의 운영) ① 병무청장이나 각 군 참모총장은 우수한 숙련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에서 정하여진 기간을 임기로 하는 부사관(이하 “임기제부사관”이라 한다)으로 복무할 사람을 선발할 수 있다.

15) 의무복무 18개월 이후 입대이므로 2021년 병사 입대자는 2022년에 부사관으로 임관하게 된다.

[입대 인원 대비 임관 비율 추이]

(단위: 명)

구 분	'18년 임관 (‘17년 병입대)	'19년 임관 (‘18년 병입대)	'20년 임관 (‘19년 병입대)	'21년 임관 (‘20년 병입대)	'22년 임관 (‘21년 병입대)
입 대	555	585	662	841	1,098
임 관	394	408	472	551	625
임관비율	70%	74%	71%	66%	57%

자료: 국방부

이러한 임관률의 하락은 부사관의 처우가 떨어지는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 18개월동안 기술전문병으로 복무를 하면, 의무복무기간을 이미 마친 상황으로 임기제 부사관으로의 임용은 개인의 선택이 된다.

그러나, 2022년 기준 전문기술병이 임기제부사관으로 임관하는 경우 받게 되는 하사 2호봉¹⁶⁾의 기본급은 179만 1,400원이었고, 직급보조비 14만 5,000원을 더하여도, 2022년 최저임금인 191만 4,440원과 큰 차이가 없었다. 대부분 군부대의 경우 오지에 있는 것을 감안하면 정주 여건도 좋지 않다.

즉, 현행 군의 보수체계로는 기술전문인력으로 양성한 군특성화고 졸업자들을 의무복무이후에도 임기제 부사관으로 임용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특히 병 봉급 인상으로 인해 부사관의 상대적 처우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기술전문병 복무 시와 임기제 부사관 복무 시에 큰 차이를 체감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복무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임기제부사관의 경우 경험이 쌓인 병사가 부사관으로 임관하기에 군생활 적응이 더 쉽고, 즉시 전력으로 투입할 수 있어 본질적인 의미의 초급간부의 역할을 하기에 적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임기제부사관 복무를 보다 권장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동 사업에 따른 기술전문병으로 복무한 임기제 부사관은 그 부대의 동일한 업무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복무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선 상에서 군의 전력에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관점에서 이들의 부사관 임관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한 측면이 있다.

16) 병으로 복무한 기간이 호봉에 반영되어 2호봉부터 시작한다.

따라서, 임기제부서관 임관 시 기술전문병 경력에 대한 승진소요년수 인정, 기술전문병 복무경력자에 대한 수당 지원, 장기복무부서관 전환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의 유인체계를 마련하여 임용률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¹⁷⁾

17) 군특성화고 졸업자를 4년 의무복무인 단기복무부서관으로 임용하는 대안을 고려할 경우에는 최초 지원률 자체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현재의 기술전문병(의무복무)+임기제 부서관의 틀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가. 현 황

AI 면접체계 시행 사업¹⁾은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첨단 면접기법 도입을 통해 우수인재 선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정책지원의 내역사업이다. 국방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5억 6,500만원 중 5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5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AI 면접체계 시행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인사정책지원	14,409	14,409	-	523	14,932	14,676	96	161	18,096
장교 및 부사관 선발	4,492	4,492	-	△54	4,438	4,247	93	98	5,783
AI 면접체계 시행	615	615	-	△50	565	560	-	5	61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AI 면접은 모집공고 시 안내되고 있으며, 면접 대상자에게 면접 안내 문자 및 메일을 발송하면, 지원자가 면접 평가 사이트에 접속하여 개인정보제공 동의 후 음성 안내에 따라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러한 평가 결과는 각 군에 제공되어 선발절차에 활용되고 있다. AI 면접 응시인원은 2021년의 경우 2만 67명, 2022년에는 2만 9,290명으로 나타났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9-306의 내역사업

[AI 면접 응시절차]

순번	시행단계	세부내용
1	(각 군) AI 면접 시행 공지	모집공고 시 관련 내용 공지
2	(시행업체) AI 면접 시행 안내	면접 대상자에게 면접 안내 문자 및 메일 발송 (개별 응시코드 포함)
3	(지원자) 면접평가 사이트 접속 및 평가 진행	접속 후 성명과 응시코드 입력
		카메라/마이크 등 면접 환경 점검
		개인정보 제공 동의 후 음성안내에 따라 평가 진행(질의 응답 등)
		면접체계 개선을 위한 응시자 설문조사 실시
4	(각 군) 자료 활용	각 군에서 해당 사이트에 관리자 권한으로 접속하여 PDF 형식을 결과 다운로드 후 활용

자료: 국방부

[AI 면접 응시인원 현황]

(단위: 명)

연도	육군	해군	해병	공군	계
2021	14,838	1,799	246	3,184	20,067
2022	21,400	4,479	484	2,927	29,290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AI 면접체계 시행 사업의 유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 간부 선발 시 AI 면접 도입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면접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기존의 면접체계 운영비가 감소하지 않아 간부 선발 면접에 들어가는 비용이 오히려 증가하는 등 동 사업추진의 효율성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므로 사업의 유지여부에 대해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각 군은 AI 면접을 도입하여 2단계 면접 중 1단계를 AI를 기반으로 한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응시자는 PC나 모바일을 활용해 1단계 AI 면접을 보고 있다. 이 면접 결과는 육·해·공군은 면접평가 배점의 20%의 비율로 반영되고 있으며, 해병대는 점수로 반영하지 않고 참고자료로만 활용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합격 여부를 AI 면접으로만 결정하는 것은 윤리적인 문제²⁾가 있고, 군 간부 선발 면접 시 가장 중요한 국가관·안보관, 군인으로서 품성과 자질에 대한 평가는 결국 전문 면접관의 평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기존의 면접방식을 병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8년 2억 1,800만원이었던 면접시험 관련 지출액은 AI 면접이 시범 도입된 2019년 4억 4,000만원, 확대 실시된 2022년에는 9억 1,800만원까지 증가하였다.

[장교 및 부사관 선발 면접시험 지출액]

(단위: 백만원)

연도	세부내역	지출액
2018	• 면접위원 수당 및 면접 운영비 218	218
2019	• 면접위원 수당 및 면접 운영비 233 • AI 면접체계 수수료 207	440
2020	• 면접위원 수당 및 면접 운영비 296 • AI 면접체계 수수료 607	903
2021	• 면접위원 수당 및 면접 운영비 294 • AI 면접체계 수수료 543	837
2022	• 면접위원 수당 및 면접 운영비 358 • AI 면접체계 수수료 560	91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또한, 2022년 AI 면접 시행을 위해 각 군은 개별적으로 입찰을 하였으나 결국 입찰하는 업체가 없어, 육군, 해군, 해병대는 모두 A업체와의 수의계약³⁾을 통해 사업을 진행하여 약 5억 6,000만원을 집행하였다.

2) 인공지능이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선발시험 합격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하는 부분에 대한 윤리적 논쟁의 우려가 있다.

3) 공군은 2곳이 입찰하여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되었으나 결국 같은 업체가 선정되었다.

[AI 면접체계 계약 내역]

구 분	업체명	계약 금액	계약 기간	계약형태
육 군	A업체	370,000,000원	2022. 3. 16. ~ 12. 16.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해 군		74,500,000원	2022. 4. 8. ~ 12. 16.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공 군		67,500,000원	2022. 6. 10. ~ 12. 31.	경쟁입찰
해병대		47,110,000원	2022. 8. 22. ~ 12. 31.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
계		559,110,000원		

자료: 국방부

즉, AI 면접 시행 용역을 제공하는 업체의 수도 충분히 존재하지 않아⁴⁾ 입찰과 정에서의 경쟁 자체가 일어나지 않고, 결국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효율성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AI 면접은 결국 기존 면접의 보조적인 역할만 수행할 수밖에 없고, 이는 예산상 면접사업비에 대한 절감 효과 없이 추가적인 재정 지출로만 나타나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 의문이 있다.

특히, 민간과는 달리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군인에 대해서는 국가관·안보관, 군인으로서 품성과 자질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고, 이러한 사항은 AI 면접에 의존하기보다는 전통적인 전문 면접관의 평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AI 면접체계 시행 사업의 유지 여부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공무원인 군인을 AI 면접을 통해 선발하는 것이 채용의 공정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국민이 수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AI 면접의 경우 그 평가 방식 및 “알고리즘의 작동방법” 등이 해당 업체의 영업기밀로 분류되고 있어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과정에 의해 어떻게 평가

4) 3개 사업자의 과점상태이다.

되었는지를 검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이 영업기밀로 보호되는 과정에서는 이러한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년 5월 17일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고, 주요한 내용으로 투명성의 원칙을 제시하였는데,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을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역시, 정보주체에게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을 한 경우 그 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을 규정하고 있고,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등에 대해 공개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AI활용 시 투명성의 원칙 관련 규정]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에 관한 인권 가이드라인」

둘째, (투명성과 설명 의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판단 과정과 그 결과에 대하여 적절하고 합리적인 설명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이 개인의 생명이나 안전 등 기본적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사용한 데이터와 알고리즘의 주요 요소를 일반에 공개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2024. 3. 15.]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②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자동화된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에 대하여 설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가 처리되는 방식 등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와 같이 인공지능에 의한 결정에 대하여 그 결정 과정을 공개하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된 규정 및 가이드라인이 도입되어 있지만, AI 면접에 응시한 내용이 정확하게 결과에 반영이 되는지 AI 면접에서 어떤 기준으로 당락을 결정하는지 개인정보의 주체인 선발시험 지원자가 이를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편, 2023년 3월 14일 개정된 「개인정보 보호법」은 AI가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당사자가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AI에 의한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일: 2024. 3. 15.]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 ① 정보주체는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한다)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하여 이루어지는 결정(「행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청의 자동적 처분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자동화된 결정”이라 한다)이 자신의 권리 또는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하여 해당 결정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다만, 자동화된 결정이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이러한 규정의 취지를 고려하면, 간부 선발시험에 응시하는 지원자가 AI 면접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응시하는 지원자의 입장에서 선발하는 기관에 이러한 권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 개인의 권리에 일정 부분 제한을 받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채용 절차의 진행은 채용 과정의 타당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AI 면접 체계의 알고리즘의 공개 등 투명성에 대한 확보가 선행되지 않고, AI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 등의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채용절차가 운영되는 것은 채용의 공정성과 타당성 측면에서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이에 따라 국민이 동 제도의 도입을 수용할 수 있는지에 의문이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가. 현 황

장교 및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사업¹⁾은 대학(전문대학 포함) 재학생 중 장교 또는 부사관 지원자에게 군가산복무지원금을 지급하고 수혜 받은 기간만큼 가산복무하도록 하여 중기복무 장교와 전투·기술부사관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간부확보장려사업의 내역사업이다. 국방부는 장교 가산복무지원금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427억 5,200만원 중 425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 6,600만원을 불용하였으며,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71억 3,400만원 중 58억 8,800만원을 집행하고 12억 4,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장교 및 부사관 가산복무지원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간부확보 장려사업	71,725	71,725	-	△60	71,665	70,247	-	1,418	83,136
장교 가산 복무지원금	40,666	40,666	-	2,087	42,752	42,586	-	166	40,666
부사관 가산 복무지원금	8,061	8,061	-	△928	7,134	5,888	-	1,246	7,73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대학재학생이 군 가산복무지원금 선발에 지원하여 대상자로 선발되면 지원자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주고 지원받은 기간만큼 군에서 연장복무를 하도록 하고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439-301의 내역사업

[가산복무지원금 사업 개요]

구 분	가산복무지원금 (舊 군장학생 제도)	
	대학 (장교)	전문대학이상 (부사관)
지급대상	재학생 중 지원자	
의무복무기간	2년 4개월~3년	4년
지급단가	지원자 대학의 등록금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기간	1년~4년	1년~2년
연장복무기간	지원금 지급기간 만큼 가산하여 복무	
기타	가산복무지원금과 단기복무 장려금 중복 지원 금지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장교나 부사관으로의 의무복무기간에 추가하여 복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군에서 필요한 우수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군 전력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장교 4,516명, 부사관 1,020명 총 5,536명이 가산복무지원금을 수령하였다.

[2018~2022년 이후 연도별 가산복무지원금 지급인원]

(단위: 명)

연도	지급인원 수		
	장교	부사관	계
2018	3,911	948	4,859
2019	4,440	1,227	5,667
2020	4,553	1,162	5,715
2021	4,547	1,098	5,645
2022	4,516	1,020	5,536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가산복무지원금은 의무복무기간 이상의 추가복무에 대한 대가로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임에도 불구하고, 재학 중인 대학교의 학비에 따라 지원액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급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산복무지원금은 의무복무기간 이외에 추가로 복무할 것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과거 “군장학생” 제도가 변경되어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장교 및 부사관으로 근무할 대상자에게 생활비를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학비보조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과 가산복무지원금의 중복수혜도 가능하다.

[국가장학금과 가산복무지원금 비교]

구분	국가장학금	가산복무지원금
목적	대학교육 기회 제공을 위해 무상지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인력 확보
성격	지급받은 장학금에 대한 반대급부 없이 지원	군 가산복무에 대한 대가를 사전에 지급하는 지원금
지원용도	학비 보조	생활비 명목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산복무지원금의 지원체계가 각 대상자가 재학하는 대학의 학비에 해당하는 금액²⁾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舊 군장학생” 제도의 보조 방식을 가져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가산복무지원금 대상자로 선발되면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의 임관이 확정되고, 졸업 후 장교 또는 부사관으로 복무하게 된다. 가산복무지원금을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수령하였느냐에 따라 가산되는 연장복무기간이 그에 연동되는데, 4년 동안 가산복무지원금을 지원받았다면 4년의 연장복무의무가 부여된다.

2022년 가산복무지원금 지원금액을 보면, 장교로 임관이 예정된 대상자의 경

2) 이러한 지급방식은 과거 군 장학생 시절 학비 보조의 개념이 있을 당시의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우 각각 지원금액이 최소 3,193,200원에서 최대 9,778,000원까지로 나타났고, 부사관으로 임관이 예정된 대상자의 경우 최소 2,587,600원에서 최대 8,294,000원까지로 나타나 큰 편차를 보였다.

지원금액대별 인원을 보면, 2022년 기준 가장 많은 인원이 받은 지원금액은 600만원대 였고, 그 다음은 700만원대로 600~799만원의 지원을 받은 인원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 가산복무지원금 최저/최대 지원금액]

구 분	최저 지원금액	최대 지원금액
장 교	3,193,200원	9,778,000원
부사관	2,587,600원	8,294,000원

자료: 국방부

[2022년 군 가산복무 지원금 금액 수준별 지급인원]

금액구분	인원(명)
계	5,536
400만원 이하	213
400만원 대	442
500만원 대	801
600만원 대	1,702
700만원 대	1,164
800만원 대	583
900만원 대	631

자료: 국방부

의무복무기간 외에 군 간부로서 추가복무 하는 것에 대한 대가가 ‘가산복무지원금’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자신이 다닌 대학의 학비에 따라 차등적인 보조금액을 지급받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³⁾

3) 오히려, 개인의 자격 특성별 차등 지급을 통해 군에서 필요로 하는 자격과 능력을 가진 자에 대해 일부 차등을 두는 방안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하에서는 똑같이 장교로 복무하는 소위 A와 소위 B의 경우에는 동일한 수준의 지원금액을 수령하였으나 A는 3년, B는 1년을 추가로 복무하여야 하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부사관으로 복무하는 하사 C와 D의 경우에도 동일한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한다.

[2022년 가산복무지원금 최저/최대 지원금액]

(단위: 만원)

장교				부사관			
소위 A		소위 B		하사 C		하사 D	
지원금액	가산복무 기간	지원금액	가산복무 기간	지원금액	가산복무 기간	지원금액	가산복무 기간
958	3년	978	1년	776	3년	829	1년

자료: 국방부

특히 이러한 가산복무지원금 지급체계가 유지될 경우 각 대학에서 운영하는 “군 의무복무형 계약학과”와 “군사학과” 등의 경우, 군 간부로 근무하기 위해 해당 학교로 진학한 학생들이 대부분이므로 지속적으로 해당 학과의 학비를 올릴 유인이 발생⁴⁾하고, 이에 연동되는 가산복무지원금의 지급액의 인상으로 인해 국가재정이 더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따라서, 국방부는 가산복무지원금이 추가 복무할 것을 대가로 받는 것임을 고려할 때 가산복무기간에 비례한 지원금 지급체제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4) 실제 최대 지원금액(9,778,000원)을 받은 대상자의 학교는 “군 의무복무형 계약학과”이다.

가. 현 황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¹⁾은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시 인근에 위치한 탄약고를 광주 군 공항 인근으로 이전하기 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236억 9,900만원 중 231억 5,200만원을 집행하고, 5억 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광주기지 영외 탄약고 이전	22,373	22,373	1,326	-	23,699	23,152	509	38	773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광주광역시 상무신도시 도로확장에 따라 인근에 위치한 광주기지 영외탄약고를 광주시의 협의 이전 요청에 의해 광주 군공항 인접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 국방부는 2015년 이전부지에 대한 토지 매입절차를 완료하였다.

그러나, 2016년 광주 군 공항 이전이 구체화 되는 과정에서 군 공항 이전 시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우려²⁾³⁾가 있어, 매입 토지에 대한 공사 착공을 잠정 보류하였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131-477

2) 동 영외탄약고는 전시 광주 군 공항 지원을 위한 탄약저장시설로, 광주 군 공항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2015년까지 매입한 부지에 6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외탄약고를 신축한 후에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해당 탄약고를 조기에 철거하고 이전한 군 공항에 동일 예산을 투입하여 탄약고를 재건설하는 과정에서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3) 국방부는 최근 기부대양여(타지역 설치 조건부 제공)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 당초 계획]



자료: 국방부

이후 사업이 추진됨이 없다가 국방부는 2020년 10월 연약지반공사 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2021년부터 2022년까지 354억 2,000만원을 집행하여 매입한 부지에 대한 연약지반공사를 실시하고 있다.

[최근 2017년 이후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17	2,402	2,402	-	△2,401	1	-	-	-
2018	548	548	-	△522	26	-	-	26
2019	548	548	-	△548	-	-	-	-
2020	548	548	-	-	548	420	74	54
2021	12,503	12,503	74	611	13,188	11,848	1,326	14
2022	22,373	22,373	1,326	-	23,699	23,152	509	38
계	38,922	38,922			37,462	35,420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광주 군 공항 이전 시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우려⁴⁾가 있음에도 연약지반공사를 실시하였으나 현재 연약지반공사를 한 예정부지로의 이전계획이 불투명하여 매몰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국방부는 이전계획 중단을 대비하여, 매몰비용 최소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동 사업은 2016년 군 공항 이전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예산을 전액 불용하여 왔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매년 5억 4,8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 추진이 본격화될 경우 동 사업도 함께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최소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것이다.

그런데, 국방부는 군 공항 이전 논의에 대한 특별한 진전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동 사업에 편성된 예산으로, 현재 군 공항이 위치한 지역의 토지에 대한 연약지반공사 계약을 체결하였다. 2023년 6월 공사 완료 예정으로 2022년까지 이미 354억 2,000만원이 지출되었고, 2023년 편성된 7억 7,300만원을 포함하면, 총 361억 9,300만원을 연약지반공사에 집행하게 된다.

[최근 3년간 광주기지 영외탄약고 이전사업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연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2020	548	548	-	-	548	420	74	54
2021	12,503	12,503	74	611	13,188	11,848	1,326	14
2022	22,373	22,373	1,326	-	23,699	23,152	509	38
2023	773	773						
계	36,197	36,197			37,435	35,420		

자료: 국방부

4) 동 영외탄약고는 전시 광주 군 공항 지원을 위한 탄약저장시설로, 광주 군 공항과 인접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2015년까지 매입한 부지에 6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여 영외탄약고를 신축한 후에 공항이 이전하게 되면 해당 탄약고를 조기에 철거하고 이전한 군 공항에 동일 예산을 투입하여 탄약고를 재건설하는 과정에서 중복투자가 우려된다.

그동안 광주 군 공항의 이전이 지연되고 있던 이유는 군 공항 주변이 개발제한 구역으로 지정되어 인근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고, 인근 지역에 항공기의 소음피해가 발생하므로 지역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군 공항 유치지역에 대한 재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2023년 4월 25일에 제정되어 8월에 시행을 앞두고 있고, 함평군 등의 경우에는 유치위원회가 구성되는 등 광주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한 논의가 급진전 되고 있다. 국방부 역시 연약지반공사를 시행한 현 군 공항이 위치한 예정부지로의 영외탄약고 이전계획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즉, 광주 군 공항 이전 시 중복투자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중단된 사업을 위하여 연약지반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실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결국 연약지반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매몰비용이 될 상황에 처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사업의 추진 가능성에 의문이 있는 경우 전체 부지에 대한 총액 단위 계약보다는 부지별로 순차적인 연차별 계획을 통하여 이러한 매몰 비용을 줄이는 방안도 있으나 사업의 추진 방식에 있어서도 미비한 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국방부는 사업의 지속 추진 가능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하였고 이로 인해 매몰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상황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매몰비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병내일준비지원 사업¹⁾은 병사들이 전역 시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868억 9,200만원 중 903억 8,600만원을 집행하고, 965억 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병내일준비 지원	219,009	219,009	-	△32,117	186,892	90,386	-	96,506	658,421
1%이자 지원금	2,553	2,553	-	3,090	5,643	5,643	-	-	11,051
매칭지원금	216,456	216,456	-	-35,207	181,249	84,743	-	96,506	647,37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은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지원하는 것으로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병사들의 전역 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해 금융위원회, 전국은행연합회 등 관계기관 및 시중 14개 은행과 협약을 통해 출시한 고금리 적금상품이다.

이러한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해 국가는 이자 1%를 지원하고, 매칭지원금으로 원리금의 71%를 만기 시에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협약은행들은 적금 가입기간별로 연 4~5%의 장병내일준비적금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4개월이고, 가입한도는 은행별로 월 20만원, 개인별로 월 40만원²⁾이며,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242-304

2) 즉, 최대 4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은행의 2개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한다.

2022회계연도 결산상 1% 이자지원금의 부족으로 일부 전용하여 집행하였는데, 1% 이자지원을 시행한 일자는 2021년 10월 31일로 소급 지급이 가능한 2개월분을 2022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운영 현황]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산, 대구, 경남, 수협, 광주, 전북, 제주, 우체국 등 14개 은행
가입기간	• 육군·해병·의경·상근예비역: 6~18개월 • 해군·의무해양경찰·의무소방원 6~20개월 • 공군·사회복무요원: 6~21개월 • 대체복무요원: 6~24개월
가입한도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월 최대 40만원
혜택	• 은행이자 최대 5% + 국가이자지원 1% • 이자소득비과세 • 매칭지원금: 원리금의 71%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방부는 병 봉급 인상과 연계하여, 향후 동 사업을 매년 확대할 계획에 있으며, 2025년까지 매칭지원율을 100%로 상향하고, 가입자의 납입한도액을 54만원으로 인상하는 한편, 전역 시 최대 1,025만원(월 환산 5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2022~2025년 매칭지원율 상향 계획]

(단위: 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매칭지원율	33%	71%	82%	100%
납입한도액	40	40	47	54
월별 지원금액 환산(최대)	14.1	30	40	55
전역시 지원금(최대)	254.5	541.2	733.4	1,025.9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의 집행률이 41.27%에 불과한데, 만기 후 원리금에 대한 매칭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업 구조, 병사의 적금 가입 및 해지의 편의성 부족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국방부는 사업구조 단순화, 가입 및 해지 체계 개선 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

동 사업은 ①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병역의무이행자를 대상으로 이자 1%를 추가 지급하는 부분과 ② 적금 원리금에 대한 매칭(2022년 33% → 2023년 71%)의 두 가지 부분으로 나뉘어져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매칭지원금 부분은 2022년부터 신설된 부분으로 2022년 기준 동 사업예산의 98.8%를 차지하고 있다.

[병내일준비지원 사업내용]

구 분	사업내용
1% 이자지원금	납입원금에 대해 국가에서 1%의 이자지원금을 지급
매칭지원금	“원리금” = “납입원금 + 은행이자 + 1% 이자지원금” “원리금”에 대해 일정비율(2022년 33% → 2023년 71%)을 지급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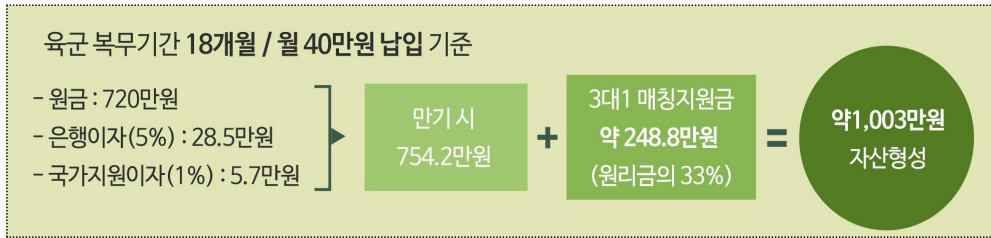
2022회계연도 동 사업의 집행률은 41.27%에 불과한데, 이러한 저조한 집행률은 2022년도 예산 편성 시 매칭지원금 집행 대상 인원을 약 25만명으로 예상했으나, 실제 집행 인원이 약 20만 3,000여명으로 저조하였고, 평균 적립액도 예상치인 4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현재,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전역 이후 전역증 등을 지참하여 은행에서 해지 처리를 하면, 국군재정단에서 개인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에 따라 2022년말 전역자와 전역 이후에도 적금계좌해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매칭지원금의 집행이 불가능하여 동 사업의 집행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각 은행별 및 가입 기간별로 계좌별 이자율이 다르고, 매년 원리금에 적용되는 매칭률이 변경³⁾됨에 따라, 장병내일준비적금을 가입한 장병들이 만기 시 얼마를 수령 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3) 2022년부터 2025년까지 매칭 비율이 매년 상승할 예정에 있다.

[병 내일준비 지원사업 자산형성 예시 (2022년 기준)]



주: 3대1 매칭지원금이란 적금 원리금이 3일 때 지원금을 1의 비율로 지급하는 것을 뜻함.

자료: 국방부

한편, 병사 입장에서 최대 지원을 받기 위해 적립한도액(40만원)을 채우기 위해서는 은행별 한도가 20만원인 관계로 2개의 은행에 별도 계좌를 개설해야만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상품개발 당시 5%라는 고금리로 출시하기 위해 국방부와 각 은행이 신규고객 유치와 그 신규고객 유치의 비용이라고 볼 수 있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타협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국가가 협상을 통해 일정 수준의 이자율을 은행이 보장하도록 하는 것보다는 이자율은 각 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적립한도액도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

[장병내일준비적금 운영 현황]

구 분	내 용
가입대상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협약은행	국민, 기업, 신한, 하나, 우리, 농협, 부산, 대구, 경남, 수협, 광주, 전북, 제주, 우체국 등 14개 은행
가입기간	최소 6개월, 최대 24개월
가입한도	은행별 월 20만원, 개인별 월 최대 40만원
혜택	금리 4~5%로 은행별 상이, 이자소득 비과세

자료: 국방부

[매칭지원금 지원을 상향 계획]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매칭지원율	33%	71%	82%	100%

자료: 국방부

2022년 12월 말 기준 내일준비적금의 월평균 납입금액은 37만원인데, 최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40만원의 적립금을 채우지 않는 인원이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각 은행에 2개의 적금계좌를 개설한 인원이 한 은행에는 20만원을 채우고 나머지 한 은행에는 20만원 미만의 적금을 든다고 보기보다는 은행 2곳에 각각 20만원씩 최대한도를 채우는 사람과 은행 1곳에만 계좌만 개설하는 사람이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⁴⁾

즉, 2개의 은행에 별도계좌를 개설해야만 하는 이러한 가입 편의상 문제도 사업의 효과적인 집행을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로 보이며, 장병이 40만원의 적금 한도액을 모두 채우지 않는 이유 중 하나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2024년부터는 납입한도액도 47만원으로 증액할 계획인데, 은행별 20만원의 납입 한도액이 유지된다면, 장병이 3개의 계좌로 나누어 적금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까지 발생한다. 개인별 개설계좌가 많을수록 늘어날 병사의 불편비용과 사업 집행 상의 행정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동 사업의 사업구조를 단순화하고, 가입 및 해지체계의 편의성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① 현재 계획된 예산 총액의 범위에서 매월 병사가 적립하는 금액에 매칭하여, 국가가 매월 추가 적립해주는 형식으로 사업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병사가 사업구조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적금 가입에 대한 효능감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예산 편성 및 집행과정에서의 복잡성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② 장병이 적금 가입을 위해 여러 은행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되도록 은행별 한도액을 조정하는 방안과 적금 해지 시 비대면 해지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적금 가입 장병의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4) 이러한 추정에 따르면, 은행 1곳만 가입하는 사람은 15%, 은행 2곳에 가입하는 사람은 85%정도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가. 현 황

무관부 차량 및 비품구입과 차량유지비 사업¹⁾은 해외 군사정보 수집 및 군사 외교활동 임무 수행에 필요한 주재무관(임기 3년)의 차량 운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무관부 차량 및 비품구입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5억 8,800만원 전액을 집행하였으며, 무관부 운영 차량유지비 사업의 예산현액 3억 5,600만원 중 3억 4,8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무관부 차량 및 비품구입 및 차량유지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무관부 활동	14,798	14,728	-	1,200	15,928	15,605	-	323	16,598
무관부 차량 및 비품구입	588	588	-	-	588	588	-	-	396
무관부 운영 차량유지비	391	391	-	-	356	348	-	8	44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현재, 54개 무관부에서 관용차량 59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5개 국가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아랍에미리트의 경우에는 각 2대의 관용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49개 무관부에서는 각 1대의 관용차량을 운용하고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5135-301의 내역사업

나. 분석의견

재외공관의 국방무관에게는 직급에 관계없이 개인 전용 차량이 제공되고 있는데, 같은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주재관에게는 지원되지 않고 있음을 고려하면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각 국가별 국방무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용 차량 제공여부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전용차량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재외공관의 주재무관부에서 59대의 차량을 구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그 중 54대의 경우에는 국방무관 개인의 전용 차량으로 사용되고 있다. 「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에 따라, 국방무관 전용 차량의 경우 일과시간 이후에 공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공적인 목적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54개 무관부 차량 보유 현황(2022년 5월말 기준)]

용도	국가	차량명	비고
국방무관 전용 차량(1대) 및 공용차량(1대) 지원 국가	미 국	GV80	
		세도나	공용차량
	중 국	에쿠스	
		뷰익벤	공용차량
	일 본	크라운	
		벨파이어	공용차량
	러시아	G80	
		스타렉스	공용차량
국방무관 전용 차량(1대) 지원 국가	U A E	그랜저	
		카니발	공용차량
	말레이	소나타	
	인 니	산타페	
	캐나다	옵티마	
	오 만	아제라	
	요르단	아제라	
	사우디	그랜저	
	튀르키예	아우디	

용도	국가	차량명	비고
	라오스	그랜저	
	태 국	G80	
	필리핀	산타페	
	이태리	옵티마	
	파키스탄	산타페	
	남아공	쏘렌토	
	인 도	카니발	
	콜롬비아	산타페	
	독 일	BMW5	
	프랑스	BMW5	
	나이지리아	산타페	
	벨기에	BMW5	
	이스라엘	팰리세이드	
	칠 레	팰리세이드	
	우크라이나	산타페	
	스웨덴	V60	
	싱가폴	파사트	
	우간다	Jeep	
	멕시코	쏘렌토	
	폴란드	오펜시그니아	
	베트남	아제라	
	하와이	카니발	
	호 주	GV80	

자료: 국방부

각 행정부처의 경우 소속 주재관에게 전용 차량을 구입하여 지원하지 않으나, 국방무관의 경우²⁾에만 직급에 관계없이 지원³⁾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용 차량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같은 공관에서 근무하는 타 부처의 국장급 공무원에게도 개인 전용 차량이 지원되지 않는 상황임을 고려하면 장성이 아닌 영관급 국방무관에게도 전용 차량이 지원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⁴⁾

특히, 국방무관의 대부분이 영관급으로 “배기량 2,500cc 이상에서 3,500cc 미만”의 전용차량이 지원되고 있는데, 주요 차관급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지원이다.⁵⁾ 국방무관의 경우 기관장이 아니므로 의전상 특수성을 인정할 필요성도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전용 차량 배정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⁶⁾

[국방무관의 직급별 차량 구입기준]

「재외공관 주재무관부 운영규정」

제46조 차량 운용 및 관리 ① 무관부 차량은 국방무관의 「전용차량」과 복수무관부 대상 「업무용차량」으로 구분한다.

⑧ 국방무관의 직급별 차량 구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되, 본부 가용예산 범위 내에서 구매가 가능하다.

1. 장군급 국방무관의 차량은 배기량 3,500cc 이상으로 하되, 공관장의 차종을 감안한다.
2. 영관급 국방무관의 차량은 배기량 2,500cc 이상에서 3,500cc 미만으로 한다.

자료: 국방부

2) 국방무관은 소장 1인, 준장 2인, 대령 39인, 중령 34인, 소령 1인이 있다.

3) 다만, 각 공관별로 1인에게만 전용차량이 지원되며, 1인을 초과하는 국방무관이 파견된 공관에서는 전용 차량 외의 공용차량이 지원된다.

4) 영관급이란 소령부터 대령까지를 뜻하며, 소령과 중령의 경우 담당급, 대령의 경우 국방부의 과장 보직을 받고 있다.

5) 직급별 구분된 전용차량지원 기준은 폐지된 상황이나, 과거 장관 3,200cc 이하, 차관의 경우 2,800cc 이하 정도의 지원이 이루어졌다.

6) 국방부는 이에 대해 국방무관은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제7조」에 의거 대사, 공사를 제외한 재외공무원 중 유일한 아그레망(주재국 부임 동의) 대상자로 대사와 같이 공식행사를 주최하고, 주재국 공식 행사에 국방부장관을 대리하여 참석하고 있으며, 상기 업무 특성으로 인해 인사혁신처·외교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사급(3급) 기준을 적용하여 전용차량을 운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각 재외공관에는 공관의 규모에 따라 다수의 공관용 차량이 배정되어 있으므로 국방무관이 공적 목적으로 차량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관용 차량을 배차받아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각 국가의 재외공관별 국방무관의 업무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인 전용 차량을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곳을 선별하는 등 국방무관 개인 전용 차량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국방무관 전용차량 운영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부대개편 3차~7차 사업¹⁾은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각 해당 연도별²⁾로 신규로 추진되는 부대의 증·창설 등의 관련 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것³⁾으로 2022년 편성된 예산액 3,486억 1,700만원 중 2,560억 3,500만원을 집행하였다.

[2022회계년도 부대개편 시설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	2021 결산	2022			2023
		예산액		결산	예산액
		본예산	추경		
부대개편 3차	85,438	2,075	2,075	15,544	-
부대개편 4차	113,332	32,364	32,364	68,430	46,271
부대개편 5차	40,845	271,302	271,302	147,969	98,059
부대개편 6차	8,436	31,057	31,057	16,830	136,214
부대개편 7차	-	11,819	11,819	7,262	42,108
계	248,051	348,617	348,617	256,035	322,65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에 따라 병역자원 감소 대응 및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정예화된 기술집약형 부대구조를 구현하기 위해 부대구조 개편을 추진하였다. 2022년 까지 사단급 이상의 부대구조 개편계획 실적을 보면, 육군 8군단의 해체시기가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 1) 코드: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4131-472, 4131-476, 4131-477, 4131-481, 4131-482
- 2) 부대개편 3차의 경우 2018년 신규사업, 4차는 2019년 신규사업과 같이 해당연도 신규사업으로 차수가 구분된다.
- 3) 육군의 경우에만 부대 개편 시설사업이 편성되어 있으며, 타군의 경우에는 부대 개편이 전력 도입형식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존 부대시설을 계속 이용하므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다.(전력 도입 시 방위사업청 방위력 개선사업으로 구성됨)

2021년 12월에서 2023년 5월까지로 지연된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계획대로 추진되었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각 군별 부대구조 개편 계획]

(단위: 개)

구분		개편 전		2022년	
		2005년	2017년	계획	실적
육군	작전사	3	3	2	2
	군단	10	8	6	7
	사단	46	41	34	34
	계	59	52	42	43
해군 / 해병	작전사	1	1	1	1
	해병대사	1	1	1	1
	함대사/기능사	3	4	5	5
	전단	5	6	6	6
	해병사단	2	2	2	2
	계	12	14	15	15
공군	작전사	1	1	1	1
	전투사/기능사	2	4	4	4
	비행단	12	12	13	13
	계	15	17	18	18
국직/합동부대		· 우선 추진부대(16개 부대): 2019년도 개편 · 추가 의견수렴 및 검토가 필요한 11개 부대			

주: 2022년 말 기준

자료: 국방부

2022년 실시한 국방개혁 2.0 추진실적에 대한 국방부 자체평가에 따르면, 각 군 부대구조 개편과제의 실적은 66%로 평가되었다.⁴⁾

4) 2022년 도중 평가가 실시되어 2022년말 기준이 아님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국방개혁 2.0 추진실적(국방부 자체평가)]

개혁과제	추진 계획 (시행과업)	추진 실적	달성률
각 군 부대구조 개편 (66%)	① 육군 부대 구조 개편	• 개편대상 81개 부대 중 60개 부대 완료 • 연도별 개편계획: 2022년(9개), 2023년 이후(12개)	74.1%
	② 해군 부대 구조 개편	• 개편대상 9개 부대 중 3개 부대 완료 • 연도별 개편계획: 2022년(2개 / 1개 완료), 2023년 이후(5개, 전력화 연계)	33.3%
	③ 해병대 부대구조 개편	• 개편대상 20개 부대 중 11개 부대 완료 • 연도별 개편계획: 2022년(4개 / 1개 완료), 2023년 이후(6개)	55.0%
	④ 공군 부대 구조 개편	• 개편대상 31개 부대 중 19개 부대 완료 • 연도별 개편계획: 2022년(5개 / 3개 완료), 2023년 이후(10개, 전력화 연계)	61.3%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부대구조 개편계획과 달리 육군의 경우 시설사업이 지연되어 부대개편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⁵⁾, 해군의 경우 무기체계 전력화 시기의 지연으로 매년 대대 창설이 지연되는 등 부대개편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향후 국방부는 부대개편 계획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시설사업 관리 및 관련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하여 부대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부대구조 개편은 각 군별로 미래합동작전개념 구현을 위해 각 군 특성을 고려 목표를 설정하고 추진된다. 병력 중심의 구조였던 육군의 경우 전방위 위협에 대응 가능하고, 신속결정작전⁶⁾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상비병력 감축을 고려하여 부대구조와 편성을 최적화하고, 4차 산업혁명 기술에 기반한

5) 국방부는 부대개편이 지연된다고보다는 장병의 근무여건 보장 측면에 차질이 있다는 입장으로 부대개편 현황에 대한 자료 제출이 제한되어 부대개편 시설사업이 지연되고 있음에도 계획에 따른 부대개편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6) 신속결정작전은 지상작전 기본개념으로 제 요소를 통합하여 빠른 작전 템포를 발휘, 결정적 목표를 달성, 신속한 마비효과를 추구하는 작전개념을 말한다.

병력절감형 부대구조로의 변모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육군은 2017년 기준 39개 사단을 2025년까지 7개 사단을 해체하고 1개 사단을 창설하여 33개 사단으로 개편할 계획으로 이러한 부대 개편에 따라,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하여 군을 개편하였다.

한편, 해군 및 공군의 경우 병력감축이나 부대 수 감축의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다만, 전력구조 개편으로 도입되는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부대 위주로 개편이 계획되어 추진되고 있다.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입체해상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할 계획이다. 특히, 원해 작전능력을 보강하는 한편 입체 전력을 운용하기 위한 부대 중심으로 창설이 계획되어 있다. 공군은 전략적 억제 및 항공우주작전 수행이 가능한 부대구조로 개편한다. 이를 위하여 비행단·비행전대 창설 등이 계획되어 있다.

병역자원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육군 보병사단의 부대 개편을 현황을 보면, 국방부는 2022년까지 계획된 보병사단급 단위에서의 부대구조 개편계획의 경우에는 목표한 계획을 달성하였다는 입장이다.

부대개편은 군 기밀사항으로 부대개편 지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 제출이 제한되어 세부적인 부대개편의 지연여부를 명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부대개편과 연계된 시설사업 현황을 미루어 추측하면, □□사단 △△여단의 경우 총사업비 조정 협의로 인해 지연되었고, △△사단 본부, 직할대, □□여단 군수지원대대 등의 경우도 총사업비 조정, 적정성 검토 등으로 인해 계획한 방향으로의 부대개편이 지연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수도권에 소재한 ○○ 보급대대의 경우 건축승인 지연, 하도급 대금체불, 관급수급제한 등의 문제, △△군단 △△군지단의 경우 적정성 검토 및 대관협의 지연 등으로 인해 시설공사가 지연되어 부대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국방부는 이와 같이 부대개편에 선행하는 시설사업 지연으로 인해 부대개편이 지연되지 않도록 총사업비 조정, 계약절차 지연, 건축승인 지연 등이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처 협의를 조속히 진행하고 사업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부대 개편과 연계된 시설사업(일부 발취)]

부대	사업기간		비고(지연사유)
	당초	변경	
□□사단 △△여단	2018~2020	2018~2021	총사업비 조정 협의 후 공사계약 지연
△△사단본부, 직할대	2018~2020	2018~2022	총사업비 협의 지연 및 계약체결 절차 소요로 인한 착공 지연
□□여단 군수지원대대	2018~2020	2018~2022	
○○군지단 ○○보급대대	2020~2022	2020~2023	건축승인 지연, 하도급 대금체불, 관급수급제한
△△군단 △△군지단	2021~2023	2021~2024	적정성 검토 및 대관협의 지연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대구조 개편 실적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해군의 경우는 연례적인 부대개편 지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해군은 전력구조 개편으로 도입되는 무기체계를 운용하기 위한 부대 위주의 부대 개편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2019~2023년간 계획된 7개 부대의 창설 중 사령부 창설을 제외한 모든 부대 개편이 지연되었다.

2019년도 창설하기로 계획했던 1개 대대를 계획과 달리 창설하지 못하고 2020년에 창설하였는데, 국방부는 해당 대대는 간부 위주로 구성된 부대로서, 대대 창설을 위해서는 병 정원을 간부로 전환할 필요가 있었으나 정원조정이 지연되어 연내 창설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였다.

[국방개혁 2.0에 따른 2023년까지의 연차별 해군 부대개편 계획]

구 분	계 획	실 적	비 고 (지연사유)
2019	대대(1) 창설	-	정원조정 지연으로 대대 창설 연기 (2019년 → 2020년)
2020	대대(1) 창설	대대(1) 창설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으로 대대 창설 연기 (2020년 → 2021년)
2021	대대(3) 창설	대대(1) 창설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으로 2개 대대 창설 연기(2021년 → 2022년 / 2021년 → 2023년), 1개 대대는 전력화 지연에 따라 창설시기 미확정
2022	사령부(1) 창설	사령부(1), 대대(1) 창설	-
2023	대대(1) 창설	대대(1) 창설 진행중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으로 대대창설시기 미확정

주: 해병대를 제외한 부대개편 계획으로, 괄호 안의 숫자는 부대 수를 의미함

자료: 국방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2020년도에도 1개 대대 창설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해상초계기의 전력화 시기가 지연되어 대대 창설이 2021년으로 순연되었다. 2021년에도 이러한 대대 창설계획이 지연되었다. 창설되기로 한 3개 대대 모두가 각각 해상초계기, 해상작전헬기, 함탐재무인정찰기, 반잠수정 등의 무기체계 전력화 지연으로 창설이 연기되었으며, 1개 대대는 2022년에 창설되었고, 1개 대대는 2023년에 창설을 진행하고 있으며, 1개 대대는 창설계획이 2년이 경과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창설 시기도 미확정된 상황이다.

무기체계의 경우 연구개발 및 해외구매를 통해 도입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사유로 인해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빈번하므로, 국방부는 부대개편 계획 조정이 최소화되도록 관련된 무기체계의 전력화 사업을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보전금¹⁾은 군인연금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군인연금법」 제45조²⁾에 따라 그 부족분에 대하여 국가가 보전하는 금액으로, 2022년 계획현액 1조 6,793억 300만원 전액을 징수결정 및 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보전금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2								2023
	계획액		계획현액	징수 결정액 (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계획액
	당초	수정							
일반회계전입금	2,921,962	2,921,962	2,921,962	2,921,962	2,921,962	-	-	100	3,101,725
보전금	1,679,303	1,679,303	1,679,303	1,679,303	1,679,303	-	-	100	1,833,333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이러한 군인연금 보전금의 규모는 2013년 1조 3,692억원에서 2022년에는 1조 6,793억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다만,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다소 감소하고 있는데, 2022년에는 전체 기금 수입액 3조 7,460억원 중 약 44.8%의 비중으로 2013년 49.9%에 비해 상당히 감소하였다. 이는 자체세입의 비중이 2013년 17.7%에서 2022년 22%까지 상승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국민연금기금 일반회계전입금(91-911)의 구성항목

2) 「군인연금법」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2011~2022년 군인연금 수입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총수입	자체세입		일반회계전입금			
				국가부담금		보전금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3	27,436	4,855	17.7	8,889	32.4	13,692	49.9
2014	28,561	5,265	18.4	9,563	33.5	13,733	48.1
2015	28,556	5,229	18.3	9,896	34.6	13,431	47.1
2016	29,580	5,587	18.9	10,328	34.9	13,665	46.2
2017	31,011	5,965	19.2	10,389	33.5	14,657	47.3
2018	32,327	6,251	19.3	10,976	33.9	15,100	46.7
2019	33,813	6,536	19.3	11,537	34.1	15,740	46.5
2020	34,673	6,847	19.7	12,047	34.7	15,779	45.5
2021	35,202	7,020	19.9	12,170	34.6	16,012	45.5
2022	37,460	8,240	22.0	12,427	33.2	16,793	44.8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군인연금기금 보전금을 과소 추계한 경우에는 정산하고, 과다 추계한 경우에는 정산을 하지 않고 군인연금기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므로 과다 추계 시에도 잉여금을 정산하여 보전금을 감액 지급할 필요가 있다.

보전금은 군인연금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보전해주는 금액으로 그 부족분만큼을 편성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매년 군인연금 급여 지급액에 대해 정확한 예측이 어려워 각 회계연도에 편성한 보전금이 부족하거나 남을 수도 있다.

최근 5년간 보전금 집행잔액을 보면, 2018~2020년에는 보전금 잔액이 발생하였고, 2021년 이후부터는 보전금 부족 현상이 발생하여 2022년에는 877억 5,900만원의 보전금 부족분이 발생하였다.

[군인연금 국고보전금 계획 및 집행 실적]

(단위: 백만원, %)

구분	계획 및 집행	실집행		보전금 잔액
		금액	실집행률	
2018	1,510,000	1,497,990	99.2	12,010
2019	1,574,008	1,557,299	98.9	16,709
2020	1,577,855	1,558,745	98.8	19,110
2021	1,601,186	1,614,047	100.8	△12,861
2022	1,679,303	1,767,062	105.2	△87,759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각 회계연도 결산 결과 보전금이 부족한 경우 그 부족분을 차차년도에 추가 편성하고 있다. 그러나, 보전금이 남을 경우에는 결산상 잉여금으로 처리하여 군인연금기금에 적립하고 있다.

이러한 시스템을 공무원연금과 비교하면, 보전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같은 방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으나, 보전금 잔액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군인연금의 경우에만 정산을 하지 않고 기금에 적립하고 있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 보전금 잔액 정산 기준]

구분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보전금 부족 시	보전금을 과소 추계하여 부족할 경우 차차년도(원금) 정산	보전금을 과소 추계하여 부족할 경우 차차년도(원금) 정산
보전금 잔액 발생 시	과다 추계하였을 경우 차차년도에 적게 받음	과다 추계하였을 경우 기금으로 적립(정산하지 않음)

자료: 인사혁신처, 국방부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보전금 잔액을 “결산상 잉여금”으로 보아 「군인연금법」 제48조제2항³⁾을 근거로 책임준비금 형식으로 적립하고 있다는 입장이다.⁴⁾

3) 「군인연금법」

제48조(책임준비금의 적립) ① 국가는 군인연금제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책임준비금을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② 매 회계연도에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이를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그러나, 「군인연금법」 제45조5)의 보전금은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동 조항의 취지는 군인연금 법정 급여 지출액에 수입이 미달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지급 불가 상황 예방을 위해 국가가 부족분만을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보전금의 잔액 발생은 단순히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 그 정확한 군인연금 급여 지급 부족분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에 발생하는 부수적인 결과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전금 잔액을 결산산 잉여금으로 보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하고 정산을 하지 않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군인연금법」 제45조의 취지와도 상충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형식의 비대칭적인 보전금 정산시스템은 과다 추계를 통해 기금을 적립하려는 유인을 가지게 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정확한 기금 지출계획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보전금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보전금 예산 편성 시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4) 국방부는 이에 대해 기금 시작부터 적립 기회를 상실하였던 군인연금기금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6개월분의 적립금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군인연금기금 재정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전금 잔액을 결산산 잉여금으로 보아 적립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5) 「군인연금법」

제45조(보전금)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및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국가에서 부담한다.

가. 현 황

지휘관리 손실보상금 사업¹⁾은 예비군 중대 운영 시 예비군 소대장에 대한 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예산액 21억 700만원 중 4,000만원을 집행하고, 20억 60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6,200만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지휘관리 손실보상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예비전력 운영지원	73,283	71,938	7,647	△16817	62,768	52,215	8,753	1,799	61,041
예비군운영	73,283	71,938	7,647	△16817	62,768	52,215	8,753	1,799	61,041
지휘관리	19,770	19,770	-	△2,270	17,500	16,840	40	280	18,237
손실보상금	2,107	2,107	-	△2,006	102	40	-	62	2,036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동 사업은 민간인인 예비군이 작계훈련 등에 소대장으로 지정되어 참석하는 경우 이에 대한 참석 수당과 예비군 훈련을 실시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치료비 및 장애보상금 등의 재해보상금²⁾을 지급하기 위해 편성되어 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632-305의 내역사업

2)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 부상 또는 사망, 치료로 인하여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등 지급한다.

나. 분석의견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 시 지역예비군 간부 등에게 지급하는 손실보상금 비목의 예산에 대해 2020년에는 19억원 중 18억원을 타 사업에 사용하였고, 2022년에도 21억원 중 20억원을 타 사업에 사용하는 등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집행이 반복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다.

지휘관리 내역사업에 편성된 손실보상금은 주로 소대장으로 지정된 예비군(민간인)에게 지급하기 위한 훈련수당으로 구성된다. 소대장으로 지정된 예비군은 별도의 소대장 교육 및 동대장과의 훈련일정 면담 등의 부수업무가 부여되고 작계훈련 중 소대장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므로 상·하반기에 걸쳐 작계훈련에 참석하는 경우 각 6만 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국방부는 2022년 예비군 소대장이 훈련에 참석하는 횟수를 2만 5,280회로 예상하여 손실보상금(310-01)비목으로 21억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참석은 600회에 그쳤고, 이에 따라 편성예산 중 1.9%인 4,000만원만이 집행되었다.

[2020~2022년도 지휘관리 손실보상금 사업 예산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내역	2022년 예산액	내역 변경(감)	내역 변경(증)	지출액	불용액
2020	- 지역예비군 간부(소대장) 보상금: 13,525명 × 65,000원 × 2회 - 휴업보상금: 39명 × 2,500,000원 × 1회 - 위탁치료비: 21명 × 800,000원 × 3회 - 장애보상금: 2명 × 2,324,500원 × 8회	1,960	△1820	-	75	65
2021	- 지역예비군 간부(소대장)보상금: 12,943명 × 65,000원 × 2회 - 휴업보상금: 44명 × 2,200,000원 × 1회 - 위탁치료비: 20명 × 800,000원 × 3회 - 장애보상금: 3명 × 2,324,500원 × 8회	1,902	△98	304	8	2,066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편성내역	2022년 예산액	내역 변경(감)	내역 변경(증)	지출액	불응액
2022	- 지역예비군 간부(소대장)보상금: $12,640\text{명} \times 65,000\text{원} \times 2\text{회}$ - 휴업보상금: $44\text{명} \times 2,200,000\text{원} \times 1\text{회}$ - 위탁치료비: $20\text{명} \times 5,168,840\text{원} \times 3\text{회}$ - 장애보상금: $3\text{명} \times 2,324,500\text{원} \times 8\text{회}$	2,107	△2,006	2	40	62

자료: 국방부

국방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작계훈련이 실시되지 않아 예비군 소대장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집행부진이 발생하였다고 설명하고 있다.

국방부는 동 사업의 집행잔액 20억 6,700만원 중 20억 600만원을 타 사업으로 내역변경하여 사용하였는데, 대부분의 예산이 동원훈련(2632-303) 사업비로 사용되었다. 동원훈련 사업은 동원예비군훈련 운영을 위한 것으로 동원훈련 보상비 및 귀향여비를 손실보상금(310-01)비목으로 편성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편성된 예산이 부족하여 동 사업예산을 내역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022년도 지휘관리 사업 손실보상금 내역변경 현황]

(단위: 천원)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코드)	내역사업 (편성부대)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코드)	목-세목 코드
6.24.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육군)	310-01	425	동원훈련 (2632-303)	310-01 보상비
6.24.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육군)	310-01	137	동원훈련 (2632-303)	310-01 귀향여비
7.8.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육군)	310-01	113,298	동원훈련 (2632-303)	310-01 보상비
7.8.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육군)	310-01	37,205	동원훈련 (2632-303)	310-02 귀향여비
8.12.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해병대)	310-01	38,028	동원훈련 (2632-303)	310-01 보상비
8.12.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해병대)	310-01	17,071	동원훈련 (2632-303)	310-01 귀향여비

(단위: 천원)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세부사업 (코드)	내역사업 (편성부대)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코드)	목-세목 코드
8.12.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해병대)	310-01	24,680	일반훈련 (2632-304)	310-01 교통비 (일반훈련장)
8.12.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해병대)	310-01	24,087	일반훈련 (2632-304)	310-01 중식비
8.24.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육군)	310-01	1,256,000	동원훈련 (2632-303)	310-01 보상비
9.20.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해군)	310-01	6,556	일반훈련 (2632-304)	310-01 교통비 (일반훈련장)
9.20.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해군)	310-01	6,621	일반훈련 (2632-304)	310-01 중식비
9.20.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해군)	310-01	16,420	일반훈련 (2632-304)	310-01 교통비 (일반훈련장)
9.20.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해군)	310-01	13,483	일반훈련 (2632-304)	310-01 중식비
10.4.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육군)	310-01	399,510	동원훈련 (2632-303)	310-01 귀향여비
11.7.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공군)	310-01	42,000	동원훈련 (2632-303)	310-01 보상비
11.7.	예비전력운영지원 (2632-305)	지휘관리 (공군)	310-01	10,689	동원훈련 (2632-303)	310-01 귀향여비

자료: 국방부

동원훈련 사업예산이 부족한 이유는 2022년 추경 시 코로나19로 인해 동원훈련의 실시가 어렵게 되자 동원훈련 사업예산을 당초 예산인 396억 6,800만원에서 178억 800만원으로 크게 감액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비군 동원훈련이나 작계훈련 모두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실시 여부 및 실시 횟수가 변동되어 그에 대한 보상비 집행 규모가 결정된다.

2022년 추경예산 편성 시 예비군 동원훈련에 대한 손실보상금은 감액하여 편성하면서 예비군 작계훈련에 대한 손실보상금액은 감액 편성하지 않고,³⁾ 예산집행 시에는 작계훈련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동원훈련에 사용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예산집행으로 보인다. 특히, 동 사업예산은 2020년에도 19억 6,000만원 중 18억

3) 국방부에 따르면, 2022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워낙 급박하게 추진되어 1개의 세부 사업만 조정하여 제출하였다고 밝혔다.

2,000만원이 내역변경되어 타 사업에 집행되는 등 2022회계연도에만 일회적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국회나 기획재정부의 통제를 받는 이·전용과는 달리 내역변경의 경우 상대적으로 개별 부처가 자율성을 가지고 용이하게 집행할 수 있어, 예산편성 당시 제출한 편성 근거와는 달리 부처가 자유롭게 사용하여 국회의 예산심의과정을 우회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내역조정은 최소화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는 집행을 위해 사업별 적정수준의 예산을 편성하여 내역변경을 최소화하여 예산을 집행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군무원인건비 사업¹⁾은 군무원의 봉급 및 제수당, 명예퇴직수당 등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예산현액 2조 2,873억 800만원 중 2조 2,688억 4,200만원을 집행하고, 184억 6,6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군무원 인건비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군무원 인건비	2,375,653	2,371,689	-	△84,380	2,287,308	2,268,842	-	18,466	2,500,603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병역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면서 비전투분야의 직위에 편성된 군인 정원을 전투 직위에 할당하고, 비전투분야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할 계획에 따라 군무원 정원이 2018년 2만 6,919명에서 2022년 4만 4,859명으로 증가하였다.

[2018~2022년 군무원 정원 변동]

(단위: 명)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정원	26,919	31,655	34,928	40,295	44,859

자료: 국방부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1102-151

나. 분석의견

군무원의 신규 채용이 원활하지 않고 중도 퇴직자도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의 비율이 2018년 11.5%에서 2022년 43.8%까지 증가하여 군무원 운영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므로 국방부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방부는 병역자원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상비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는 대신 비전투부대의 간부 정원을 민간인력으로 대체하는 것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행정·교육 등 비전투분야의 직위에 편성된 군인 정원을 신규 무기 전력화 등에 따라 신설되는 전투 직위에 할당하고, 비전투분야 직위는 군무원으로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군무원 증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군무원을 계속 채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2022년 기준 군무원 정원 목표치의 90.7%인 4만 708명으로 계획 대비 낮은 운영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2018~2022년 동안의 군무원 운영현황을 보면, 군무원 정원대비 현원 비율(운영률)이 2018년 95.6%에서 2022년 90.7%로 매년 하락하고 있다. 운영률이 낮은 이유는 7급 이하의 운영률이 85.9%로 낮기 때문인데, 이는 신규 군무원의 채용이 원활하지 않고, 저연차의 경우 퇴직자가 많기 때문이다.

[2018~2022년 군무원 운영 현황]

(단위: 명,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정원(A)	26,919	31,655	34,928	40,295	44,859
현원(B)	25,745	29,132	32,079	36,969	40,708
운영률(B/A)	95.6	92.0	91.8	91.7	90.7

자료: 국방부

[2022년 직급별 군무원 운영률]

(단위: 명, %)

구분	계	1~3급	4~6급	7급 이하	전문경력관
정원(A)	44,859	292	12,928	28,282	3,357
현원(B)	40,708	248	13,695	24,294	2,471
운영률(B/A)	90.7	84.9	105.9	85.9	73.6

자료: 국방부

최근 5년간 군무원 신규채용 현황을 보면, 2018년 83.4%에서 2022년 89.1%

로 다소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비전투 보직의 군무원 대체 계획으로 인하여 채용계획 인원이 크게 증가하여 계획 대비 미달 인원은 275명에서 784명까지 증가하였다.

군무원 운영률이 낮은 이유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중도 퇴직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중도 퇴직자는 2018년 524명에서 2022년 1,389명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중도 퇴직자 중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중도 퇴직자 중 3년 내 퇴직자의 비율은 2018년 11.5%에서 2022년 43.8%까지 급격히 증가하였다.

[2018~2022년 군무원 신규채용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획인원(A)	1,660	6,109	5,260	7,574	7,222
채용인원(B)	1,385	4,372	4,283	6,683	6,438
미달인원(A-B)	275	1,737	977	891	784
채용률(B/A)	83.4	71.6	81.4	88.2	89.1

자료: 국방부

[2018~2022년 군무원 퇴직 현황]

(단위: 명, %)

구분	전체 퇴직자 (A)	정년퇴직자 (B)	중도퇴직자 (A-B)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
2018	972(100.0)	448(46.1)	524(53.9)	112(11.5)
2019	1,283(100.0)	613(47.8)	670(52.2)	243(18.9)
2020	1,191(100.0)	414(34.8)	777(65.2)	339(28.5)
2021	1,656(100.0)	611(36.9)	1,045(63.1)	561(33.9)
2022	2,020(100.0)	631(31.2)	1,389(68.8)	884(43.8)

자료: 국방부

즉, 군무원 채용시험에 합격하여 임용되었지만, 청년 세대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근무 여건에 대한 불만족 등의 문제로 퇴직하는 인원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임용 후 3년 내 퇴직자가 많은 이유를 군무원의 업무 특성상 전방지역 군부대 등 격오지 근무가 많고, 공무원 시험 등 다른 시험에 합격하는 경우 군무원을 퇴직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군무원 중도 퇴직자 증가 및 채용률 개선을 위한 조직 문화에 대한 진단과 국방부 내부에서의 군무원의 지위 및 처우, 군인과 군무원의 명확한 업무 역할 분담 등을 포함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가. 현 황

BTL 정부지급금 사업¹⁾은 민간자본을 이용하여 BTL 방식으로 확보한 병영생활관, 관사 및 간부숙소 등의 군사시설의 임대료(민간이 투자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 및 운영비(사업시행자의 시설 유지 관리 및 운영의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국방부는 동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5,580억 5,500만원 중 5,580억 5,300만원을 집행하고 2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년도 국방부 BTL 정부지급금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BTL 정부지급금	555,217	555,217	-	2,838	558,055	558,053	-	2	580,537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국방부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²⁾은 기존에 국가재정으로 건설·운영해 왔던 도로·철도·항만 및 학교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하고 민간이 운영하는 민간투자사업³⁾의 한 종류이다.

정부는 학교·병원·군 병영생활관 등에 대해 BTL 방식을 활용하고 있으며, 민간의 재원으로 건설된 시설에 대해 시설비·임대료에 대한 정부지급금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지급금 부담이 과도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008년부터는 매년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1) 코드: 일반회계 2532-751

2) BTL은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하고, 준공 후 시설 소유권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전(Transfer)하되, 민간이 관리운영권을 획득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시설임대료(Lease)를 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3)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에서 투자비 회수방법에 따라 크게 6가지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임대형 민자사업(BTL)과 수익형 민자사업(BTO: Build-Transfer-Operate)이 대표적이다.

다음 연도에 실시할 BTL 사업의 총한도액과 시설별 한도액 등을 국회에 제출하여 심의받도록 하고 있다.⁴⁾

국방부는 2005년부터 현재까지 군 병영생활관, 관사·간부숙소 및 교육시설 등 군주거시설 신축에 BTL 방식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3~2022년까지 국방부는 BTL 사업에 총 1조 2,607억원의 한도가 설정되어 있고, 고시사업수와 실시협약수는 21개, 운영사업수는 1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 소관 군주거시설 BTL사업 추진현황]

(단위: 백만원, 개)

구분	한도액	고시액	민간사업비	민간투자비	고시사업수	실시협약수	운영사업수
2013	244,500	211,700	168,131	173,127	5	5	5
2014	-	-	-	-	-	-	-
2015	90,900	90,900	87,796	94,094	2	2	2
2016	248,500	224,000	196,714	215,482	4	4	4
2017	133,480	128,560	124,838	136,048	2	2	2
2018	181,400	149,710	156,862	171,664	3	3	3
2019	43,400	41,418	-	-	1	1	-
2020	244,100	238,200	-	-	4	4	-
2021	-	-	-	-	-	-	-
2022	74,500	66,400	-	-	1	-	-
계	1,260,780	1,150,888	734,341	790,415	22	21	16

주: 1. 한도액은 국회 제출 한도액임.

2. 민간사업비는 공사비이고, 민간투자비는 공사비에 건설이자와 GDP디플레이터가 포함된 금액임.

자료: 국방부

국방부 BTL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현황을 살펴보면, 향후 2023년도 5,805억원, 2024년도 5,820억원, 2025년도 5,998억원 등 2028년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등 국회 의결) ① 정부는 다음 연도에 실시할 제4조제2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국방부 소관 군주거시설 BTL사업 정부지급금 향후소요전망]

(단위: 억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군 주거 시설	병영생활관	2,696	2,849	2,858	3,030	3,093	3,195	3,241
	관사	2,087	2,146	2,149	2,152	2,155	2,177	2,322
	간부숙소	769	810	813	816	879	918	1,103
	합계	5,552	5,805	5,820	5,998	6,127	6,290	6,666

자료: 국방부

나. 분석의견

정부는 “코로나19로 부속사업 운영수익 급감”, “최저임금 상승” 등의 사유로 당초 실시협약된 금액 대비 임대료 및 운영비를 증액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을 개정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추가지급금 현황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므로 정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BTL 정부지급금은 임대료와 운영비로 이루어져 있는데, ①임대료는 최초 약정한 금액에 “5년만기 국고채금리” 변동에 따라 가감이 이루어지고, ②운영비는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에 따라 가감이 이루어지고 있다.

[BTL 정부지급금 산출식]

정부지급금: ① 임대료(-부속사업수익) + ② 운영비

- ① 임대료: 민간이 투입한 시설투자비에 대한 보상분

〈 매분기 지급액(원리금균등분할) 산정식 〉

$$\text{임대료(년)} = \text{총민간투자비} \times \frac{\text{수익률}}{1 - (1 + \text{수익률})^{-(\text{임대기간})}}$$

* 총민간투자비: 총민간사업비 + 물가변동분 + 건설이자

* 임대기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인 20년

* 수익률: 5년만기 국고채금리(5년마다 조정)에 실시협약시 약정한 가산율을 추가로 고려

- ② 운영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사업시행자가 받는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운영의 대가
 - (불변가격 산정): SPC(사업자)가 실제 운영비 규모를 예측하여 신청하면 실시협약 시 확정
 - (지급시 조정): 불변가격을 산정한 후 정부지급금 지급시기(매분기)에 물가변동을 반영

$$\text{정상운영비} = \text{불변운영비} \times \frac{\text{운영비지급분기직전달소비자물가지수}}{\text{협약상가격산출기준달소비자물가지수}}$$

자료: 국방부

또한, 이러한 실시협약에 의거한 비용보전 외에도 추가적인 증액을 인정해주고 있다. 2020년 6월 4일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9조제5항⁵⁾을 신설하여 최저임금 상승률과 물가상승률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도록 BTL 운영비 조정방식을 마련하였고, 2021년 7월 13일에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3⁶⁾을 신설하여 코로나-19로 인한 방역조치로 부속사업 시설 운영이 폐쇄 또는 제한되어 부속사업 임대료 손실이 발생한 경우 협약 당사자 간 협의하여 분담하는 특례를 마련하였다.

5)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9조(운영비용의 조정) ③ 주무관청은 단순한 노무에 의한 용역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3으로 정하는 용역에 대해서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이 변동되어 최저임금 지급이 곤란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용을 조정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운영비용 조정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text{최저임금 지급을 위한 추가 정상인건비} = \text{운영비를 지급해야 할 해당분기의 최저임금 대상 정상인건비} \times \left[\frac{\text{당해연도 최저임금}}{\text{기준년도 최저임금}} - \frac{\text{당해연도의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text{기준년도의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right]$$

* 기준년도는 최초 실시협약 체결일이 속한 연도를 적용하되, 2020년 이전에 실시협약이 체결된 사업은 2020년을 기준년도로 적용한다. 단 2020년 운영비를 포함하여 운영비용 조정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은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 간의 합의에 의해 기준년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기준년도의 전년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이 기준년도 대비 최저임금 상승률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만 적용한다.

6)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제168조의3(임대형 민자사업 부속사업 운영손실 분담 특례) 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하여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제49조제1항제2호 또는 주무관청이 요구한 방역조치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의 부속사업 시설이 폐쇄 또는 운영제한 되어 부속사업의 실제 순이익이 실시협약에서 정한 추정 손익에 미달하여 운영손실액이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과 사업시행자는 그 운영손실액을 분담할 수 있다. 이 경우 분담대상인 운영손실액은 사업시행자가 부속사업을 「소상공인기본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에 임차한 경우 발생한 손실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생략)

이에 따라, 일부 BTL 사업을 실시하는 협약 상대방이 지급 주체에게 임대료 또는 운영비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BTL을 지급하는 주체와 협상하여 증액된 금액을 지급받은 사례가 있다.⁷⁾⁸⁾ 이러한 증액 지급은 각 사업별로 협약 당사자 간의 개별적인 협상에 의해 진행되었고, 각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주체별로 증액여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⁹⁾

최저임금의 상승, 코로나19의 확산은 어느 특정 협약 상대방에게만 발생하는 사유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사업에 참여하였는지, 어느 협약 상대방이 보다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에 대해 이의제기를 많이 하였는지에 따라 BTL 사업 임대료 및 운영비 지급에 차이가 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이러한 추가지급금에 대한 관리를 위해서는 추가지급금에 대한 현황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각 중앙행정기관은 소관 BTL사업의 추가지급금 현황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어느 사업에서 어떤 사유로 추가지급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하여 정부 차원의 관리가 없는 상황이다.

한편, BTL사업 추진 시 재정지출형식의 사업집행과 효율성을 비교하는 ‘민간투자 적격성 분석(VfM)’ 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이러한 분석의 타당성을 고도화 하기 위해서는 BTL 사업 시 실제 추가지급이 실제 얼마나 발생하였는지를 포함할 필요도 있다.

즉, 실시협약 외 사유로 발생한 추가지급 현황에 대한 데이터가 관리되어야 재정지출사업과 비교해서 타당성 있는 집행방식인지를 검토할 때 더욱 적실성 있는 분석을 할 수 있고, 보다 효율적인 사업방식을 선정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BTL 추가지급금 현황관리를 하여, 명확한 기준에 따른 임대료 및 운영비 추가지급이 이루어지도록 관리를 하고, BTL 사업의 전반적인 지출에 대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7) 교육부 소관 일부 BTL 사업의 경우, BTL 정부지급금 세부사업이 아닌 “대학 시설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여 BTL 임대료를 증액 반영하였다.

8) 국가사업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의 경우에 BTL 임대료 및 운영비 증액이 발생하였다.

9) 국방부 소관 BTL 사업을 진행한 협약 상대방의 경우에는 이러한 운영비 및 임대료 조정을 받은 바 없다.



방위사업청
(259~338 비공개)



병무청

1

현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예산현액은 3억 200만원이며, 5억 3,1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91.1%인 4억 8,300만원을 수납하고 4,800만원을 미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302	302	302	531	483	48	-	91.1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병무청

2022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2,720억 2,100만원이며, 이 중 88.8%인 2,415억 8,100만원을 지출하고 304억 4,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병무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2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 현액(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272,952	272,021	272,021	241,581	-	30,440	88.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병무청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병무청의 자산은 3,772억 4,700만원, 부채는 196억 700만원으로 순자산은 3,576억 4,0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83억 2,200만원, 투자자산 1억 7,500만원, 일반유형자산 3,544억 800만원, 무형자산 70억 4,4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72억 9,7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전기 대비 48억 6,100만원(1.3%) 증가하였다. 이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기타유동자산의 증가에 따른 유동자산 21억 9,800만원 증가, 소프트웨어 구매 등에 따른 무형자산 21억 9,6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84억원, 장기차입부채 111억 6,600만원, 장기충당부채 4,1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69억 2,700만원(54.6%) 증가하였다. 이는 유동성장기차입부채 및 기타유동부채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38억 1,500만원 증가, 장기차입금 증가 등에 따른 장기차입부채 30억 9,8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병무청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377,247	372,366	4,861	1.3
Ⅰ. 유동자산	8,322	6,124	2,198	35.9
Ⅱ. 투자자산	175	76	99	130.3
Ⅲ. 일반유형자산	354,408	352,971	1,437	1.9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7,044	4848	2,196	0.4
Ⅵ. 기타비유동자산	7,297	8,367	△1,070	△12.8
부 채	19,607	12,680	6,927	54.6
Ⅰ. 유동부채	8,400	4,585	3,815	83.2
Ⅱ. 장기차입부채	11,166	8,068	3,098	38.4
Ⅲ. 장기충당부채	41	28	13	46.4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357,640	359,705	△2,065	△0.6
Ⅰ. 기본순자산	249,142	249,142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36,788	△36,700	△88	△0.2
Ⅲ. 순자산 조정	145,286	147,263	△1,977	△1.3

자료: 병무청

병무청은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2,583억 8,6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 총원가 285억 1,900만원, 관리운영비 2,303억 2,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4억 6,0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 + 관리운영비 + 비배분비용 - 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82억 1,900만원(△12.9%) 감소한 2,583억 8,600만원이며, 이는 인건비 및 경비 감소 등에 따라 관리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407억 3,600만원 감소한 것에 기인한다.

총 3개의 프로그램 중 프로그램순원가가 큰 프로그램은 병역자원선발 프로그램(163억 8,600만원)과 병역자원충원 프로그램(30억 8,300만원), 보충역복무지원 프로그램(90억 5,000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관리운영비는 인건비 1,348억 1,100만원과 경비 955억 1,600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병무청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28,519	27,663	856	3.1
가. 프로그램 총원가	28,519	27,663	856	3.1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230,327	271,062	△40,735	△15.0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460	2,120	△1,660	△78.3
V. 재정운영순원가(I + II + III - IV)	258,386	296,605	△38,219	△12.9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258,386	596,605	△338,219	△56.7

자료: 병무청

병무청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3,597억 5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3,576억 4,000만원으로 기초 대비 20억 6,500만원(△0.6%) 감소하였는데, 이는 회

계연도 중에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 대비 382억 1,900만원 감소하고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231억 5,0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가산항목인 조정항목은 기초 대비 567억 4,600만원 감소하여 순자산 차감항목이 가산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무상이전수입, 기타재원조달 등 재원의 조달 258억 8,5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5억 8,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조정항목은 자산재평가손실 19억 7,7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병무청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359,705	366,411	△6,706	△1.8
Ⅱ. 재정운영결과	258,386	296,605	△38,219	△12.9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258,279	235,129	23,150	9.8
Ⅳ. 조정항목	△1,976	54,770	△56,746	△103.6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357,640	359,705	△2,065	△0.6

자료: 병무청

병무청의 2022년도 예산안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병역판정검사 사업**이 있다.

병역판정검사 사업 중 **병역면탈 예방을 위한 홍보** 관련 매체 광고를 지상파 TV에서 유튜브 등 온라인 홍보로 대체하여 2,500만원 감액되었다¹⁾.

또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사에서 ① 병역판정검사 사업 1억 6,000만원, ② 현역병입영 사업 2,800만원, ③ 병력동원소집 사업 5,000만원, ④ 사회복지요원 교육 사업 1억 5,000만원, ⑤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1,800만원, ⑥ 대체역 심사 사업 2억 100만원, ⑦ 인건비 사업 2억원, ⑧ 총액인건비비대상기본경비 사업 6,200만원, ⑨ 병무행정안내 사업 6,200만원이 감액되었다²⁾.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증액된 사업**으로는 ① **사회복지요원 교육 사업**, ②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사업** 등이 있다.

사회복지요원 교육 사업은 교육생의 급식비 현실화를 위하여 396백만원이 증액되었고³⁾, 병무행정지원 인력운영 사업은 공무원 복리후생비 인상(부처공통)으로 10백만원이 증액되었다⁴⁾.

1)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021.11.
국방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2) 국방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2022.5.
국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2.5.

3)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자료」 2021.11.
국방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1.11.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4) 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병무청은 ① 정밀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병역처분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② 군소요 적정 충원 및 병력동원업무 수행, ③ 사회복지무요원 교육 및 복무관리 강화, ④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분위기 조성으로 자긍심 고취 등을 2022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그러나 2022회계연도 병무청 소관 결산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사회복지무요원 복무관리 사업의 경우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해 자치단체의 사회복지무요원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보충역 소집적체가 발생하여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증가가 우려되고 있으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복지무요원의 시설이용자 학대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복무실태 모니터링, 처벌강화 등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체역 심사 사업의 경우 대체역 편입신청이 지속적으로 적체되어 편입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이를 법정 결정기간 내에 처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체역 편입 결정 이후에도 현재 기준으로 2~4년의 대기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II

개별 사업 분석

1

사회복무요원 제도 운영상 문제점 개선 필요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병역판정검사 결과 보충역 처분자를 소집대상으로 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시설에서 군사교육 3주를 포함하여 21개월간 복무하게 하는 제도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면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는 것을 임무로 하여 자가에서 출퇴근하는 형태로 복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9년 이후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인원은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며, 2023년 4월 기준 13,085개의 복무 기관에 총 5만 4,655명이 복무하고 있다. 가장 많은 인원이 복무하는 기관은 사회복지시설로 2만 2,886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그 다음은 지방자치단체로 1만 9,015명이 근무하고 있다.

[2019~2023년 복무기관 및 복무인원 현황]

(단위: 개, 명)

연도	구 분	계	국가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단체	사회복지 시설
2019	복무기관	12,497	1,364	880	1,502	8,751
	복무인원	60,698	8,400	22,511	9,333	20,454
2020	복무기관	12,326	1,288	910	1,396	8,732
	복무인원	56,306	5,934	21,304	8,974	20,094
2021	복무기관	12,521	1,304	845	1,339	9,033
	복무인원	57,769	7,762	20,170	8,681	21,156
2022	복무기관	12,336	1,096	850	1,314	9,076
	복무인원	53,214	4,880	19,221	8,280	20,833
2023	복무기관	13,085	1,097	870	1,362	9,756
	복무인원	54,655	4,784	19,015	7,995	22,861

주: 2023년은 4월말 기준

자료: 병무청

1-1. 사회복지요원 수요 감소와 전시기로역 처분 문제에 대한 대책 필요

가. 현 황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사업¹⁾은 사회복지요원에 대한 현장 중심의 밀착 복무 지도를 통해 복무부적응 발생을 감소시키고 효율적인 복무관리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병무청은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1억 5,700만원 중 11억 4,600만원을 집행하고 1,1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1,170	1,152	-	5	1,157	1,146	-	11	1,272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사회복지요원 복무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병 봉급 인상 등으로 인한 재정부담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복지요원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보이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분야는 크게 사회서비스 분야, 행정 분야로 나눌 수 있는데, 2023년 4월말 기준으로 사회서비스 분야는 2만 1,855명의 복무요원이 배정되었고, 행정 분야는 7,726명의 복무요원이 배정되었다. 병무청에 따르면 사회서비스 분야는 코로나19로 인한 보건 인력 수요가 일시적으로 늘어났던 것이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이고, 행정 분야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1) 코드: 일반회계 1434-320

[분야별 사회복지요원 배정현황]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4월
사회서비스 분야	22,094	24,550	25,241	22,042	21,855
행정 분야	13,539	10,595	10,234	8,170	7,726
합 계	35,633	35,145	35,475	30,212	29,581

자료: 병무청

현재,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는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가 부담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데, 사회서비스 분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요원이 2022년부터 지방으로 이양되었고 2026년까지만 한시적으로 국비로 인건비 보조²⁾를 받고 있다. 결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는 상황이다.

[사회복지요원 인건비 지급주체별 복무인원]

(단위: 명)

계	국고부담		지방자치단체 부담		공공단체
	국가기관	사회서비스	행정분야	사회서비스 (지방이양분)	
53,209	4,746	6,743	9,811	23,844	8,065

주: 1. 2023. 1월말 기준

2. 사회서비스의 경우 국고부담은 환경부, 여가부, 산림청, 소방청이며, 지방이양은 보건복지부가 해당함

3. 2026년까지 한시적으로 보건복지부 이관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지요원 인건비의 경우에는 국비 보조를 받음

자료: 병무청

국방부의 봉급 인상 계획에 따르면 병장 기준 2022년 대비 2025년에는 121.9%의 인건비 상승이 예정되어 있어 이에 연동되는 사회복지요원의 보수 증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증가시킬 것으로 보인다.

2) 병 봉급 및 교통비, 피복비에 대해서는 보조를 받고 중식비는 보조받지 않고 있다.

[국방부의 병 봉급 인상 계획]

(단위: 만원)

구 분	2022	2023	2024	2025
병 봉급 (병장 기준)	67.6	100	125	150

자료: 국방부

대구광역시 시군구청장정책협의회와 대전광역시는 병 봉급 인상에 연동되는 사회복지요원의 인건비 상승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으로 이어지므로 다시 중앙정부로 환원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³⁾⁴⁾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문제로 사회복지서비스 분야의 사회복지요원 수요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관리 부담⁵⁾을 고려하면, 병 봉급 인상 시 공무원 근로자로 대체하려는 유인이 더 커질 수 있고 사회복지요원 수요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따라서, 정부는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복무 기관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회복지요원 감소에 따른 “장기대기 사유 전사근로역⁶⁾ 처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이므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회복지요원 소집대상자가 복무기관 배정소요보다 많아 “3년 이상” 대기가 발

3) 대구구청장군수협의회,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검토 요청”, 2022.11.

4) 대전광역시, “사회서비스분야 사회복지요원사업 지방이양 철회”, 2022.11.

5) 복무부실자율을 토대로 판단하면, 최근 5개년 간 현역병 등의 경우 0.1 ~ 0.6%의 복무부실자율을 보이고 있으나, 사회복지요원의 경우 3~4% 수준을 보이고 있다.

[보충역 복무형태별 복무부실자 비율]

(단위: %)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사회복지요원	4.2	4.1	4.1	3.6	3.0
그 외	0.2	0.1	0.3	0.3	0.6

자료: 병무청

6) 전사근로역은 대한민국 병역처분의 일종으로, 전사근로역에 편입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을 받고, 평상시에는 현역, 보충역, 예비군이 면제된다.

생하는 경우 일부를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는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전시근로역 처분자는 2018년 2,317명이었으나, 2019년 이후 1만 명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만 740명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고, 2023년에도 약 1만 명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

(단위: 명)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공 급	보충역 대기인원(A)	84,320	89,448	80,322	75,502	72,821	70,861
	연중 증가인원(B)	24,497	21,932	29,275	28,158	24,550	23,250
수 요	사회복무요원 배정(C)	30,033	35,633	35,145	35,475	30,212	29,581
	기타(D)	18,517	20,596	20,874	21,636	24,427	22,798
초과공급(A+B-C-D)		60,267	55,151	53,578	46,549	42,732	41,732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2,317	11,457	15,331	14,485	10,740	10,000

주: 1. 연도말 기준
2. 기타는 보충역 중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현역지원 입대자 등임.
3. 2023년은 추계치임.

자료: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제도는 예외 없는 병역이행 체계 정립으로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임을 고려하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병 봉급 인상 등에 따른 재정부담으로 사회복무요원 수요가 감소하면,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병무청은 장기대기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기준을 재정비하거나, 병역 판정제도와 연

7)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제도는 사회복무요원 소요 대비 소집자원이 많은 지역, 낙도·원거리 지역에 거주하여 장기간 소집을 대기한 사람에 대하여 적기 사회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전시근로역 처분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병역법」 제65조제9항 및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제8항에 근거하여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로 3년이 경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사회복무요원 소집대기기간 3년이 경과한 만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일(매년 1.1./7.1.부)에 처분한다.

제한 보충역 처분 비율 조정, 추가적인 사회복지요원 수요처를 발굴하는 방안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2. 사회복지요원 복무 관리대책 강화 및 의무위반 시 처벌 강화 필요

가. 현 황

사회복지요원의 복무관리는 「병역법」⁹⁾ 및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규정」¹⁰⁾에 따라 복무기관의 장이 지휘·감독하고 있고,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 해당 직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요원의 직무수행 사항을 수시로 점검하고 신상관리 등 복무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지방병무청장은 복무기관의 복무관리 실태 및 사회복지요원의 복무실태 점검을 위하여 복무지도관을 임명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8) 병무청은 사회복지요원을 상근예비역으로 선발 및 소방청, 지하철공사 등 민생·재난안전분야의 수요 확대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9) 「병역법」

제31조(사회복지요원의 복무 및 보수 등) ④ 사회복지요원은 출퇴근 근무하며, 소속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출퇴근 근무가 곤란하거나 업무수행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합숙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제31조의2(사회복지요원 복무 관리·감독 등) ① 사회복지요원이 복무하는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담당직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지요원에 대하여는 지방병무 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복무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사회복지요원의 복무와 관련하여 병무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요원을 관리·감독할 수 있다. 이 경우 복무기관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0)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지휘·감독) ① 복무기관의 장은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지휘·감독을 하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에는 시장(구가 설치되지 않은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지휘·감독한다. 다만, 사회복지요원이 군사교육 소집되어 군사교육을 받는 기간은 「군인사법」의 적용을 받는다.

[2022회계연도 사회복지요원 복무부적합자 실태조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 현액	집행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사회복지요원 복무관리	1,170	1,152	-	5	1,157	1,146	-	11	1,272
복무부적합자 실태조사(여비)	21	21	-	-	21	20	-	1	21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사회복지요원의 복무 실태조사와 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 실태조사 계획 대비 조사 횟수 실적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실태조사 시 발견하지 못한 문제점이 발생하여 실태조사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므로 복무기관이 복무요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체적인 관리방안 및 복무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병무청은 매년 사회복지요원 복무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총 복무기관 중 실태조사 대상기관¹¹⁾ 대비 실제 조사실적이 100%를 넘길 정도로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11) 매년 복무기관 중 실태조사 계획 기관으로 종합평가결과 상위 30% 이내 기관은 다음해 실태조사 면제가 가능하다.(단, 특수학교 제외)

[2018~2022년 사회복지요원 복무 실태조사 실적]

(단위: 개소, 건)

구 분	복무기관	대상기관	조 사 실 적					
			계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	복지시설
2018	11,877	8,708	10,319	118.5	892	837	1,257	7,333
2019	12,497	9,384	10,835	115.5	1,101	950	1,272	7,512
2020	12,326	9,335	10,929	117.1	1,057	919	1,277	7,676
2021	12,521	10,158	11,259	110.8	1,008	897	1,185	8,169
2022	12,336	10,258	11,312	110.3	1,011	835	1,157	8,309

자료: 병무청

그러나, 2020년에는 N번방 사건 당시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 유출한 사회복지요원의 지속적인 일탈 또는 범죄행위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된 바 있고, 2021년, 2022년에는 광주 및 제주에서 중증 장애인을 상습 폭행하고 학대하여 검찰에서 기소한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2023년에는 요양시설에 근무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을 괴롭히는 사회복지요원 영상이 언론에 제보되어 이슈¹²⁾가 되었다.

이러한 사건들은 실태조사에서는 적발하지 못한 사건들로 개인정보 무단 조회의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반복되었으나 적발하지 못하였고, 장애인 등의 학대 역시 상습적이었으나 실태조사에서 확인하지는 못하였다.

실태조사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원인은 일시적인 실태조사 시에는 적발하기 어려운 복무기관 직원들의 조사 회피 행태와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심층적인 조사를 할 수 없는 조사 여건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를 하는 복무지도관은 사회복지요원의 복무실태 점검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요원 부적합 소집해제 처리, 복무기관 담당자 교육 등의 업무도 겸하고 있으며, 복무지도관 1명이 담당해야 하는 관리기관은 112개, 사회복지요원의 수는 483명에 달하고 있다.

즉, 업무일자 기준으로 2일에 1번은 각 기관에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야 하고, 그에 부수하는 조사 계획, 조사 결과 등의 서류 업무를 고려하면, 현 상황에서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에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인다. 결국, 복무지도관의 실태조사의 충실도나 운영방식에 있어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12) “[제보는Y] 거동 불편한 노인 괴롭히는 사회복지요원...학대? 장난?”, 2023.5.1., YTN

[복무지도관 1인당 관리인원 및 관리기관 현황]

(단위: 명, 개)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복무인원		57,675	60,698	56,306	57,769	53,214
복무기관		11,877	12,497	12,326	12,521	12,336
복무 지도관	인 원	97	99	99	103	110
	1인당 관리기관	122	126	125	121	112
	1인당 관리인원	595	613	569	560	483

자료: 병무청

또한, 복무지도관의 확충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다. 복무지도관의 실태조사는 결국 특정 시점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상시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실태는 관련인의 제보 등에 의존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 일시적인 실태조사 시에는 복무기관 및 소속 근무자들이 복무위반 행위가 있더라도 이를 감추려는 유인이 있고, 시설이용자 등의 제보가 가능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도 근본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복무실태에 대한 신고는 중립적일 수 있는 같은 시설에서 근무하는 시설근무자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현실적이다. 다만, 시설근무자의 경우 같이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을 신고하는 경우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업무에서 배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업무부담 증가 및 해당 시설의 평판이 떨어지는 등의 부작용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 신고의 유인이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내부 신고에 의해 복무실태점검이 이루어져 자체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시설의 업무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해당 기관에 복무 인원 우선 선발 및 인원 추가 등의 인센티브를 주는 대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시설이용자 학대 등의 사유로 적발된 경우에는 특별한 복무지도교육과 사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행위임을 고려하여 타 복무의무 위반행위에 비해 가중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병역법」 제33조의제2항제3의2호¹³⁾는 사회복무요원이 복무기관에서 서비스이

13) 「병역법」

제33조(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등) ①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경우에는

용자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연장복무를 규정하여, 시설이용자 학대·폭행 시마다 경고 처분 후 5일 복무 연장처분을 하고 있다. 동법 제89조의3제2호에 따르면, 4회 경고 처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¹⁴⁾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시설이용자 학대 금지 위반과 관련하여 노인, 장애인, 아동 등의 학대로 최근 5개년 간 총 33건이 적발되었는데, 병무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업무배제, 근무지·복무기관 조정, 지도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시설이용자 학대 금지 위반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계	-	3	5	11	14	33
노 인	-	-	-	1	4	5
장애인	-	1	2	2	8	13
아 동	-	1	1	3	1	6
기 타	-	1	2	5	1	9

주: 「병역법」 제33조제2항제3의2호의 의무위반 사례
자료: 병무청

적발된 인원은 연장 복무 5일 처분을 받았고, 사안에 따라 복무기관을 재지정

그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② 사회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고처분하되, 경고처분 횟수가 더하여질 때마다 5일을 연장하여 복무하게 한다. 다만, 제89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다.

1. 다른 사람의 근무를 방해하거나 근무태만을 선동한 경우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
3. 다른 사회복무요원에게 가혹행위를 한 경우

3의2. 복무기관에서 제공하는 사회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14) 「병역법」

제89조의3(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의무 위반)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6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2. 제3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호의2, 제4호, 제33조의10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및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틀어 4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하거나,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에는 적발된 14명 중 9인이 복무기관 재지정을 통해 복무기관이 변경되었다. 그러나 「병역법」 제89조의3은 시설이용자 학대 등의 경우 4번 이상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을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사례는 없어 고발 조치 등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았다.¹⁵⁾

[시설이용자 학대 금지 위반에 따른 조치 결과]

(단위: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계
경고(연장복무 5일)	3	5	11	14	33
복무기관 재지정	1	3	4	9	17
복무지도교육	1	3	9	8	21

주: 1. 「병역법」 제33조제2항제3의2호의 의무위반 사례

2. 조치는 중복하여 취해질 수 있음.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구성

그러나, 복무의무위반에 대한 유형 중 “시설이용자에 대한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범죄 행위임을 고려하여 타 위반행위에 비해 보다 가중된 제재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¹⁶⁾

또한 시설이용자 학대 금지로 인해 매년 경고조치를 받은 인원에 비해 지도교육을 받은 인원이 적은 상황인데, 이러한 경우에는 지도교육의 필요성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인원에 대한 사후 복무관리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병무청은 시설이용자에 대한 학대 등이 적발되는 경우에는 예외없는 복무지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모니터링 등을 통해 유사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관리를 할 필요가 있으며,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추진을 통해 기타 복무의무 위반행위보다 가중된 제재조치를 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15) 학대 당사자 또는 그 보호자 등이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아동복지법」에 따라 각 복지시설종사자 등에게 신고 의무가 부여되어 있다.

16) 피해자, 각 복지시설 종사자 등에 의한 형사 고소·고발과는 별개로 연장복무 처분 등의 규정을 보다 강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대체역 심사 사업¹⁾은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대체역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실조사와 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대체역 편입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병무청은 대체역 심사 사업의 2022년도 예산현액 16억 6,700만원 중 13억 3,900만원을 집행하고 3억 2,800만원을 불용하였다.

[2022회계연도 대체역 심사 사업의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예산액
	본예산	추경							
대체역 심사	1,868	1,667	-	-	1,667	1,339	-	328	1,189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병무청

대체역 심사 사업은 헌법재판소가 2018년 6월 28일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된 「병역법」 제5조제1항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림에 따라 ‘대체역’을 신설하도록 「병역법」 제5조제1항을 개정²⁾(2020.1.1. 시행)하고 「대체역법」을 제정(2020.1.1. 시행)하면서, 2020년 6월 30일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한성 예산분석관(eclipse2@assembly.go.kr, 6788-46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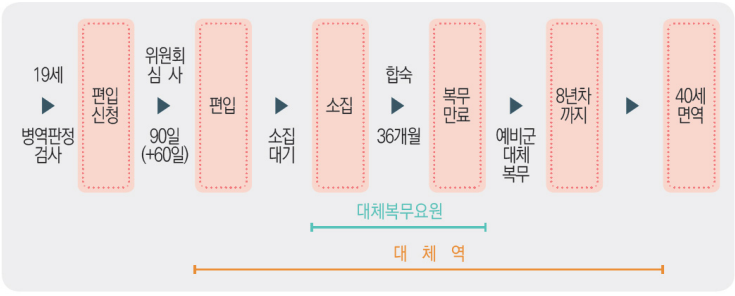
1) 코드: 일반회계 7134-318

2) 「병역법」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6.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제도 개요]

구 분	주요 내용
관련 법률	「병역법」 제5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복무기간	36개월
복무기관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복무관리 주체	•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총괄 지휘·감독) • 대체복무기관의 장(소속 대체복무요원 지휘·감독) • 병무청장(합동 실태조사)
복무형태	합숙근무
신청자격	현역병입영 대상자,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인 보충역, 예비역, 복무만료 보충역
대체역 편입절차	① 대체역 편입신청서 접수 및 사실조사관 배정, ② 사실조사, ③ 심사·의결, ④ 심사결과 처리
대체복무요원 병역이행 과정	 19세 ▶ 병역판정 검사 ▶ 편입신청 ▶ 위원회 심사(90일 (+60일)) ▶ 편입 ▶ 소집대기 ▶ 소집 ▶ 합숙(36개월) ▶ 복무만료 ▶ 예비군 대체복무 ▶ 8년차까지 ▶ 40세면역 대체복무요원 기간: 편입신청부터 복무만료까지 대체역 기간: 편입부터 8년차까지

자료: 병무청, 「대체복무제도 안내 리플렛」을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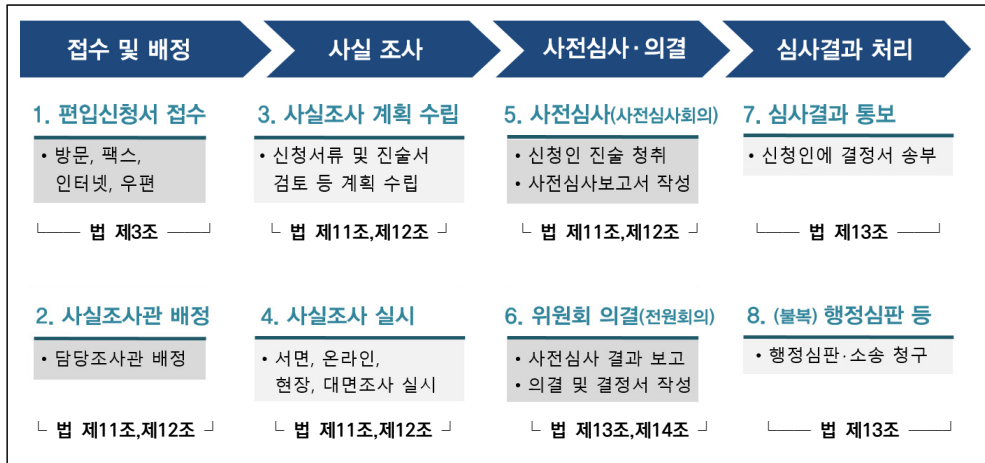
2-1. 대체역 편입심사의 법정기간 준수 필요

가. 현 황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예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대체역법」 제3조에 따라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역으로 편입을 신청할 수 있다. 대체역 편입절차를 거쳐 대체역에 편입되는 경우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복무를 하고, 대체복무요원 복무만료 후 8년 차까지 교정분야에서 연간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예비군으로 대체복무를 하게 된다.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체역 편입심사는 ① 편입신청서 접수, ② 사실조사관 배정, ③ 사실조사 계획 수립, ④ 사실조사 실시, ⑤ 사전심사(사전심사회의), ⑥ 대체역심사위원회 의결(전원회의), ⑦ 심사결과 통보 단계를 거쳐 편입여부가 결정되며, 불복 시에는 ⑧ 행정심판 등을 청구하게 된다.

[대체역 편입심사 절차]



주: 법은 「대체역법」을 의미
 자료: 병무청

나. 분석의견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편입 여부 결정을 함에 있어 법정처리기간³⁾을 위반하고 있는데, 심사위원회 사전회의의 개최 빈도가 적은 것이 원인 중 하나로 보이므로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대부분 연장의결을 통해 기본 법정처리기간인 90일을 넘겨 150일로 처리기간을 연장하고 있으므로 연장의결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대체역법」 제13조⁴⁾는 대체역심사위원회가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

3) 기본 90일, 부득이한 경우 60일을 추가로 연장 가능하다.

4)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위원회의 결정) ① 위원회는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단서는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6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⁵⁾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법정 심사 결정기간]

신청시기	결정기간	연장포함 결정기간
2020.6.30.~2021.6.29. (법 최초 시행으로 인한 특례기간)	240일 이내	360일 이내
2021.6.30.~	90일 이내	150일 이내

주: 결정기간은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산함
자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2022년도에는 법정기간 내 대체역 편입심사 처리율은 35.1%에 불과한 상황으로 절반 이상이 법정기간 내 처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2021년도에는 법정기간 내 대체역 편입심사 처리율이 95.5%로 높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로는 특례규정으로 인해 최대 360일까지 결정기간이 연장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현상이다.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2021년 하반기 신청 건만 따로 떼어보면 307건의 신청 중에 303건이 법정처리기간을 위반하였다.

[법정기간 내 대체역 편입심사 처리율 현황]

(단위: %)

성과지표	구분	2021	2022	측정산식
법정기간 내 대체역 편입심사 처리율	목표	80.7	80.4	(법정기간 내 심사완료 건수/ 법정기간 내 심사대상) × 100
	실적	95.5	35.1	
	달성도	118.3	43.7	

자료: 병무청

5) 다만, 대체복무제도 시행 초기에 대체역 편입 신청이 집중될 것을 고려하여 부칙(2019.12.31. 법률 제16851호) 제4조를 두어, 2020년 6월 30일부터 2021년 6월 29일까지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체역심사위원회가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240일 이내에 인용,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하고, 그 기간 내에 결정을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결을 거쳐 120일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법 시행 특례기간⁶⁾ 이후 2021년 하반기부터 법정처리기간 준수여부를 나누어 보면, 90일 이내에 심사한 경우는 10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연장가능 기간인 90일 초과 ~ 150일 이내 심사 건은 246건, 최대연장가능 기간도 위반한 심사건이 467건으로 법정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⁷⁾

[2021년 6월 30일 이후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결정기간 현황]

(단위: 건)

신청시점	결 정			계
	90일 이내 (심사기간)	90일 ~ 150일 (부득이한 사유시 연장심사 가능기간)	150일 초과	
2021.6.30.~ 2021.12.31.	1	3	303	307
2022	9	243	164	407
합 계	10	246	467	714

주: 1. 결정기간은 편입신청을 받은 날부터 기산함

2. 무죄 외의 경우만 산출함.

자료: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대체역 편입신청의 심사 절차로 사전회의와 전원회의가 있는데, 전원회의는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및 각하 결정의 권한을 가진 심사위원회로 결국 심사결정을 위해서는 전원회의에서의 결정이 필요하다.

6) 법 최초 시행으로 인해 두었던 특례기간(2020. 6. 30. ~ 2021. 6. 29.)

7) 병무청에 따르면, 심사적체가 어느정도 해소된 2022년 하반기 접수자만을 별도로 보면, 297건 중 90일 이내 8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연장가능기간인 90일 초과 ~ 150일 이내 심사 건은 220건, 150일초과도 넘긴 건은 69건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

[전원회의 개요 및 개최현황]

구 분	상세 내용
위원 구성	• 인원 13명(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1명)
위원 자격요건	• 판사, 검사, 헌법연구관, 변호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등 10년 이상 재직하는 등의 자격을 갖춘 사람
심사·의결사항	•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인용·기각, 각하 결정 • 대체역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조사 및 제안 • 대체역 제도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개회,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 의결

자료: 병무청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다만, 사전회의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진 이후에야 전원회의에서 의결을 한다는 점에서 사전회의의 개최 건수 및 처리 건수가 중요하다. 2022년 사전회의의 개최 실적은 2021년 144건에서 112건으로 감소하였으며 처리 건수도 2021년 1,089건에서 2022년 574건으로 감소하였다.

[대체역 심사위원회 개최 실적 및 처리 건수]

(단위: 회, 건)

구 분		2021	2022
사전회의	개최	144	112
	처리건수	1,089	574
전원회의	개최	33	25
	처리건수	1,297	656

자료: 병무청

병무청에 따르면, “제도가 시작된 2020년의 대체역 편입심사 신청 폭주로 2020년 접수분을 2021년으로, 2021년 접수분은 2022년도로 이월되어 심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법정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신청량이 많아 차년도로 심사 건수가 적체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적체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 전년도만큼의 사전회의 및 전원회의의 개최 건수를 확보하여 더 이상 적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나, 오히려 개최 건수를 전년에

비해 감소시킴으로서 여전히 법정처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건이 발생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같이 대체역 편입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이 지연되는 경우 취업을 준비할 중요한 시기인 청년인 신청자의 권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대체역 심사위원회 사전회의의 개최 횟수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고 처리 건수를 늘려 법정처리기간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병무청은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법정심사기간 내에 심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를 구체적인 판단 없이 모두 연장의결하고 있는데, 이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본문의 규정된 기본 법정처리기간인 90일을 형해화시켜 동 조문을 둔 입법 취지를 저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1회계연도에 대한 결산심사 시 국회는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여 연장의결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시정요구하였으나, 병무청은 “심사 적체”를 사유로 하여 지속적으로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의결 하고 있다.⁸⁾

따라서, 병무청은 동 법률의 취지를 고려하여, 90일의 법정심사기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의 ‘부득이한 사유’를 구체화하여 하위법령에 규정하고, 그 사유를 항목별로 관리하여 무분별한 연장의결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8) 다만, 병무청은 보완조치로서 대체역 편입 신청자에게 편입 결정시기에 대한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편입신청자에게 편입 결정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개선하였다고 시정조치결과를 보고하였다.

2-2. 대체역 복무 대기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노력 필요

가. 현 황

대체역으로 편입되면 대체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36개월 동안 교정시설 등에서 합숙근무 형태로 복무를 하고 있다. 대체복무요원은 급식, 물품, 교정교화, 보건위생, 시설관리 등의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분야]

분야	복무내용
급식	식자재 운반 및 조리·배식 보조, 식당 환경정리 등
물품	구매물품·영치품·세탁 물품 분류 및 배부, 창고 정리 등
교정교화	도서·신문 분류 및 배부, 공공서고 관리, 교정교화업무 보조 등
보건위생	중환자·장애인 이동 및 생활 보조, 취약지역 방역 등
시설관리	구내·외 환경미화, 환경개선 작업 등

자료: 병무청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관은 합숙시설이 갖추어진 교정기관으로 한정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보수는 병의 보수체계에 따라 36개월의 복무기간을 현역병의 계급체계와 비례하여 기간별 구분하여 지급받고 있다.

나. 분석의견

대체역 복무기관의 부족으로 대체역 편입 결정 이후에도 현재 기준으로 2~4년의 대기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므로, 병무청은 교정시설을 운영하는 법무부와 협의하여 대체복무 시설 확보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대체역 복무기관을 발굴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현재 대체복무자의 경우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9)에 따라 교도소, 구치소 등의 교정기관에서만 복무할 수 있다. 현재 대체역

복무기관은 2023년 4월 기준 22개소로, 복무인원은 1,164명이다. 2020년 말 제도가 시행 이후 복무기관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복무기관이 현재 교정기관으로만 규정되어 있어 급격하게 복무기관을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는 상황이다.

[대체역 복무 기관 현황]

(단위: 개소, 명)

구 분	2021	2022	2023. 4월
복무기관 수	13	20	22
복무 인원	650	1,049	1,164
기관당 복무인원	50.0	52.5	52.9

주: 연도말 기준

자료: 병무청

대체역 편입인원에 비하여 복무기관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소집희망자의 대기일수가 증가하고 있다. 2021년 상반기에는 소집희망 신청자의 대기일수가 173 ~ 327일이었으나, 2022년 하반기에는 570 ~ 766일까지 대기일수가 증가하였다.

[소집희망 신청 후 선발자의 대기기간]

구분	신청시기	소집대기	편입일자	소집일자	대기일수
2021	상반기	최단	2020-07-29	2021-01-18	173
		최장	2020-07-29	2021-06-21	327
	하반기	최단	2020-11-20	2021-09-27	311
		최장	2020-07-29	2021-10-25	453
2022	상반기	최단	2021-03-12	2022-03-14	367
		최장	2020-07-29	2022-05-09	649
	하반기	최단	2021-04-16	2022-11-07	570
		최장	2020-10-23	2022-11-28	766

자료: 병무청

9)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대체복무기관) 법 제16조제1항에서 “교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체복무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교도소
2. 구치소
3. 교도소·구치소의 지소(支所)

2023년 4월을 기준으로 보면, 대체역 복무자는 1,164명으로 3년의 의무복무 기간을 고려하면 매년 평균 388명이 전역한다고 볼 수 있다. 대체복무기관이 추가 되지 않는다면, 현 복무대기자가 1,610명이므로 산술적으로는 최대 4년의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즉, 현재 시점의 대기자들의 경우 대체역 편입 결정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대체역으로 복무하고 사회에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대체역 복무를 위해 대기하는 기간 4년과 실제 복무기간 3년을 더하면 최대 7년이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대체역 편입자 및 복무자 현황]

(단위: 명)

구 분	2021	2022	2023. 4.
대체역 편입자(A)	2,016	2,647	2,827
편입취소, 면제 등(B)	21	46	53
대체역 복무자(C)	654	1,049	1,164
대체역 복무 대기자(A-B-C)	1,341	1,531	1,610

주: 연도말 기준

자료: 병무청

다만, 법무부는 교정시설의 대체복무 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2026년까지 복무기관을 확충하여 최대 1,903명까지 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¹⁰⁾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 예정 인원을 매년 435명 선으로 예측하여 2030년경에는 대기기간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10년간 병역거부자 평균 인원이 556명임을 감안하면 다소 낙관적인 편입 예정 인원 예측으로 보이며¹¹⁾, 교정시설의 대체복무시설 확충은 매년 일부 지연¹²⁾되고 있어 적시에 이러한 계획이 추진되도록 하는 관리대책이 필요하다.

10)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소집인원 계획을 수정하여 인원을 확대하고 있다.

1,620명(최초)→1,680명(2022년)→1,903명(최종)

11) 병무청은 2001년부터 2017년까지 병역판정검사인원 대비 병역거부자 비율(0.18%)을 근거로 매년 435명으로 산출하였으며, 이러한 예측은 타당한 점이 있으나, 대체복무제도의 신설로 과거 형사처벌 우려로 인하여 적극적인 병역거부를 하지 못하였던 일부 인원이 대체역 편입을 신청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12) 2023년 준공 예정이었던 서울남부구치소, 서울남부교도소, 광주교도소, 제주교도소 등도 이미 총사업비변경 등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2024년 이후에나 준공될 예정이다.

[대체복무요원 소집 및 복무현황 추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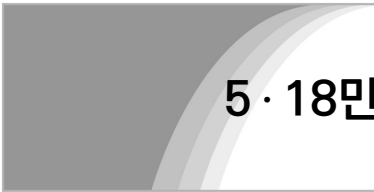
년도	편입(예정)		소집(예정)		소집해제(예정)		현복무인원 (B-C)	대기자 (A-B)
	인원	누계(A)	인원	누계(B)	인원	누계(C)		
2020	728	728	106	106	-	-	106	622
2021	1,267	1,995	548	654	6	4	650	1,341
2022	606	2,601	416	1,070	17	21	1,049	1,531
2023	435	3,036	423	1,493	103	124	1,369	1,543
2024	435	3,471	766	2,259	531	655	1,604	1,212
2025	435	3,906	548	2,807	410	1,065	1,742	1,099
2026	435	4,341	584	3,391	423	1,488	1,903	950
2027	435	4,776	766	4,157	766	2,254	1,903	619
2028	435	5,211	548	4,705	548	2,802	1,903	506
2029	435	5,646	584	5,289	584	3,386	1,903	357
2030	435	6,081	766	6,055	766	4,152	1,903	26
2031	435	6,516	461	6,516	548	4,700	1,816	-
2032	435	6,951	435	6,951	584	5,284	1,667	-
2033	435	7,386	435	7,386	766	6,050	1,336	-
2034	435	7,821	435	7,821	461	6,511	1,310	-
2035	435	8,256	435	8,256	435	6,946	1,310	-
2036	435	8,691	435	8,691	435	7,381	1,310	-
2037	435	9,126	435	9,126	435	7,816	1,310	-
2038	435	9,561	435	9,561	435	8,251	1,310	-

- 주: 1. 편입인원: 편입자 중 예비군, 편입취소, 소집면제자 제외
 - 2023년부터 연간 435명 편입 예상(연간 편입 신청 460건 예상)
 2. 대체역 편입 신청 건수는 2020년 1,962건, 2021년 574건, 2022년 453건, 2023. 5월말 89건으로, 2023년부터는 연간 460건 접수 예상
 3. 법무부 소집인원 확대: 1,620명(최초) → 1,680명(2022년) → 1,903명(최종)
 자료: 병무청, 법무부

대체역 복무 대기자의 경우에는 사회복무요원과는 다르게 3년 이상 대기로 인한 전시근로역 처분 등의 소집면제가 없다.¹³⁾ 이로 인해, 대기기간이 무한정 늘어질 수 있으며, 취업 등 경제활동을 준비하는 청년기에 있는 대체역 복무자에게 큰 불이익을 줄 수 있다.

따라서, 병무청은 대체역 편입자가 대체역 복무를 성실히 하고, 빠른 시일 내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교정시설의 대체복무시설 확충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추가적인 대체역 복무 기관을 발굴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13) 다만, 「병역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36세부터는 소집 의무가 면제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현 황

가. 세입·세출 결산

2022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징수결정액은 4,200만원이며, 4,200만원 전액을 수납하였다.

[2022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미수납액	불납 결손액	수납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	-	-	42	42	-	-	100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2022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현액은 142억 1,400만원이며, 이 중 83.8%인 119억 1,300만원을 지출하고 6억 300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6억 9,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다.

한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결산 총계와 같다

[2022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본예산	추경					
일반회계	13,739	13,733	14,214	11,913	603	1,697	83.8

주: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의미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나. 재무 결산

2022회계연도 말 현재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자산은 20억 7,400만원, 부채는 5,000만원으로 순자산은 20억 2,400만원이다.

자산은 유동자산 15억 4,200만원, 일반유형자산 3억 1,500만원 및 무형자산 2억 1,7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1억 6,400만원(8.6%) 증가하였다. 이는 주로 선급금 및 임차보증금 등 증가에 따라 유동자산이 4억 4,300만원 증가하고 장기임차보증금의 유동성대체에 따라 기타비유동자산이 2억 3,700만원 감소한데 기인한다.

부채는 장기충당부채 5,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전기 대비 2,000만원(66.7%) 증가하였다. 이는 전액 퇴직급여충당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2022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자 산	2,074	1,910	164	8.6
Ⅰ. 유동자산	1,542	1,099	443	40.3
Ⅱ. 투자자산	-	-	-	-
Ⅲ. 일반유형자산	315	325	△10	△3.1
Ⅳ. 사회기반시설	-	-	-	-
Ⅴ. 무형자산	217	249	△32	△12.4
Ⅵ. 기타비유동자산	-	237	△237	△100.0
부 채	50	30	20	66.7
Ⅰ. 유동부채	-	-	-	-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50	30	20	66.7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 자 산	2,024	1,880	144	7.7
Ⅰ. 기본순자산	442	442	-	-
Ⅱ. 적립금 및 양여금	1,582	1,438	144	10.0
Ⅲ. 순자산 조정	-	-	-	-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2022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 재정지출(비용)이 재정수입(수익)을 초과하여 순비용이 123억 4,900만원 발생하였다. 비용은 프로그램총원가 123억 5,000만원으로 구성되며, 수익은 비배분수익 100만원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순원가(프로그램순원가+관리운영비+비배분비용-비배분수익)는 전년도 대비 31억 6,400만원(34.4%) 증가한 123억 4,900만원이며 이는 주로 연구개발비 및 인건비 증가 등에 따라 프로그램총원가가 전년도 대비 30억 200만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프로그램은 단일의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운영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배분수익은 전기오류수정이익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재정운영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I. 프로그램순원가(가-나)	12,350	9,348	3,002	32.1
가. 프로그램 총원가	12,350	9,348	3,002	32.1
나. 프로그램 수익	-	-	-	-
II. 관리운영비	-	-	-	-
III. 비배분비용	-	-	-	-
IV. 비배분수익	1	163	△162	△99.4
V.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12,349	9,185	3,164	34.4
VI. 비교환수익 등	-	-	-	-
VII. 재정운영결과(V-VI)	12,349	9,185	3,164	34.4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2회계연도 기초순자산은 18억 8,000만원이고, 기말순자산은 20억 2,400만원으로 기초 대비 1억 4,400만원(7.7%) 증가하였는데, 이는 회계연도 중에 순자산 가산항목인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기초 대비 124억 9,300만원 증가한 반면, 순자산 차감항목인 재정운영결과는 기초대비 123억 4,900만원 증가하여 순자산 가산항목이 차감항목을 초과하였기 때문이다.

한편, 2022회계연도 재원의 조달 및 이전은 국고수입, 제재금수익 및 기타재원 조달 등 재원의 조달 125억 3,500만원과 국고이전이출 등 재원의 이전 4,200만원으로 구성된다.

[2022회계연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순자산변동표 요약]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2 회계연도(A)	2021 회계연도(B)	전년도 대비 증감	
			A-B	(A-B)/B
Ⅰ. 기초순자산	1,880	1,330	550	41.4
Ⅱ. 재정운영결과	12,349	9,185	3,164	34.4
Ⅲ. 재원의 조달 및 이전	12,493	9,735	2,758	28.3
Ⅳ. 조정항목	-	-	-	-
Ⅴ. 기말순자산(Ⅰ-Ⅱ+Ⅲ+Ⅳ)	2,024	1,880	144	7.7

자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국회 심사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예산이 감액된 사업**으로 **5.18 진상규명지원 사업**이 있다. 5.18 진상규명지원 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위원회 개최 건수 등의 감소가 예정되므로 속기 및 녹취 비용이 절감될 것을 이유로 1억 9,000만원이 감액(56억 4,200만원 → 54억 5,200만원)되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시기 국가 권력에 의한 반민주적·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하고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2021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예산을 집행하였다.

결산분석시리즈 II

2022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

발간일	2023년 7월
발행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조의섭
편 집	예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과
발행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인쇄처	(주)케이에스센세이션 (tel 02·761·0031)

이 책은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ISSN 2983-2756

© 국회예산정책처, 2023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간등록번호	31-9700460-001471-10
ISSN	2983-2756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